
한국은행 국고업무 해설

2015. 7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머 리 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1조에 의한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서운영경비, 정부보관금 및 일부 공공기금(65개중 23개) 등 일정 범위내의 국고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일반회계·특별회계 전부와 65개 공공기금중 42개 등 대부분의 국고금은 한국은행에 위탁하여 출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집중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성있게 운용하고 한국은행의 계리 결과와 국가 회계·경리 결과를 상호 대조·확인함으로써 국가 결산 및 회계감사의 정확 및 엄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서는 정확하고 엄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국고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업무참고자료로 “국고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해 오고 있었는데 동 편람이 비교적 한국은행 내부업무 취급 방법 기술에 치우쳐 있어 한국은행 내외부의 국고업무 담당자들의 우리나라 국고금 출납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관리제도와 한국은행 국고업무를 연계하여 설명하는 한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정점으로 송수신되는 국고업무 정보의 흐름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 이들 핵심업무 처리를 위해 유지되는 부수업무 등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고업무 전반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담아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국고업무 해설”은 광범위한 국고업무에 대한 첫 해설서로서 국민, 정부, 금융기관, 한국은행 등 국고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책자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점들은 관련기관 및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국고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5년 7월
국고증권실장 전태영

- 차 례 -

I . 국고제도 개관	1
1. 국고금의 의의와 국고제도	3
가. 국고금의 의의	3
나. 국고제도	3
1) 국고제도의 분류	3
2) 우리나라의 국고제도	4
2. 국고금 취급기관	6
가. 국고금 취급기관의 구분	6
나. 결정기관	7
1) 수입징수관	7
2) 지출관	7
다. 출납기관	7
1) 출납공무원	7
2) 한국은행	9
3) 체신관서(우체국)	10
4) 국고금납부대행기관	10
3. 국가 회계제도	11
가. 국가회계와 한국은행	11
나. 국가회계의 특징	11
다. 재정과 예산	12
라. 예산의 구분	12
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4
바. 예산의 회계 구분	16
1) 일반회계	16
2) 특별회계	16
3) 기 금	17

사. 회계연도	18
1) 정부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18
가) 세입의 회계연도	18
나) 세출의 회계연도	19
2) 한국은행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19
3) 출납정리기한	20
4. 월계대사	21
가. 대사 범위	21
나. 대사 시기	22
5. 한국은행의 국고금 계리	24
가. 한국은행 국고계리의 기본원리	24
나. 국고금의 종류	27
1) 수입금	27
2) 지출금	27
3)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27
4) 자금관리용 국고금	27
5) 기타의 국고금	28
다. 국고계리 방법	29
1) 회계계정의 개설	29
2) 소관의 신설	29
3) 계좌의 개설	31
라. 국고업무 처리수단	33
마. 국고금의 계리	35
1) 수입금의 계리	35
2) 지출금의 계리	35
3) 자금관리의 계리	35
4) 기타의 국고금에 대한 계리	35
바. 회계연도의 마감과 이월	39

II. 국고금의 수납	41
1. 개 요	43
2. 수납대상 국고금	43
가. 수납가능 국고금의 종류	43
1) 수입금	43
2) 지출반납금	44
3)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44
4) 자금관리용 국고금	45
5) 기타의 국고금	45
나. 수납기관별 수납가능 국고금	45
3. 수납시 확인사항	46
가. 수납 절차	46
나. 확인사항	47
1) 국고 수입금(또는 지출반납금)일 것	47
2) 금액 표시	47
3) 납부서 기재사항의 충족	47
4) 납부기한	48
4.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요령	49
가. 증권에 의한 수납	49
1) 의미와 근거	49
2) 수납 가능 증권의 종류	49
3) 수납증권의 조건	50
4) 수납 절차	50
5) 수납증권 부도시 처리 절차	51
가) 한국은행 수납분 취소 절차	51
나) 국고대리점 수납분 취소 절차	51
다) 수입금출납공무원 수납분 취소 절차	52
나. 수납증권 부도연장 처리요령	52
다. 부도취소에 따른 국고대리점 자금결제	53

5. 수납 기관별 수납매체 54

가. 한국은행 54

1) 창구수납 54

2) 한은금융망 수납(당좌차기 수납) 54

3) 회계시스템 대체수납 54

4) 국고전산망 대체수납 55

나.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 58

1) 창구수납 58

2) 전자수납 59

3) 신용카드 카드론방식 수납 60

4) 인터넷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수납 61

5) 재정자금이체망 수납 62

6) 편의점 단말기를 이용한 국세 수납 63

다. 국고금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 수납) 64

라. 수입금출납공무원 65

1) 현금(수표)에 의한 창구수납 65

2) 자동이체 수납 65

3)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납 66

4) 가맹점 방식 신용카드 수납 67

6.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처리 68

가. 한국은행 수납분 68

1) 창구수납(현금수납) 69

가) 수입금 69

나) 지출반납금 70

2) 당좌차기 수납(당좌예금 대체수납) 71

가) 수입금 71

나) 지출반납금 72

3) 회계시스템 수납(총계정 대체수납) 72

4) 국고전산망 수납(국고내 대체수납) 73

가) 수입금 대체지출 73

나) 과오납반환에 의한 지출반납금 수납 73

나. 국고대리점 수납분	74
다.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	77
7. 주세, 지방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의 특례	79
가. 국세로 납부된 주세 등의 처리	79
1) 국세수납정리계정의 운영	79
2) 처리 절차	79
나.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	80
8.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정정	83
가. 정정의 의미와 정정 구분	83
나. 청구정정	84
1) 정정의 종류	84
2) 정정의 요청	84
다. 내부정정	86
1) 정정의 종류	86
2) 정정의 신청	86
3) 통할점의 정정처리	87
4) 정정처리시 심사기준	88
5) 국세청소관 수입금 정정시 유의사항	91
6) 정정금액의 결제 및 정리	91
라.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정정	92
1) 우체국 수납분의 정정	92
2)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정정	93
3) 정정금액의 결제	93
마. 계 리	94
1) 청구정정 및 내부정정	94
가) 금액이 증가하는 정정	94
나) 금액이 감소하는 정정	95
다) 금액변동이 없는 정정	97
2)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정정	98
가) 금액이 증가하는 정정	98
나) 금액이 감소하는 정정	99
다) 금액변동이 없는 정정	99

Ⅲ. 국고금의 지급 107

1. 개 요 109

2. 지출금의 지급 110

가. 지출 절차 111

1) 자금계획의 배정 111

2) 지출의뢰 및 지급 112

가)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앞 입금 113

나) 한국은행 앞 입금 114

다)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입금 114

라) 지로대금 납부 114

나. 지출금의 처리 116

1)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계좌입금 116

2) 한국은행 입금 116

3)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입금 116

4) 지로대금 납부 117

가) 수납일 117

나) 지로차액 결제일 117

3.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지급 120

가. 국세환급금의 지급 124

1) 환 급 124

2)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앞 입금 124

3) 우체국 앞 현금지급 요청 126

4) 현금지급의 취소 127

나. 관세·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 지급 130

1) 환급 또는 반환 130

2)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앞 입금 130

3)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입금(지출관 앞 반납) 131

다.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처리 133

1) 국세환급금 133

가)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133

나) 계좌입금실패 및 현금지급취소 133

2) 관세·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및 과오납금반환금	134
가) 납부자 앞 환급·반환	134
나) 지출관 앞 반환	134

4. 지출금의 정정 135

가. 청구정정	135
1) 정정의 종류	135
2) 정정의 요청	135
나. 내부정정	136
다. 계 리	136
1) 계좌번호 정정	136
2) 이중입력	136
3) 과소입력	136

IV. 자금관리 등 기타의 국고금 수급 137

1. 자금관리 국고금의 수급 139

가. 국고금의 상호예탁	139
나. 일시차입	140
다. 재정증권 발행	142
라. 국고여유자금 운용	144
마. 결산상잉여금의 처분	146

2. 기타의 국고금 수급 148

가.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148
나. 우체국 관련 국고금	148
1) 금융기관으로서의 거래	150
가) 한국은행과의 현금 수수	150
나) 국고금의 결제	150
다) 금융기관과의 자금이체 및 차액결제	150
2) 정부기관으로서의 거래	151

가) 선사용자금 교부	151
나) 선사용자금 보전 불입	151
다) 국고금 예탁	151
3) 회계처리	152
가) 우체국과초금 수납	152
나) 우체국자금 지급	153
다) 금융기관앞 자금이체 및 차액결제(부)	154
라) 차액결제(승)	154
마) 선사용자금	154
바) 선사용자금 보전불입 및 국고금 예탁	154
3. 법원의 전부·추심명령에 따른 국고금 지급	155
가. 지급 절차	155
나. 계 리	158
1) 전부금(추심금) 지급	158
2) 소관부처의 정리	158

V. 계산증명 및 대차대조표 159

1. 계산증명	161
가.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161
나.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163
다. 지출관의 계산증명	163
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63
2. 국고금 대차대조표	164
가. 국고금 대차대조표의 작성	164
나. 대차대조표와 출납계산서의 차이	166

VI. 국고전산망 167

1. 개 요	169
---------------------	------------

2. 취급업무	169
3. 국고전산망 참가	172
가. 국고전산망 이용방법	172
나. 국고전산망 약정 조건	173
다. 국고전산망 이용업무의 승인	173
1) 국고금 수납업무	174
2) 국고금 지급업무	174
라. 비용의 부담	175
마. 약정 해지 또는 승인 철회	175
4. 국고전산망 운영	176
가. 운영시간	176
나. 전문처리의 원칙	176
1) 전문의 송수신 수단	176
2) 전문의 성립 및 효력	176
3) 전문의 암호화	177
다.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의 운영	179
1) 거래개시	179
2) 거래의 실행	180
가) 전문의 송수신	180
나) 미확인 거래의 처리	180
다) 전문 오류시 처리기준	181
3) 예비종료	181
4) 거래집계	182
5) 일일대사	182
6) 거래종료	183
라. 파일송수신시스템의 운영	183
1) 파일의 생성	183
2) 파일의 처리	183
마. 추가연계	184

VII. 국고대리점 관리 191

1. 국고대리점 계약의 체결 193

가. 국고수납대리점계약 193

1) 계약체결 대상 193

2) 계약체결 조건 193

나.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 194

1) 계약체결 대상 194

2) 계약체결 조건 194

다. 계약의 해지 195

2. 국고대리점의 설치(지정) 195

가. 지정 절차 195

나. 지정의 제한 196

다. 폐지 또는 지정의 직권취소 196

3. 국고대리점 수납자금의 결제 197

가. 조기결제 198

1) 조기결제 대상 198

2) 실시방법 198

나. 조기회수 199

1) 조기회수 대상 199

2) 실시방법 199

4.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200

5. 국고사고의 처리 201

가. 사고보고 201

나. 사고의 처리 201

1) 사고 수납내역의 처리 201

2) 집중지연이자 부과 201

3) 추가제재 202

6. 국고대리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203
7. 국고대리점 업무지도	205
가. 한국은행의 업무지도	205
1) 업무수행내용 점검을 통한 업무지도 대상	205
2) 업무지도 방법	205
나. 금융기관의 업무지도	206
8. 국고대리점 평가	207

[부록1] 국고예금제도 209

1. 개 요	211
2. 취급기관	212
3. 금융기관의 국고예금 취급	212
가. 계좌의 개설, 변경 및 폐지	212
1) 계좌의 개설	212
2) 계좌의 정보 변경	214
3) 계좌의 폐지 등	214
나. 계좌의 입·출금	215
1) 입 금	215
2) 출 금	215
3) 수수료	216
다. 이자 지급	217
1) 이자율	217
2) 이자의 계산기간	217
3) 이자의 지급시기	217
4) 이자의 지급방법	217
라. 계좌정보(신설·폐지 등) 및 거래내역의 한국은행 앞 전송	218
마. 정 정	218
바. 반 납	218

4. 한국은행의 국고예금 관리 219

가. 국고예금 계좌정보 등록 및 변경 219

나. 국고예금계좌 폐지 219

1) 정상 개설된 국고예금계좌의 폐지 219

2) 착오 개설된 국고예금계좌의 폐지 220

다. 이자지급의 대행 220

라. 계산증명의 대행 221

[부록2] 국고업무 전산화 연혁 223

[부록3] 기타 참고자료 235

1. 서식 목록 237

2. 회계계정 및 소관 일람표 239

3. 한국은행 본부 및 통할점 소재지 243

- 그 림 차 례 -

< 그림 I-1 >	결정기관 및 출납기관	6
< 그림 I-2 >	한국은행의 국고금 취급조직	10
< 그림 I-3 >	한국은행의 국고금 계리(예시)	36
< 그림 II-1 >	한국은행의 국고금 수납	55
< 그림 II-2 >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의 창구수납	58
< 그림 II-3 >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의 전자수납	59
< 그림 II-4 >	신용카드 카드론방식 수납	60
< 그림 II-5 >	인터넷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수납	61
< 그림 II-6 >	재정자금이체망 수납	62
< 그림 II-7 >	편의점 단말기를 이용한 국세 수납	63
< 그림 II-8 >	국고금의 신용카드 수납	64
< 그림 II-9 >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국세 수납	65
< 그림 II-10 >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금 수납	66
< 그림 II-11 >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예시)	100
< 그림 II-12 >	정정처리 수반시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예시)	103
< 그림 III-1 >	지출금의 처리과정	109
< 그림 III-2 >	세출금의 지급과정	115
< 그림 III-3 >	국세환급금의 처리과정	129
< 그림 III-4 >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처리과정(실시간 이체)	132
< 그림 VI-1 >	국고전산망 개념도	169
< 그림 [부록1]-1 >	국고예금 입·출금 과정(관서운영경비)	211

- 표 차 례 -

< 표 I-1 >	예산과 기금의 일반적 차이	17
< 표 I-2 >	한국은행 국고계좌 체계	33
< 표 II-1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44
< 표 II-2 >	정정사유별 전산입력 통할점	87
< 표 V-1 >	한국은행 국고금 출납계산서의 작성기준	162
< 표 V-2 >	국고금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165
< 표 VI-1 >	국고전산망 접속장비 규격	173
< 표 VI-2 >	국고전산망 실시간 송수신 전문 현황	185
< 표 VI-3 >	국고전산망 파일 송수신 전문 현황	187
< 표 VII-1 >	국고대리점 및 금융기관 제재기준	204

- 참 고 차 례 -

< 참고 I-1 >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의 국고금 계리	5
< 참고 I-2 >	수입대체경비와 선사용자금	8
< 참고 I-3 >	세입예산 과목구조 예시	13
< 참고 I-4 >	세출예산 분류기준과 예시	13
< 참고 I-5 >	자금관리	15
< 참고 I-6 >	월계대사 방법	22
< 참고 I-7 >	계정수급거래와 계좌수급거래	25
< 참고 I-8 >	조달사업회전자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28
< 참고 I-9 >	특별계정	30
< 참고 I-10 >	계좌개설 요청 요령	31
< 참고 I-11 >	국고시스템과 국고전산망의 관계	34
< 참고 II-1 >	수납증권 부도 처리 과정	52
< 참고 II-2 >	금융기관의 국고대리점계정	74
< 참고 II-3 >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고지 및 수납 예시	82
< 참고 II-4 >	내부정정의 의미	83
< 참고 II-5 >	입력누락 정정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	90
< 참고 III-1 >	국고금 지급사무의 위탁	110

< 참고 Ⅲ-2 >	기금의 자금계획 배정	111
< 참고 Ⅲ-3 >	국세환급금의 순환	128
< 참고 IV-1 >	2015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141
< 참고 VII-1 >	조기결제와 조기회수	197
< 참고 VII-2 >	국고업무지도 대상(예시)	206
< 참고 VII-3 >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208
< 참고 [부록1]-1 >	국고예금 계좌 개설관련 출납공무원 유의사항	213

- 보충설명 차례 -

< 보충설명 1 >	월계대사와 잔액증명	23
< 보충설명 2 >	수입의 지출자금화와 자금계획	26
< 보충설명 3 >	당좌차기 수납제도의 도입과 자동화의 난점	56
< 보충설명 4 >	금융기관, 국고대리점 및 금고은행	81
< 보충설명 5 >	수입금과 지출반납금간 착오	85
< 보충설명 6 >	국고금 지출가능잔액 관리제도의 변화	118
< 보충설명 7 >	국세환급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21
< 보충설명 8 >	우체국예탁금과 금융기관 당좌예금	149
< 보충설명 9 >	우체국예탁금과 자기앞수표	151
< 보충설명 10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156
< 보충설명 11 >	국고전산망과 한은금융망	170
< 보충설명 12 >	송수신 전문의 암호화	178

I . 국고제도 개관

- 1. 국고금의 의의와 국고제도**
- 2. 국고금 취급기관**
- 3. 국가 회계제도**
- 4. 월계대사**
- 5. 한국은행의 국고금 처리**

1. 국고금의 의의와 국고제도

가. 국고금의 의의

- 국고금이란 국민경제 활동의 3대 주체(가계, 기업, 국가) 중 하나인 국가의 경제활동, 즉 재정활동에 수반하는 일체의 현금을 의미
 -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일반적 기능과 구별하여 재적(財的)인 측면에서 볼 때의 국가 기능을 국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국고에 속하는 재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있으나 이 국고금에는 현금만 포함

나. 국고제도

- 국고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고금을 계리하는 경리제도를 의미하나 협의로는 국고금의 보관 및 출납, 즉 국고금 출납제도를 의미¹⁾

1) 국고제도의 분류

- 국고제도는 국고금의 보관 및 출납 형태에 따라 크게 금고제도와 예금제도로 구분하며 금고제도는 다시 특설금고제도와 위탁금고제도로 세분
 - 특설금고제도는 국가가 정부부처 조직 내에 국고금을 관리하는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국고금 출납사무를 수행하는 제도

1) 초기에는 국가가 직접 국고금의 보관 및 출납을 담당하다가 은행제도의 발달에 따라 점차 이를 은행에 위탁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국고금을 은행의 예금으로 예탁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음

- 위탁금고제도는 국가가 국가이외의 다른 기관에 국고금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제도로서 수탁기관은 국고금을 자체 자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설금고제도와 유사
- 예금제도는 국가가 중앙은행 등에 국고금을 예탁하여 두고 출납하는 제도로서 중앙은행 등이 수입한 국고금은 중앙은행의 국가예금으로 취급²⁾

2) 우리나라의 국고제도

- 우리나라의 국고제도는 예금제도로써 국고금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국가예금으로 예탁
 -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출납 상황을 국가예금의 수급 형태로 단순 관리하는 이외에 국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한 후 정부의 경리 결과와 상호대조 확인³⁾
- 한편, 종래 우리나라는 국고통일의 원칙(國庫統一의 原則)을 적용하여 모든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하였으나 2003년 「국고금관리법」 시행으로 기업특별회계·기금, 관서운영경비, 선사용자금, 보관금 등은 금융기관 예탁을 허용
 - 2015.5월말 현재 65개 공공기금 중 23개, 관서운영경비, 선사용자금, 보관금 등만 은행에 예탁되고 있으며 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나머지 국고금은 한국은행에 예탁중

2) 금고제도와 달리 예금제도 하에서는 국고금이 은행에 예탁된 후에는 은행 영업상의 예금에 포함되어 다른 일반 영업자금과 혼용되기 때문에 국가도 일반 예금자와 동등하게 취급됨. 따라서 결제리스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이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국고금을 예탁함

3) 국고금에 대하여는 각 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이 매월 단위로 출납금액을 상호대사 확인하고 있는 바 이를 월계대사(月計對査)라 함(자세한 내용은 'I.국고제도 개관 - 4.월계대사' 참조)

<참고 I-1>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의 국고금 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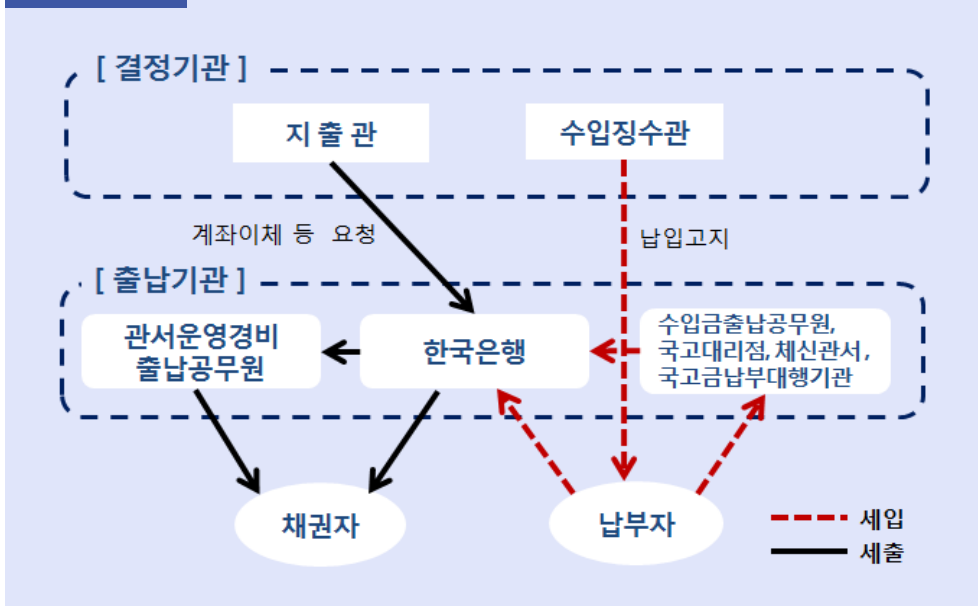
- 국고금 예탁기관에서 국고금 계리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특한 제도(원래 예금제도하에서 은행은 국고금의 출납상황을 국가예금의 수급으로만 단순관리)로 우리나라가 일본 국고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데 기인
 - 일본의 경우 특설금고제도(1868년 ~ 1890년)로 출발하여 위탁금고제도(1890년 ~ 1922년)를 거쳐 예금제도(1922년~)로 변천해 왔는데 위탁금고제도에서 예금제도로의 전환시 국고계리 업무를 담당할 마땅한 관서가 없어 예금제도 채택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국고계리 업무를 담당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지속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설립 당시 이미 담당 부처인 재무부가 있었음에도 조선은행 국고국이 취급하던 업무를 그대로 한국은행이 인수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고계리를 수행(현재 국고계리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수행한 후 이를 상호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2. 국고금 취급기관

가. 국고금 취급기관의 구분

- 국고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집행(출납)함으로써 종료
 - 결정기관은 국가의 다양한 회계기관 중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으로 구성
 - 출납기관은 결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

<그림 I-1> 결정기관 및 출납기관



나. 결정기관

1) 수입징수관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금을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징수 결정, 납입 고지 등의 업무를 담당

2) 지출관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고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재무관⁴⁾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받아 국고금 지출행위를 한 다음 출납기관에 지급을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

다. 출납기관

1) 출납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수입징수관·지출관 등으로부터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취급 사무에 따라 다양한 출납공무원 제도를 운영
 -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 징수관서에 소속되어 소속 관서의 수입금을 수납⁵⁾하는 공무원으로 수납한 수입금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납입

4)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 등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업무(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공무원

5) 「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원칙적 국고금 수납기관임. 모든 수입징수관서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국고금을 수납하는 기관은 세무서 및 세관 정도로 크게 많지 않음

-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수입대체경비징수관서에 소속되어 소속 관서의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하는 공무원으로 수입징수관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에 준하여 업무 처리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⁶⁾를 교부받아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금융기관의 국고예금에 자금을 예탁
-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 허용된 선사용자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금융기관의 국고예금⁷⁾에 자금을 예탁

<참고 I-2> 수입대체경비와 선사용자금

- 수입대체경비 : 수입이 세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금
 - 국가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징수되는 수수료, 입장료 등의 수입 중 수입과 지출이 연동(수입 증가시 지출도 증가)되는 경우에 지정
- 선사용자금 : 수입을 수입금으로 계리하기 전에 미리 사용(지급)한 다음 사후적으로 각각 수입금 및 지출금으로 대체 정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자금
 - 원래 국고금은 수입금 등으로 계리한 다음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허용(현재 우편·우체국예금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체신관서에서만 운용 중)

6) 소액의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 여비, 비정규직 보수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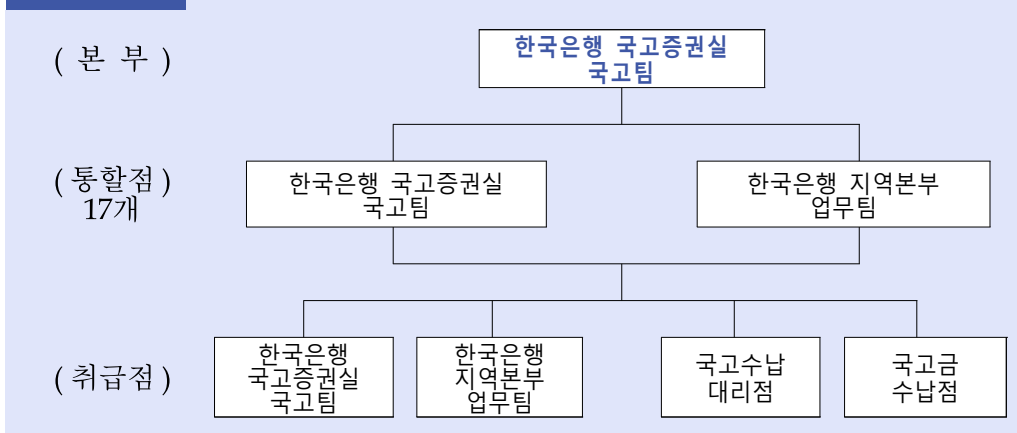
7) 현재 선사용자금은 우체국에서만 운용하고 있어 전부 우체국 국고예금에 예탁되고 있음

2)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의 수급, 회계처리 및 계산증명 업무를 담당하며 본부, 통할점, 취급점으로 구성
 - 본부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을 말하며 우리나라 국고금 취급사무를 총괄, 지출금의 계리, 국고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취급
 - 통할점이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를 말하며 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취급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국고금 취급사무를 통할하고 수입금 계리 업무를 취급
 - 취급점이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지역본부와 국고대리점이 해당
- 한편,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사무를 위임
 - 국고대리점은 은행 영업점을 지정한 국고수납대리점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원사(회원 조합, 은행, 금고) 및 그 영업점을 지정한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⁸⁾

8)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은 기능상 아무 차이가 없으며 계약방식에만 차이가 있음(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을 감안)

<그림 I-2> 한국은행의 국고금 취급조직



3) 체신관서(우체국)

- 체신관서(우체국)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
 - 우체국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도 국고대리점 수납분에 준하여 처리·결제하고 있으나 수납자금 회수와 관련된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4) 국고금납부대행기관

- 국고금 납부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는 기관(현재 금융결제원 한 곳만 지정 운영중)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수납 업무 취급
 -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도 국고대리점 수납분에 준하여 처리·결제하고 있으나 수납자금 회수와 관련된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3. 국가 회계제도

가. 국가회계와 한국은행

- 우리나라 국가회계는 「국가재정법」(2007.1.1.시행)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 회계제도와 「국가회계법」(2009.1.1.시행)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두 종류를 운영(「국가회계법」 시행 이전에는 현금주의 회계제도만 시행)
- 정부는 현금주의 회계제도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국고금 출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현금주의 회계만 실시

나. 국가회계의 특징

- 국고금의 수입(세입 + 기금수입)은 수입징수관이 담당하고 국고금의 지출(세출 + 기금지출)은 지출관이 담당하는 이원 구조
-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은 회계계정별, 소관별로 임명⁹⁾
- 국고금의 수급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기금 수입·지출 포함)과 자금관리 거래로 구분
- 예산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회계계정별, 소관별로 집행되며 자금관리 거래는 세입·세출외 거래로 당해연도 중 상환(반환)

9)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함. 수입징수관과 지출관 임명은 그 편의를 위하여 관서의 특정 관직을 수입징수관직 또는 지출관직으로 지정하고 동 관직에 임명되는 공무원은 당연히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함(예: 남대문세무서 총무과장직을 남대문세무서 수입징수관직으로 지정하는 경우 남대문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당연직 남대문세무서 수입징수관이 되는 방식)

다. 재정과 예산

-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 즉 예산안(수입·지출 계획)의 편성, 집행, 결산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및 국고금의 관리 등 모든 국고 업무를 포괄
- 예산안이란 일정 기간 동안¹⁰⁾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 협의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기금을 포함
- 예산안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
 - 예산총칙에는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 국채 또는 국가차입금의 한도액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

라. 예산의 구분

- 세입예산은 국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¹¹⁾되며 소관(중앙부처)별, 회계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세분¹²⁾

10)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되고 회계연도 개시 전과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예산 단년도주의).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계속비, 이월비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을 허용함

11) 일반적으로 국고금이라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징수, 관리(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징수·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국세와 세외수입 등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등과 공공기관의 수입인 전기요금, 전화요금과 같은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음

12) 한국은행은 세입에 대한 예산과목(관-항-목)별 계리는 수행하지 않음

- 국세수입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와 목적세(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구성
-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으로 정부출자수입, 벌금 등의 경상세외수입과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부담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

<참고 I-3> 세입예산 과목구조 예시

관	항	목
내국세	소득세	신고분
		원천분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 세출예산은 소관별, 회계별 구분 후 기능을 중심으로 장-관-항-세항-세세항으로 분류하고 성질에 따라 목(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등)-세목(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세분¹³⁾

<참고 I-4> 세출예산 분류기준과 예시

1. 기능별 분류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세세항 (세부사업)
농림해양	농업·농촌	농업생산 기반확충	농촌공사 시설관리지원	농촌공사수리 시설관리유지
		국제협력협상	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개발
과학기술	기술개발	우주개발진흥	인공위성개발	소형위성개발 사업(R&D)

13) 한국은행은 기능별로는 장(분야)까지 계리하고 성질별, 지출구분별 계리는 하지 않음

2. 성질별 분류

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물건비	운영비
	여 비

3. 지출구분별 분류

지출구분
일반지출
내부거래지출(회계간거래)
내부거래지출(회계내계정간거래)

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편성,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예산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종료

- 예산의 집행(지출)은 예산신청 → 예산배정 → 자금계획 신청 → 자금계획 배정 → 사업결의 → 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 결의 및 지급의뢰(지출관)의 순서로 처리
- 결산은 각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¹⁴⁾하는 것으로 감사원 검사 및 국회 심사가 필요

14)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기금수입지출결산(세입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부속명세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함

<참고 I-5> 자금관리

- 세출예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¹⁵⁾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시기의 조절, 부족자금의 조달,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
 - **자금계획** : 세입 시기에 맞추어 세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중앙관서별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자금계획)를 배정하는 행위(중앙관서에서는 동 한도범위내에서 개별 지출관별로 한도를 다시 배정)
 - **자금의 조달** :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¹⁶⁾에는 상호예탁¹⁷⁾, 재정증권 발행¹⁸⁾,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며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환(상환) 필요
 - **자금의 운용** : 세출예산 집행에 충당하고도 일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공채·통화채 등의 유가증권 매매, 금융기관 예치·단기대여, 증권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등으로 운용
 - **통합계정** : 여러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각 회계계정별 자금관리에 따른 불편 해소가 주된 목적

15) 정부도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국고금) 범위내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어 필연적으로 가용자금의 부족이나 여유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자금관리는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자금으로 처리됨(국고금의 수급에는 포함되나 월계대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

16)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며 동 자금은 당해연도 세입에 포함됨. 이렇게 세입에 편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고채권을 다른 용도(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금지원, 기 발행 국채의 차환 등)로 발행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적자국채라 함

17)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회계계정간 자금을 세입세출외로 상호 이용하는 것을 말함

18)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단기(1~3개월) 국채를 말함

바. 예산의 회계 구분

1) 일반회계

-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
 - 세입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 보유 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보전
 - 세출 :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16개 분야로 구분되고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부족자금 지원 역할도 수행

2) 특별회계

- 국가가 특정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양곡·조달·우체국예금·우편사업·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하고자 설치하는 회계¹⁹⁾
 -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에 충당하므로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정 사업의 성과와 경영실태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점
 - 반면,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국한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²⁰⁾

19)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특별회계는 목적세 수입을 제외하고는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20)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상호예탁하거나 통합관리하는 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3) 기 금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

○ 사회보험성기금²¹⁾, 계정성기금²²⁾, 금융성기금²³⁾, 사업성기금²⁴⁾ 등으로 분류

<표 I-1> 예산과 기금의 일반적 차이

구 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 사업 운영 - 특정 자금 운용 -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심의·의결	좌 동	- 관리주체의 계획수립 -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목적 외 사용금지	좌 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계획변경	- 추정예산 편성	좌 동	-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상 변경 시 국회 의결 필요
결 산	-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 동	좌 동
근 거	- 「국가재정법」 제4조	좌 동	- 「국가재정법」 제5조

21)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고용·산재보험 등과 같이 사회보장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22)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 등과 같이 특정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자금 수요처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금

2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금

24)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과 같이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사. 회계연도

— 국가가 재정수지 상황을 명백히 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회계기간(보통 1년)을 회계연도라 하며, 동 기간 단위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을 수행

○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1) 정부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가) 세입의 회계연도

—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 말일이 속하는 연도

○ 다만, 납기 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편입

—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그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나) 세출의 회계연도

-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은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 각종 반환금, 결혼보전금, 상환금 등은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급여, 여비, 수수료 등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 사용료, 보관료, 전기료 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 공사비, 제조비, 물건매입대가, 운임, 보조금 등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그 밖의 경비는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한국은행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국고금 수납일자와 지출일자가 속하는 연도를 회계연도로 적용²⁵⁾

25)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또는 지출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또는 지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실제 적용방법을 의미함. 정부와 한국은행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이 서로 다른 것은 한국은행이 수입, 지출의 원인행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동 차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출납정리기간 중 회계연도 정정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도 대부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 구분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봄

3) 출납정리기한

- 매 회계연도 경과 후 국고금내에서의 자금수급 정리를 위하여 이전 회계연도 소속 국고금을 수납하거나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의 말일²⁶⁾(익년도 1월 15일)
- 수입금의 출납정리기한 적용대상
 - 출납공무원 등으로부터 수입금 수납
 - 지방세에 부과되어 징수된 수입금 수납
 -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 선사용자금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 지출금의 출납정리기한 적용대상
 -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선사용자금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대한 출납정리기한 적용²⁷⁾
 -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26) 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 또는 한국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로 단축되게 됨(기획재정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조). 출납정리기한은 회계연도말의 개념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뒤로 이연되지 않고 앞으로 당겨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임

27) 수입금과 지출금의 출납정리기한에 대하여는 정부 및 한국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한국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월계대사

- 정부관서(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와 한국은행간에 국고금의 월중 수급금액을 대조 확인하는 절차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수입, 지출 및 출납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
- o 국가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정부 회계의 정확성과 회계감사의 엄정을 도모

가. 대사 범위

- 수입징수관, 지출관 및 지출을 위탁받은 출납공무원(수입금출납공무원 등 수납을 위탁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므로 제외)과 실시하며 자금관리 거래는 대사 대상에서 제외
- o 1~12월분 월계대사는 월중 거래가 있었던 계좌²⁸⁾에 대하여만 실시하며 거래가 없었던 계좌는 생략 가능(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계좌 공통)
- o 출납정리기간에 해당하는 최종월분(통상 13월분이라 함) 월계대사는 수급누계액이 있는 계좌는 모두 실시(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좌만 해당)

28) 정정 등으로 수급액을 가감하여 '0'이 된 계좌도 대사 대상임

나. 대사 시기

- 한국은행은 매월의 월계대사 자료(계수)를 다음 달 3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에게 제공
 -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5일까지 dBrain을 이용하여 월계대사 자료를 확인 처리²⁹⁾
- 한국은행과 지출관, 출납공무원은 매월 단위로, 수입징수관은 매분기 단위로 월계대사 결과를 포함한 계산증명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

<참고 I-6> 월계대사 방법

- 한국은행은 회계관계공무원이 dBrain을 이용하여 월계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월계대사 자료를 제공
 - 수입징수관, 지출관 및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출납공무원³⁰⁾은 dBrain을 통하여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월계대사를 실시
 -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출납공무원³¹⁾은 dBrain에 접속하여 한국은행이 dBrain에 제공한 월계대사 자료³²⁾를 이용하여 월계대사를 실시

29) 해당 일자는 법령상 기한이며 현재 정부의 국세수납정리계정 정리(익월 15일경 완료), 징수결정 지연 등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월계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월계대사결과 감사원 제출도 다음 다음 달 10일경에 이루어지고 있음

30)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 세계잉여금처리계정출납공무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 등이 있음

3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등이 있음

32)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dBrain간에는 매일 월계대사 의뢰와 실시결과를 파일교환 방식으로 송수신함

<보충설명1> 월계대사와 잔액증명

월계대사제도는 한국은행의 국고업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로 일반은행에서는 운용하고 있지 않음. 일반은행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월계대사와 가장 유사한 증명은 잔액증명서로 예금주의 요구에 의해 특정 시점의 잔액을 증명해 주고 있음. 한국은행이 발급하는 월계대사표와 은행이 발급하는 잔액증명서의 가장 큰 차이는 월계대사표가 월중, 연간 등 일정기간의 거래실적을 나타내는데 반해 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의 잔액만을 나타낸다는데 있음

증명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잔액증명서는 계좌별 잔액만 표시되는데 반해 월계대사표는 수입금의 경우 월중 수입금액, 월중 환급·반환금액, 월중 청구정정금액, 월말까지의 누계금액을 표시하고 지출금의 경우 월중 지출금액, 월중 반납금액, 월중 청구정정금액, 월말까지의 누계금액을 표시하고 있어 월계대사표가 내부통제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잔액증명의 경우 월초에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월말에 다시 입금한 후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와 월중 입출금이 없이 발급받은 잔액증명서가 동일한데 반해 월계대사표의 경우에는 수입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환급·반환금액란에, 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반납금액란에 표시되게 되어 입출금이 없이 발급받은 월계대사표와 확연히 구분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월계대사 제도 운영의 취지는 회계보고서와 월계대사표 대조·확인시 월중 수금액과 누계금액 뿐만 아니라 환급·반환금액, 반납금액, 청구정정금액까지 확인함으로써 강력한 내부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임

5. 한국은행의 국고금 계리

-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출납상황을 정부의 경리 결과와 상호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예금의 수급(자금계리)과 국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수급(국고계리)으로 이원 계리
 - 한국은행에 국가예금인 정부당좌예금 계정을 설치하고 예금주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국고금을 예수
 - 국고금의 수입 절차를 정부당좌예금의 수입방법으로, 국고금의 지출 절차를 정부당좌예금의 지급방법으로 사용
- 다만,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국고내대체)의 경우에는 정부당좌예금의 수급없이 국고계정·계좌의 수급으로만 처리

가. 한국은행 국고계리의 기본원리

- 정부회계기준에 맞추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계정을 설치³³⁾한 다음 동 계정 하위에 사용부처를 지정³⁴⁾하며, 각 계정의 원장은 회계연도별로 별도 개설³⁵⁾
 - 회계계정별, 소관별로 세입·세출 예산 집행상황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상황을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정부 경리 결과와 일치하도록 관리

33) 정부가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각 회계계정의 자금을 통합하는 통합계정을 운영함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상위에 통합계정을 설치함(통합계정에 소속된 회계계정의 수급명세를 추가로 작성)

34) 회계계정의 지정 및 계정별 사용부처의 지정은 수입·지출의 총괄담당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함

35) 매 회계연도 개시시 잔액을 '0'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각 회계연도 잔액은 결산상잉여금 처분이라는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각 회계계정별 소관 하위의 수입(대변)쪽에 수입징수관 계좌를, 지출(차변)쪽에 지출관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징수관의 거래는 대변에만 처리하고 지출관의 거래는 차변에만 처리³⁶⁾
 - 수입과 지출을 분리함으로써 정부 경리 결과와 일치
- 수입과 지출은 각각 수입징수관 계좌 및 지출관 계좌의 수급으로 처리하고 수입·지출을 제외한 자금관리 거래는 계정의 수급으로 이원화
 - 수입·지출(예산집행)과 자금관리 거래를 분리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집행상황과 계좌 거래가 일치

<참고 I-7> 계정수급거래와 계좌수급거래

- 일반적으로는 계정 수급액은 계좌 수급액의 합이 되어야 하나, 국고금은 예산의 집행과 자금관리 거래를 구분하는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정수급과 계좌수급으로 분리
 - 계정수급 총액은 계좌 수급액과 순수 계정 수급액(자금관리 거래)의 합으로 구성
 -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월계대사를 실시하고, 순수 계정 거래(자금관리 거래)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종료(보통 결산상잉여금 처분 종료시점을 의미)시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없도록 관리(매 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처분 종료(익년 12월경)후에는 모든 국고계정 잔액이 '0'이 되도록 함)
- 한편, 통합계정에 소속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경우 자체 계정수급은 없으며 상위 계정인 통합계정이 수행(동 회계계정의 수급명세상 일시적으로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보전하여야 함)

36) 이에 따라 마이너스(-)거래를 상대방의 증가로 계상하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차대변에 마이너스(-) 거래를 발생시킴. 차변의 지출반납금(수납에 해당), 대변의 환급·반환금 등이 이에 해당함

— 국고금의 지급은 각 회계계정의 잔액 범위내에서만 가능³⁷⁾하며, 이와는 별도로 지출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배정한 자금계획 잔액, 수입금의 환급·반환의 경우에는 당해 계좌 잔액 범위내에서만 가능

$$\begin{aligned} \circ \text{ 회계계정 잔액} &= \text{총 계정수입(수입금 + 자금관리수입) 누계}^{38)} \\ &\quad - \text{총 계정지출(지출금 + 자금관리지출) 누계} \end{aligned}$$

<보충설명2> 수입의 지출자금화와 자금계획

국고금이 수입되면 국가예금이 증가하나 수입기관이 동 예금을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기관을 별도로 두는 구조이므로 국가예금의 소유자를 지정하고 동 소유자가 수입자금을 지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출 필요가 있음. 이를 반영하여 「국고금관리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고금 총괄관리담당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국가예금의 예금주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된 국가예금의 처분권을 각 지출관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각 중앙관서별, 지출관별 자금계획(지출가능한도) 배정을 동 절차로 보고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계획을 배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자금계획을 소속 지출관별 재배정하며 지출관은 동 한도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자금계획을 통지받아 동 한도 범위내에서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지출관별 자금계획은 통보받지 않고 있음

한편, 자금계획은 회계계정 잔액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자금계획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해당 금액의 지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지출시점에 해당 회계계정의 잔액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함. 따라서 지출관 입장에서는 예산, 자금계획, 회계계정 세 부분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함

37) 국고금은 수입기관과 지출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회계계정을 매개로 누구의 수입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거래로 회계계정의 잔액을 증가시킨 후 동 잔액 범위내에서 지출 거래를 허용(잔액 감소)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음

38) 한국은행의 타점권 수납액 등 수납자금이 한국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됨

나. 국고금의 종류

1) 수입금

- 세입금(일반회계, 국세수납정리계정 및 특별회계 수입)과 기금의 수입을 합쳐 수입금이라 하며 「국고금관리법」 상으로는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자금으로 정의

2) 지출금

- 세출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과 기금의 지출을 합쳐 지출금이라 하며 「국고금관리법」 상으로는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으로 정의

3)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 과거 기금의 일종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금에서 제외된 국고금(특별계정으로 편입)
 - 조달사업회전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이 해당되며 복식부기에 의해 처리되는 다른 특별계정과 달리 기금에 준하여 처리

4) 자금관리용 국고금

- 수입금과 지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금 관리 거래로 발생하는 국고금
 - 국고금의 상호예탁·운용,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발행, 결산상잉여금의 처분³⁹⁾ 등

39) 결산상잉여금은 이월예산액과 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산상잉여금 처분에는 세계잉여금 처분이 포함됨

<참고 I-8> 조달사업회전자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 **조달사업회전자금** : 회전자금이란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입금과 지출금에 반영하지 않고 회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금을 말하며 현재 조달사업특별회계만 운용중
 - 조달사업은 다른 부처의 의뢰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물자대금은 조달청이 공급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의뢰 부처로부터 원금에 수수료를 추가한 금액을 징수
 - 이에 따라 국가 전체로 보면 하나의 물자를 조달하였음에도 물자대금은 2회 지출(조달청 지급시 1회, 의뢰부처 지급시 1회), 1회 수납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달청으로 하여금 수수료 부분만 수입으로 반영하고 조달청의 물자대금 지급액 및 원금 회수분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로 반영하지 않도록 허용
- **우체국보험적립금** : 우체국이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책임적립금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정

5) 기타의 국고금

- 수입·지출금 및 자금관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은행 및 정부관서의 국고금 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또는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자금
 - 국채의 발행·상환 자금
 - 수입인지 판매대금
 - 금융업을 영위하는 우체국의 자금(우체국예탁금⁴⁰⁾ 및 우체국수급금⁴¹⁾)

40) 우체국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처리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정으로 금융기관 본점의 당좌예금 계좌 역할을 함

41) 금융업을 영위하는 우체국의 잔여 현금(우체국과초금)과 결핍 현금(우체국자금)을 합친 개념. 동 과초금과 자금은 금융기관 현금과 같은 형태로 한국은행과 수수하게 되며 수납 또는 지급된 자금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설치된 우체국예탁금계정 입출금으로 정리됨. 현재 국고금관리법령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대통령령)과 한국은행 내규에 따라 처리중임

다. 국고계리 방법

1) 회계계정의 개설

— 국고금 관리를 위한 최소 단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정부 회계단위로 설치

- 통합계정, 일반회계(국세수납정리계정 별도 운영), 특별회계, 기금, 특별계정(기금에 준하는 경우와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으로 구분 정리

2) 소관의 신설

— 정부의 회계경리 업무가 중앙부처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 회계계정의 담당 부처(소관)를 지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

- 일반회계를 사용하지 않는 부처는 없으므로 일반회계의 소관은 모든 중앙부처로 지정
- 특별회계의 경우 1개 이상(수 개 부처 지정 가능)의 부처를 지정
- 기금의 경우 1개의 부처만 지정⁴²⁾
- 특별계정의 경우 특별히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로 지정

42)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관리담당의 역할을 수행(자금계획 배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므로 수 개의 소관을 지정하더라도 관계없으나(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 기금의 경우 총괄관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기금관리부처가 담당하므로 2개 이상의 부처를 지정할 경우 소유권 충돌 현상이 발생(처분권이 어느 부처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불가능함

<참고 I-9> 특별계정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아니나 국고금 관리상 수반하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정으로 기금에 준하는 계정을 제외하고는 복식부기 방식에 의거 처리
 - 기금에 준하는 계정 : 조달사업회전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 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계정
 - 출납공무원 계좌 설치를 위한 계정 : 국고금세부운용, 국고금운용수익, 세계잉여금처리, 우체국예탁금, 지방소비세 계정
 - 경과계정⁴³⁾ : 국고금예탁, 재정증권, 우체국수급금, 차입금, 일시차입금 계정
 - 국고금 출납상 한국은행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계정 : 국고송금자금, 미집중국고금처리, 대리점수급액정리, 계좌입금정리, 계좌입금불능정리, 금융기관예탁금, 비예탁국고예금정리 계정
 - 정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해 설치한 계정 : 재정증권 발행·상환자금, 외평기금채권 발행·상환자금, 국고채권 발행·상환자금, 공공용지 보상채권상환자금, 징발보상교부금, 수입인지판매대금 계정
 - 기타 계정 : 국고가수급계정(용도 불분명)

43) 과거 수작업 처리시 실행, 반환 등 수급 과정을 좀 더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보조부 기록 누락 방지를 위해 계정과목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수반토록 하였던 바, 동 계정과목들을 경과계정이라 함(예: 일반회계와 ○○기금간 상호예탁의 경우 반드시 반환하여야 할 자금이나 각 회계계정의 방대한 계정수급의 기록을 감안할 때 반환 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상호예탁에 대한 보조부를 두고 이를 별도 관리하였으며, 동 기록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금예탁계정을 경과계정으로 설치)

3) 계좌의 개설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회계계정의 소관으로 지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 개설을 요청

<참고 I-10> 계좌개설 요청 요령

□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관 계좌는 수입징수관서별로 개설하며 각 통할점(수입징수관서 소재지 기준)에 계좌를 개설
-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징수관서 신설 등으로 계좌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의뢰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 수입징수관직 지정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의 실명 및 인감의 신고는 불필요

□ 지출관

- 지출관 계좌는 회계계정별로 중앙관서 단위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개설하며 개별관서 지출관은 중앙관서 계좌의 사용자로 등록(통할점별 등록)⁴⁴⁾
- 계좌를 개설한 중앙관서 단위로 자금계획 잔액을 관리하며 개별관서 지출관은 지출누계액만 관리(잔액은 중앙관서 계좌의 잔액을 공유)

44) 중앙관서 계좌에는 계좌번호(Axxxxx 또는 Bxxxxx)를 부여하고 개별 지출관에게는 고유번호(Dxxxxx 또는 Exxxxx)를 부여함. 통할점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거래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귀속됨. 따라서 통할점은 거래내역의 조회, 월계대사 등의 업무만 담당함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의 신설 등으로 지출관 계좌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 지출관계좌 신설 의뢰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 지출관의 실명 및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 이후 지출관 임면시 변경 신고도 필요(미신고시 국고전산망 장애 등에 따른 서면 지급 등이 불가능)
-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를 개설한 중앙관서의 장은 실제 지출을 담당할 개별 지출관의 등록을 위하여 지출관 고유번호 부여 의뢰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 지출관직 지정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출관의 실명 및 인감의 신고는 불필요
 -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 신설시 의뢰한 중앙관서 지출관도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지출업무 수행 가능⁴⁵⁾
- 기 개설된 계좌 또는 고유번호에 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절차에 준하여 처리

□ 출납공무원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출납공무원 계좌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출납공무원계좌 신설 요청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 출납공무원의 실명 및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계좌 신설이후 출납공무원 임면시 변경 신고도 필요(미신고시 국고전산망 장애 등에 따른 서면 지급 등이 불가능)

45) 개별 지출관 지출의 합이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 지출금액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요청을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계정, 소관 하위에 계좌를 개설

<표 I-2> 한국은행 국고계좌 체계

계좌 종류	계좌번호 체계	관리 담당
수입징수관계좌	숫자 6자리	통할점
중앙지출관계좌 (개별지출관 고유번호)	A또는B + 숫자5자리 (D또는E + 숫자5자리)	본 부 (통할점)
출납공무원계좌	숫자 6자리	본 부

라. 국고업무 처리수단

- 국고거래는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우체국, 금융결제원 포함)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전산망에 의해 OLTP⁴⁶⁾ 또는 FTP⁴⁷⁾ 방식으로 처리
 - o 국고금의 지급, 관세·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 과오납금반환, 국세를 제외한 국고금의 정정, 계정계좌 잔액의 조회, 월계대사 등의 업무는 OLTP 방식
 - o 국고금의 수납, 국세환급, 국세 오납정정, 국고금취급관련 정보 등의 업무는 FTP 방식
- 한국은행 창구에서 발생하는 계정·계좌의 개설, 국고금 수납·지급⁴⁸⁾, 국고전산망 운영·처리 현황에 대한 조회·출력 등의 업무는 한국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인 국고(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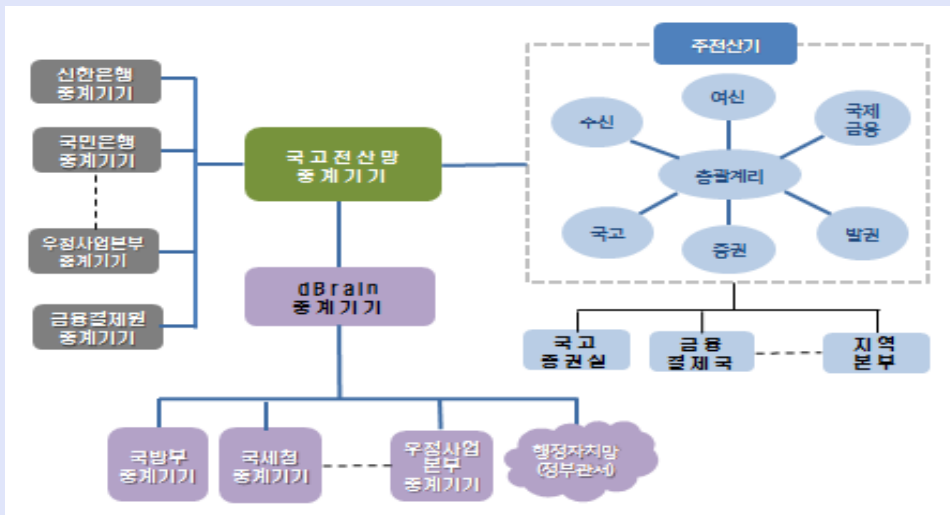
46) On-line Realtime Transaction Processing : 매 거래 또는 정보를 건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

47) File Transfer Protocol : 거래 또는 정보를 파일 단위로 묶어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

48) 국고금의 수납, 법원의 전부·추심명령에 따른 지급, 국고전산망 장애 등에 따른 서면 요청에 의한 지급 등이 있음

<참고 I-II> 국고시스템과 국고전산망의 관계

- 국고시스템이란 한국은행의 회계⁴⁹⁾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인 회계시스템⁵⁰⁾의 일부
 - 한국은행 담당직원이 단말기를 통하여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국고 업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결과의 조회, 각종 보고서의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
 - 또한,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송수신한 전문을 이용한 회계처리 및 결과의 조회, 운영상황 제어 등도 포함
- 이에 반하여 국고전산망은 협의로는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간 전산시스템(중계기기)을 연결한 전산망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동 전산망을 통하여 송수신된 전문을 업무용 전산기기⁵¹⁾에서 처리하는 것을 포함



49) 회계란 다양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으나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국가 등)에 귀속되는 재산 또는 자본의 증감변동의 과정을 기록·계산·정리하여 그 결과를 명확히 하는 가치계산'이라 할 수 있음

50) 한국은행 총계정원장 설치부서(인사경영국, 금융결제국, 국제국, 국고증권실, 외자운용원, 16개 지역본부 등을 말함. 이중 실과 원은 국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사용부서로 별도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음)에서 총계정거래를 취급하는 총괄계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여신, 수신, 국고, 증권, 발권, 국제금융 등 7개 시스템이 있음(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의 회계거래는 총계정원장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총괄계리시스템 이외 회계시스템에서 발생시키는 거래 중 총계정원장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래는 총괄계리시스템에 반영됨)

51) 한국은행과 같이 IBM 메인프레임(Main Fram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전산기를 말하며, dBrain과 같이 Unix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서버(중계기기에 대응하는 말임)를 말함

마. 국고금의 계리

1) 수입금의 계리

— 수입금의 수납, 정정, 환급, 반환 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계좌 및 소속 회계계정의 수급으로 계리

○ 통합계정 소속 회계의 경우 통합계정 및 소속회계의 수급으로 이원 계리

2) 지출금의 계리

— 지출금의 지급, 정정, 반납 거래에 대하여는 지출관 계좌 및 소속 회계계정의 수급으로 계리

○ 통합계정 소속 회계의 경우 통합계정 및 소속회계의 수급으로 이원 계리

3) 자금관리의 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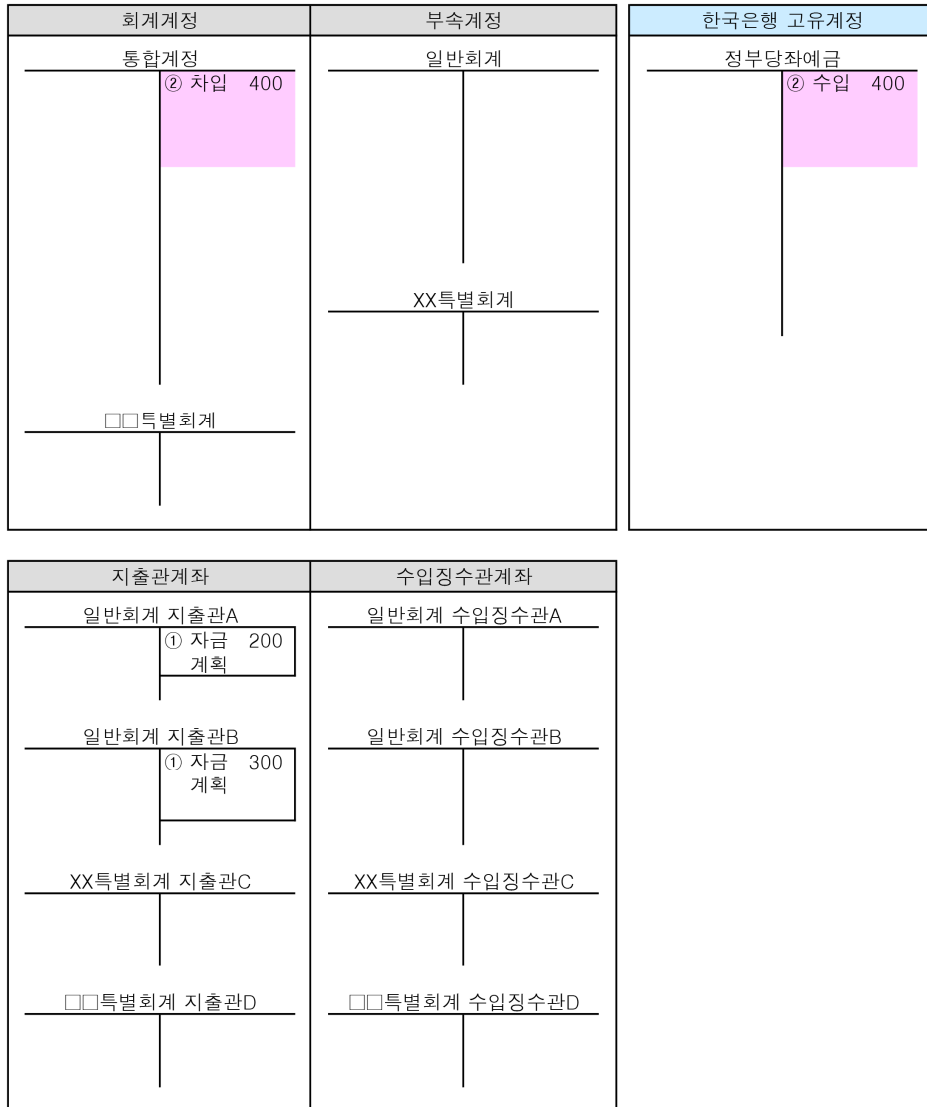
— 자금관리용 수급에 대하여는 통합계정 및 통합계정 미소속 회계의 수급으로 계리

4) 기타의 국고금에 대한 계리

— 기타의 국고금(기금에 준하는 국고금은 제외) 수급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특별계정·계좌의 수급으로 계리

<그림 I-3> 한국은행의 국고금 계리(예시⅓)

- ① 일반회계 지출관A, 지출관B에게 각각 200원, 300원의 자금계획을 배정
 ② 통합계정 국고수입이 없어 한국은행으로부터 400원 차입



<그림 I-3> 한국은행의 국고금 계리(예시^{2/3})

- ③ 일반회계 수입징수관A 100원, 수입징수관B 200원 수입
④ XX특별회계 지출관C에게 200원의 자금계획을 배정
⑤ 지출관A, 지출관B, 지출관C가 각각 200원, 200원, 100원을 지출

회계계정	부속계정	한국은행 고유계정																						
통합계정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② 차입 400</td></tr><tr><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td></tr><tr><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100</td><td style="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100</td></tr><tr><td></td><td style="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200</td></tr></table> □□특별회계	⑤ 지출 200	② 차입 400	⑤ 지출 200		⑤ 지출 100	③ 수입 100		③ 수입 200	일반회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100</td></tr><tr><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 style="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200</td></tr></table> XX특별회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100</td><td></td></tr></table>	⑤ 지출 200	③ 수입 100	⑤ 지출 200	③ 수입 200	⑤ 지출 100		정부당좌예금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② 수입 400</td></tr><tr><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td></tr><tr><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100</td><td style="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100</td></tr><tr><td></td><td style="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200</td></tr></table>	⑤ 지출 200	② 수입 400	⑤ 지출 200		⑤ 지출 100	③ 수입 100		③ 수입 200
⑤ 지출 200	② 차입 400																							
⑤ 지출 200																								
⑤ 지출 100	③ 수입 100																							
	③ 수입 200																							
⑤ 지출 200	③ 수입 100																							
⑤ 지출 200	③ 수입 200																							
⑤ 지출 100																								
⑤ 지출 200	② 수입 400																							
⑤ 지출 200																								
⑤ 지출 100	③ 수입 100																							
	③ 수입 200																							

지출관계자	수입징수관계자												
일반회계 지출관A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① 자금 200 계획</td></tr></table> 일반회계 지출관B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20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① 자금 300 계획</td></tr></table> XX특별회계 지출관C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⑤ 지출 10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④ 자금 200 계획</td></tr></table> □□특별회계 지출관D	⑤ 지출 200	① 자금 200 계획	⑤ 지출 200	① 자금 300 계획	⑤ 지출 100	④ 자금 200 계획	일반회계 수입징수관A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100</td></tr></table> 일반회계 수입징수관B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td><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③ 수입 200</td></tr></table> XX특별회계 수입징수관C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td><td style="width: 50%;"></td></tr></table> □□특별회계 수입징수관D		③ 수입 100		③ 수입 200		
⑤ 지출 200	① 자금 200 계획												
⑤ 지출 200	① 자금 300 계획												
⑤ 지출 100	④ 자금 200 계획												
	③ 수입 100												
	③ 수입 200												

<그림 I-3> 한국은행의 국고금 거래(예시 $\frac{3}{3}$)

- ⑥ □□특별회계(통합계정 미소속) 지출관D에게 200원의 자금계획을 배정
 ⑦ □□특별회계 수입이 없어 한국은행으로부터 200원 차입
 ⑧ 지출관D가 200원을 지출
 ⑨ □□특별회계 수입징수관D 100원 수입

회계계성		부속계성		한국은행 고유계성	
통합계정		일반회계		정부당좌예금	
⑤ 지출 200	② 차입 400	⑤ 지출 200	③ 수입 100	⑤ 지출 200	② 수입 400
⑤ 지출 200		⑤ 지출 200	③ 수입 200	⑤ 지출 200	
⑤ 지출 100	③ 수입 100			⑤ 지출 100	③ 수입 100
	③ 수입 200			⑧ 지출 200	③ 수입 200
		XX특별회계			⑦ 차입 200
		⑤ 지출 100			⑨ 수입 100
□□특별회계					
⑧ 지출 200	⑦ 차입 200				
	⑨ 수입 100				

지출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일반회계 지출관A		일반회계 수입징수관A	
⑤ 지출 200	① 자금 200 계획		③ 수입 100
일반회계 지출관B		일반회계 수입징수관B	
⑤ 지출 200	① 자금 300 계획		③ 수입 200
XX특별회계 지출관C		XX특별회계 수입징수관C	
⑤ 지출 100	④ 자금 200 계획		
□□특별회계 지출관D		□□특별회계 수입징수관D	
⑧ 지출 200	⑥ 자금 200 계획		⑨ 수입 100

바. 회계연도의 마감과 이월

- 국가의 회계도 기업 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를 구분하므로 하나의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다음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
- 수입·지출은 매 회계연도 잔액(회계계정별 수입·지출의 차액 = 결산상잉여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어 단순 이월이 없고 결산상잉여금 처분 절차⁵²⁾에 따라 처리하며 새로운 회계연도는 영(zero)에서부터 시작
 - o 잉여금 처분안이 이월예산, 다른 회계계정 이입, 추경편성 등 신회계연도에 집행되는 항목으로 결정되는 경우 결산상잉여금은 세출외로 출금하여 신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편입
 - o 기타의 경우에는 세출외로 출금하여 지정된 계정·계좌로 편입
- 한국은행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국가회계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국고금에 대한 결산 수정 등의 업무는 미처리
- 다만, 특별계정의 경우 이미 수입·지출로 처리되었거나 정당한 수입·지출로 처리될 자금이므로 회계연도 구분의 실익이 없어 단순 연도이월 절차를 수행⁵³⁾

52)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상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함

①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

② ①의 사용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100의 30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원

③ ①,②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00의 30이상을 다음과 같은 채무의 상환에 사용가능
i)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ii)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iii)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차입금(예수금 포함)의 원리금 iv)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부담하는 국가채무

④ ①~③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

53) 매 회계연도 말일의 잔액을 차기이월하여 '0'으로 만든 다음 신회계연도에 전기이월하여 잔액을 생성함

Ⅱ . 국고금의 수납

1. 개 요
2. 수납대상 국고금
3. 수납시 확인사항
4.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요령
5. 수납 기관별 수납매체
6.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계리
7. 주세, 지방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의 특례
8.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정정

1. 개 요

- 재정활동에 수반하는 모든 현금을 국고금이라 하므로 국고금 수납이라 하면 수입금, 지출반납금 뿐만 아니라 상호예탁, 일시차입 등 자금관리와 우체국과초금, 조달사업회전자금 같은 기타의 거래로 발생하는 국고금의 수납을 포함
- 이 중 자금관리와 기타의 국고금은 대부분의 거래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서만 취급⁵⁴⁾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고금 수납이라 하면 수입금(세입 및 기금수입)과 지출반납금만을 지칭하는 경향

☞ 협의의 국고금 수납에 대해 중점 기술하고 자금관리 등은 별도로 기술⁵⁵⁾

2. 수납대상 국고금

가. 수납가능 국고금의 종류

1) 수입금

- 수입징수관의 고지 또는 납부자의 고지전 납부(자진납부) 방식에 의해 납부되는 세입금(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의 수입
 - o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법에 의해 납부되는 국세 이외에 국유재산 등의 점용·사용·이용료, 각종 벌과금, 범칙금, 부담금, 보험료와 수수료, 고공입장료, 수출품파출검사수수료 등⁵⁶⁾

54) 우체국과초금(지역본부에서도 수납)과 기금에 준하는 특별계정(기금에 준하므로 모든 취급점에 서 수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서만 취급

55) 자금관리 거래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직접 연계(상호예탁,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당해연도 상환 등) 되고 경과계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수납(수입) 거래에 지출이 수반하는 등 거래내용이 복잡하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수납과 지급을 동시에 기술함('IV.자금관리 등 기타의 국고금 수납' 참조)

56)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관리하는 지방세와 공공기관의 수입인 전기요금, 전화요금과 같은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음

<표 II-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구 분		보 통 세	목 적 세
국 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재평가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 세	관세	—
지 방 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은 국고금이 아님

2) 지출반납금

- 지출관이 지급한 국고금 중 과다 지출 또는 교부 등의 사유로 기 지급된 국고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출관의 고지에 의해 반환

3)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 과거 기금의 일종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금에서 제외된 국고금 중 한국은행에 예탁되어 기금에 준하여 처리되는 국고금으로 기타의 국고금의 한 종류로 분류

- o 조달사업회전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4) 자금관리용 국고금

— 수입·지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입과 지출 시기 불일치 조절과 같이 수입·지출 관리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국고금

○ 일시차입⁵⁷⁾, 재정증권 발행자금, 국고금 상호예탁, 결산상잉여금 처분, 국고여유자금 운용 등

5) 기타의 국고금

— 수입·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국고금으로 한국은행 및 정부관서의 국고금 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또는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국고금

○ 국채의 발행·상환자금, 수입인지판매대금, 우체국예탁금, 우체국수급금 등

나. 수납기관별 수납가능 국고금⁵⁸⁾

— 한국은행 : 모든 수납대상 국고금

—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 : 수입금, 지출반납금 및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⁵⁹⁾

— 국고금납부대행기관 : 관련 법령상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국고금⁶⁰⁾

— 수입금출납공무원 :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관서의 수입금

57)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부대출금임

58) 한국은행에 예탁하는 국고금에 대해서만 한정함(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기금 및 국고예금, 한국은행에 납부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예탁중인 국고금(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은 제외)

59)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은 수입금, 지출반납금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동 국고금에 포함되어 있음

60) 국세·관세, 경찰청 과태료, 법원 인지대, 고용·산재보험료, 과적과태료·도로점용료 등이 허용되어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2015.7월 현재 1.0%)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수납시 확인사항

가. 수납 절차

— 납부자가 창구에 방문하여 기재사항이 충족된 납부서류(국고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관련 고지서 또는 납부서 등)와 함께 금전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영수증서 등을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

- ① 납부서류 기재사항 확인 후 금전과 함께 수납
- ② 납부서류에 수납인 날인
- ③ 납부서 내용 전산입력
- ④ 영수증서 등에 수납점포명, 수납일, 납부자, 수납금액 등을 전산인자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 ⑤ 증빙 정리 및 국고금 수납내역장을 출력하여 책임자가 검인한 후 보관
- ⑥ 영수필통지서 송부(필요시)

※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기관과 달리 수납자와 전산입력자가 서로 다르므로 ③과 ④의 순서가 바뀜. 또한 국고대리점의 경우에도 다량의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③과 ④의 순서를 바꾸어 처리할 수 있음

— 창구수납 이외의 경우에는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거나 새로운 절차에 의해 처리 가능

나. 확인사항

1) 국고 수입금(또는 지출반납금)일 것

- 납부서 상에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거나, 수입징수관 계좌번호(000001-0 ~ 999999-9 사이) 또는 지출관 계좌번호(D00001-0 ~ Z99999-9 사이)가 기재되어 있을 것

2) 금액 표시

- 금액 정정이 없을 것⁶¹⁾
-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없을 것⁶²⁾
- 금액이 한자로 쓰인 경우 ‘一’, ‘二’, ‘三’, ‘十’의 숫자는 ‘壹’, ‘貳’, ‘參’, ‘拾’으로 표시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인 경우에는 가로쓰기로만 표시될 것

3) 납부서 기재사항의 충족

- (수입징수관·지출관)관서명, (수입징수관·지출관)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또는 납부자번호), 금액 등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을 것
 - 국세청 소관 수입금인 경우 세목코드 추가 확인 필요
 - 일반회계 지출반납금인 경우 분야(기능) 코드 추가 확인 필요
- 납부서류 상호간(납부서, 영수증서 등) 기재사항이 일치할 것

61) 금액 정정이 있는 납부서류는 재발급 받아 납부토록 안내하여야 함

62)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경우 원단위 금액을 버리고 수납하고, 2개 이상 세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건별로 원단위 금액을 버린 후 이의 총합계 금액을 수납해야 함

4) 납부기한

— 납부서류에 기재된 납부기한⁶³⁾ 이내일 것

- 다만,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관계 수입징수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에도 수납 가능

— 특히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성격의 국고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이외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납부기한 경과분을 임의로 수납하는 경우 미납한 것으로 처리⁶⁴⁾됨에 유의

63) 납기일이 한국은행 휴무일(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까지 수납 가능함

64) 미납에 따른 처분을 받고 기 납부 국고금(납부기한 경과 납부분)을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반환을 받아야 함

4. 증권에 의한 국고금 수납요령

가. 증권에 의한 수납

1) 의미와 근거

- 국고금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증권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수납 가능 증권 및 수납 절차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

2) 수납 가능 증권의 종류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 국고금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등을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우편소액환증서·우편전신환증서·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3) 수납증권의 조건⁶⁵⁾

- 어음교환⁶⁶⁾이 가능하고 증권금액이 납부할 금액 이내일 것⁶⁷⁾
-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고 수령일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증권은 수령 거절 가능

4) 수납 절차

- 증권 뒷면에 납부자의 연락처 기재 및 기명날인
- 납부서류의 표면여백에 “증권수령”(당좌수표를 수납한 경우에는 “당좌수표 수령”)이라 표기하고, 국고금의 일부를 증권으로 수령한 때에는 해당 증권금액도 함께 표시
- 수납내역 입력 시 증권의 종류를 입력
 - 특히 관세의 경우 반드시 증권 종류를 입력⁶⁸⁾

65) 금융기관은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정지 수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조건에 불구하고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임

66) 현재 어음교환은 전자정보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져 전국을 단일 어음교환 구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없는 조건임. 그러나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물교환으로 전환되므로 동 시점에는 어음교환 구역의 제한을 받음

67) 한국은행은 수표금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가수금에 입금하였다가 어음교환 결제 후 납부자에게 환급(계좌에 입금 가능)토록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함

68)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 수납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관세가 수표로 납부된 경우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납된 수표의 교환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이 보류될 수 있음

5) 수납증권 부도시 처리 절차

- 국고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국고금의 수납을 취소⁶⁹⁾하고, 동 사실을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지급은행의 부도어음신고서 첨부)에 의해 해당 수입징수(지출)관에 통지(Fax 송신)
- 납부자에게 수납취소 사실을 알리고 이미 교부한 영수증과 부도증권 수령증을 받고 부도증권을 반환
 - o 국고금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수증에 취소내용을 기재하여 반환하며, 납부자 앞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납취소 통지내용을 해당 점포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

가) 한국은행 수납분 취소 절차

- 수납증권 부도에 따른 국고금 취소로 전산입력(일부 부도시 해당 금액만 취소)

나) 국고대리점 수납분 취소 절차

- ① 국고금 수납내역장(전산출력자료 포함) 및 납부(고지)서에 해당 취소 금액과 취소일자를 기재
- ②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지급은행의 부도어음신고서 첨부)를 Fax로 담당 통할점에 송신⁷⁰⁾
- ③ 통할점에서는 접수한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에 따라 수납증권 부도에 따른 국고금 취소로 전산입력⁷¹⁾

69) 수납한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국고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국고금의 수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국고금의 수납을 취소하여야 함

70) 국고금의 수납취소는 국고대리점에서는 수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 통할점에서만 가능함

71) 취소대상 금액이 입력당일 해당 대리점(결제모집)의 수납분 보고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고금액 만큼만 분할하여 입력(반환)하고 나머지는 다음 영업일 수납분 보고금액에서 추가 입력(반환)하여야 함

다) 수입금출납공무원 수납분 취소 절차⁷²⁾

- 수납한 국고금을 납입한 기관(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으로부터 수납취소 통지⁷³⁾를 받는 경우 당해 수납내역을 정리(취소)하고 소속 수입징수관에게 취소 대상 수납내역을 보고

<참고 II-1> 수납증권 부도 처리 과정

	수납내역	수납증권
D일	① 전산입력	① 어음교환 제시(전자교환)
D+1일	② 수납내역 보고	② 어음교환 { 결 제 ← 연 장 미결제 → 부도 ← }
	③ 부도 처리(결제대상금액에서 부도금액 차감)	③ 부도 통지
D+2일	④ 부도금액을 제외한 수납자금 결제	④ 부도금액 정산

나. 수납증권 부도연장 처리요령⁷⁴⁾

-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시은행(수납은행)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담당 통할점 및 수입징수관 관할 통할점과 연장시간을 사전 협의후 결정

72)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경우 수납한 국고금을 그대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에 납부(납부자를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1건으로 합산 납부)하게 되므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이 수입징수관에 통지하는 취소 통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님

73) 수납기관이 납부자(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는 '수납취소'에 해당함

74) 수납증권의 어음교환 회부후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시각(영업종료시각)까지 부도어음 통지를 받으면 처리절차가 간단하나 실무적으로 보면 제시은행과의 합의에 의해 부도통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고금으로 수납된 증권인 경우 제시은행(수납은행)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국고금 수납이 취소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함

다. 부도취소에 따른 국고대리점 자금결제

- 한국은행은 수납자금의 결제일과 관계없이 수납 취소일의 다음 영업일에 결제할 국고금 수납 자금에서 부도취소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결제
- 수납 다음 영업일 한국은행 국고마감 전까지 부도취소를 완료하여야 국고대리점에 불이익이 없으며 이를 지연할 경우 최소 1영업일 이상의 자금 손실이 발생⁷⁵⁾

75) 국고대리점 수납자금은 수납한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에 보고되고 보고 다음 영업일에 각 국고대리점 결제모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에서 결제되므로 수납 다음 영업일에 부도취소하지 않으면 수납금액 전액(부도취소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결제됨. 특히 한국은행 국고자금 결제는 당좌차기 방식(잔액 증가없이 감소만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 수납취소 하고자 하는 날의 수납내역 보고금액이 취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은 취소될 수 없어 국고대리점의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여야 함(수납 다음 영업일에는 취소대상 수납내역이 보고된 상태이므로 취소금액 부족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5. 수납 기관별 수납매체

가. 한국은행

1) 창구수납

— 일반 납부자 또는 한국은행(법인세, 소득세 등)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2) 한은금융망 수납(당좌차기 수납)⁷⁶⁾

— 금융기관이 한은금융망의 당좌차기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o 납부서는 한국은행으로 Fax 송부하고 납부자금은 한은금융망 당좌차기 거래로 이체

- 수납내역을 납부자가 입력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입력

o 통합계정·기금·우체국예탁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등의 여유자금 운용분 회수시 주로 사용

3) 회계시스템 대체수납

— 한국은행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한국은행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하는 것으로 국고시스템이외 회계시스템 사용자가 납부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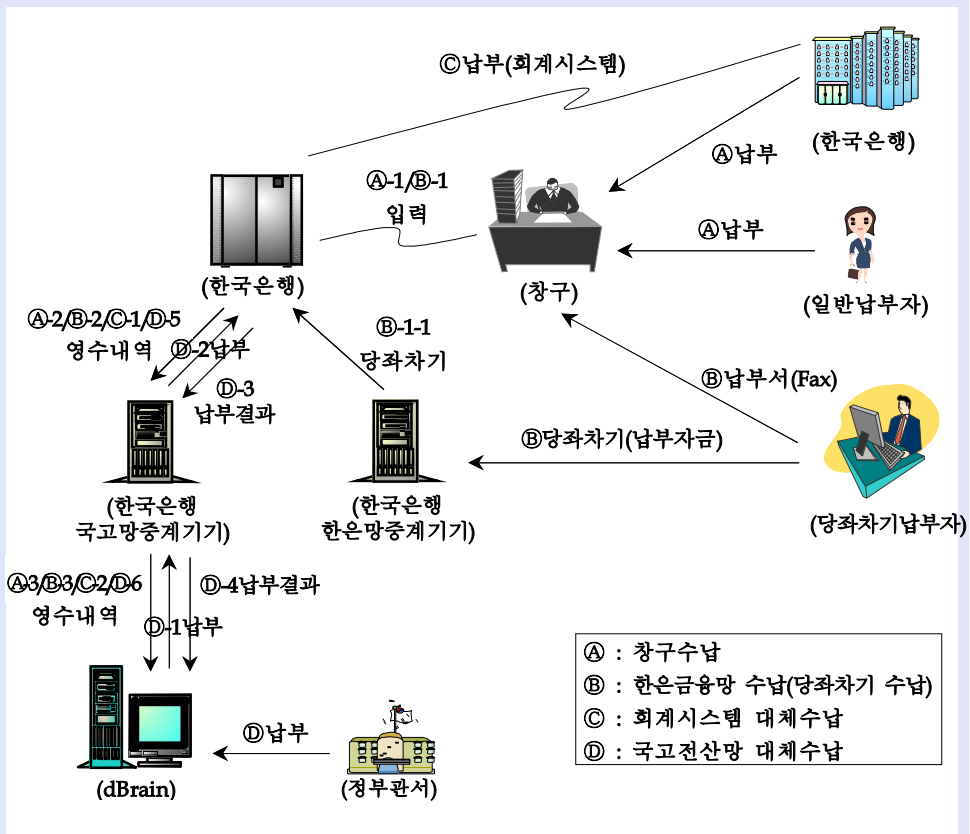
o 한국은행 증권팀에서 납부하는 수입인지판매대금, 국고채권 발행자금 등

76) 국고대리점 납부시 한국은행이 수납자금을 회수하는 2영업일 이후 지출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행 수납시에는 즉시 지출이 가능하므로 기 수입처리된 국고자금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운용중임

4) 국고전산망 대체수납

- 기획재정부, 지출관 등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국고금에서 국고금으로 대체납입하는 국고금을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수납
- o 국고여유자금의 출납공무원앞 이체, 공무원 급여 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조달물자대금 납부, 결산상잉여금 처분, 지출관앞 과오납반환 등

<그림 II-1> 한국은행의 국고금 수납



<보충설명3> 당좌차기 수납제도의 도입과 자동화의 난점

한은금융망의 당좌차기 기능을 이용한 국고금 수납제도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출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우체국의 특성상 발생하는 거래의 여유자금을 정보통신부(현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기관에 운용⁷⁷⁾하였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8월 처음 도입되었음

- 통합계정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운용은 2010.7월부터 시작하였고 기금은 통상적인 수입, 지출방식에 따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체국 여유자금이 대부분이었음. 당시 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이 없었던 것은 2000년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국고여유자금 운용 범위에 대해 협의하면서 한국은행의 RP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운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임(2000년 이전까지는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합의가 없어 여유자금 운용이 없었으며, 2010.7월부터 일시차입만 없으면 정부가 자율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오늘에 이룸)

이전에는 여유자금 예탁 금융기관(주로 은행, 증권사)이 본인 명의 한국은행 당좌수표⁷⁷⁾를 발행하여 한국은행 출납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은행, 증권회사 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 본점까지의 이동거리가 상당⁷⁸⁾하여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발하였고 때로는 금액이 잘못 기재된 수표가 제시되어 수표를 재발행하여 제시하는데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등 한국은행 국고마감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음

당좌차기 수납제도 도입시부터 국고금 수납내역은 납부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서를 Fax로 송부받아 한국은행에서 입력하였는데 이는 납부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은행, 증권사의 자금담당 직원들로서 국고 수납업무 무경험자인 점을 감안한 것이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당좌차기에 의한 국고금 수납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국고금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77) 한국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교부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말함

78) 증권회사로의 운용이 많은 편이었고, 대부분의 증권회사 본점이 여의도에 소재하여 교통체증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그러나 2000년 하반기 들어 금융기관 수납 국고금에 대한 자금회수 전 지급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 예탁 기금들의 여유자금 회수가 금융기관 납부에서 당좌차기 납부로 변경⁷⁹⁾되어 당좌차기 방식 수납 국고금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잘못 납부된 국고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수 있다는 사례⁸⁰⁾가 확인됨에 따라 전면 보류되었음

이후 납부(고지)서상의 2D바코드를 이용하여 수납내역을 금융기관에서 자동 생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의 2D바코드 인식 가능여부를 검증하였으나, 상당수 관서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부서를 자체 작성(수기 납부서)하거나 정상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더라도 Fax를 이용하고 있어 2D바코드를 이용한 인식율이 크게 낮았음. 이에 따라 국고금 납부내역의 금융기관 직접입력은 현재 담보 상태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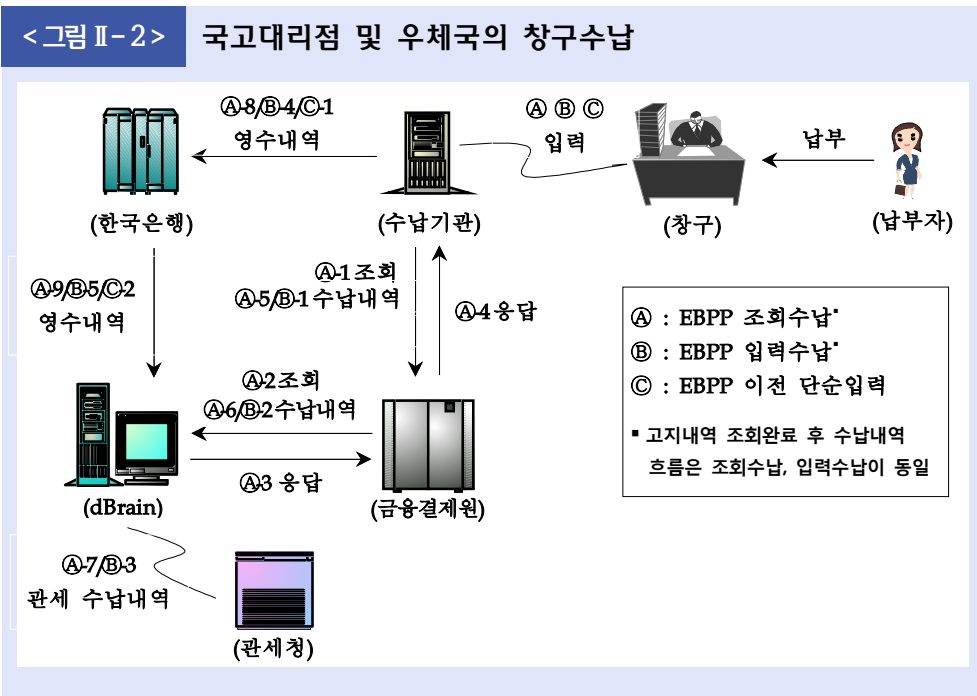
- 79) 당시에는 금융기관 수납분이 보고되어 각 회계계정의 수급으로 정리되는 수납 다음 영업일(d+1영업일)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이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 회수되는 시점(d+2영업일) 이후부터 지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우선 여유자금을 직접 제한없이 운용하고 있던 기금에 대해 제한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각 기금들은 자금회수 시차를 없애기 위해 여유자금 회수를 금융기관 납부에서 당좌차기 납부로 변경하게 되었음(d+2영업일 이후 지출을 전 회계계정으로 확대적용한 것은 국고전산망 구축이 완료된 2003.10월부터임)
- 80) 금융기관의 착오로 거액의 국고금이 이중납부 처리되었음을 해당 관서에서 확인하고도 동 자금을 금융기관에 운용중이라는 이유(취소시 금리가 낮아짐)로 반환을 거부함.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부관서에서의 정상적인 과오납반환 절차에도 다소 시일이 지체될 수 있음

나.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

1) 창구수납

— 납부자(수입금출납공무원 포함)가 국고대리점 등의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정보를 전산파일(Text, Excel 등)로 제출⁸¹⁾(수납자금은 별도 수령)하는 국고금을 수납

○ 수납기관의 텔러들은 납부서에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EBPP 조회수납으로,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EBPP 입력수납으로 전산입력하며 EBPP 접속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순입력 방식⁸²⁾으로 전산입력



81) 전산파일을 USB 등 외부저장장치, e-mail 등으로 송부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정해진 전문에 따라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전산파일을 on-line으로 제출받아 자동처리하는 경우(펄백킹) 등은 전자수납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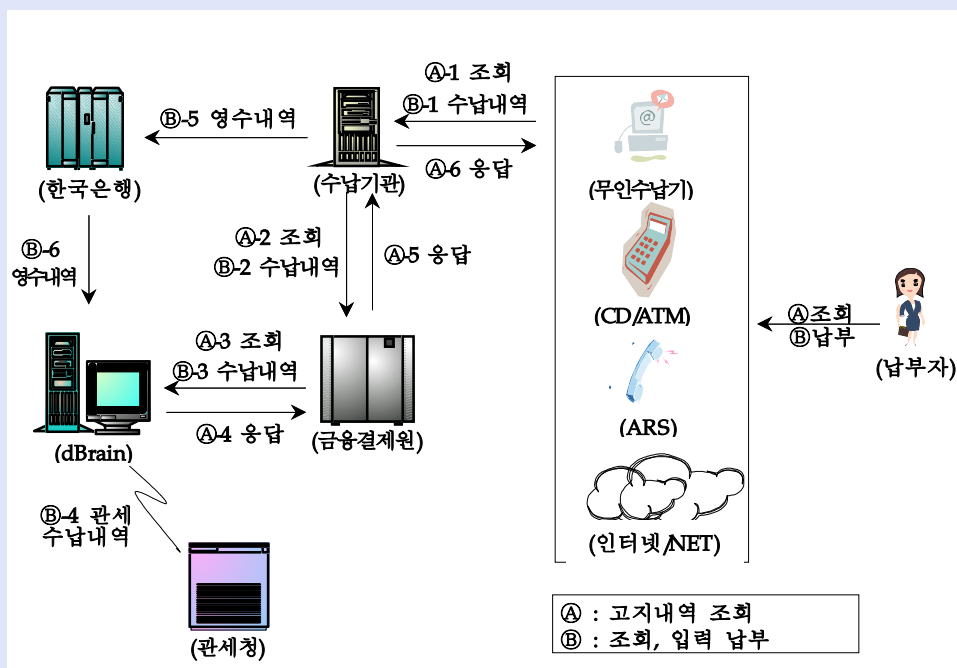
82) EBPP 센터 접속없이 단순히 입력내역을 자체 DB에 저장하기만 하는 방식으로 EBPP 센터 운영(2003년) 이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임(현재 단순입력 방식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있음)

2) 전자수납

— 납부자가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의 무인수납기⁸³⁾, CD/ATM, ARS, 인터넷뱅킹, 뽐뱅킹⁸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 납부자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고지정보를 조회한 후 계좌이체 정보를 추가입력하여 납부(조회납부)하거나, 납부내역(계좌번호, 납부자번호, 금액 등)과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입력납부)하여 납부(일반적으로 출금계좌 개설점이 수납점)

<그림 II-3> 국고대리점 및 우체국의 전자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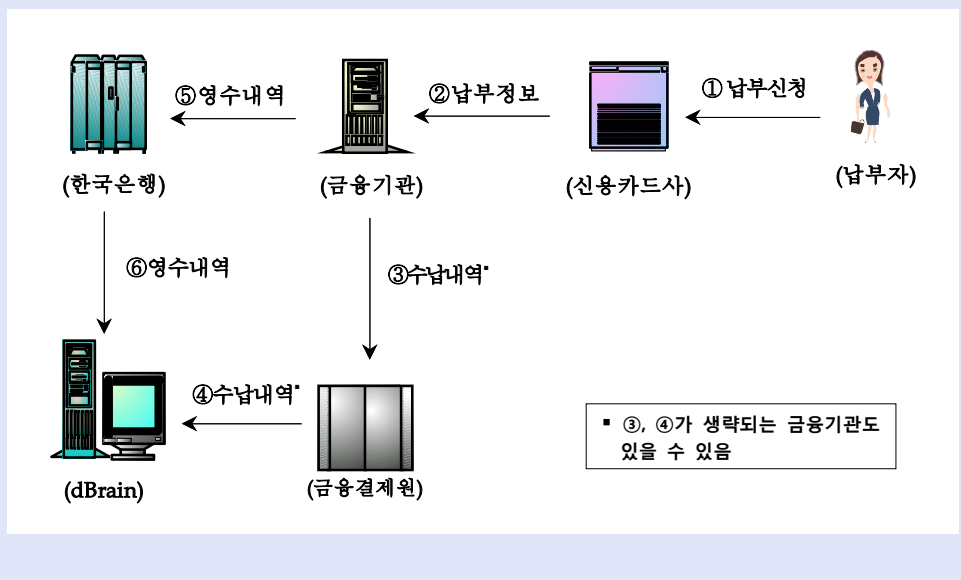
83) 공과금 투입기(납부서와 출금표를 투입하는 기기)에 의한 수납과 같이 텔러가 납부내역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업무 처리시 창구수납의 범주에 포함함

84) 납부자와 금융기관간 약정에 의해 전용선(VPN 포함) 및 전문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고금을 수납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뽐뱅킹이라 함(파일 업로드와 유사하나 송수신 수단이 전자화된 경우만을 포함함)

3) 신용카드 카드론방식 수납

- 납부자가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론이나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 일부 신용카드 회사에서만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회사별로 수납은행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고대리점은 카드회사로부터 납부내역을 파일로 수신하여 수납처리
 - 국세청 국세, 검찰청 벌과금, 노동부 산재·고용보험료 등의 납부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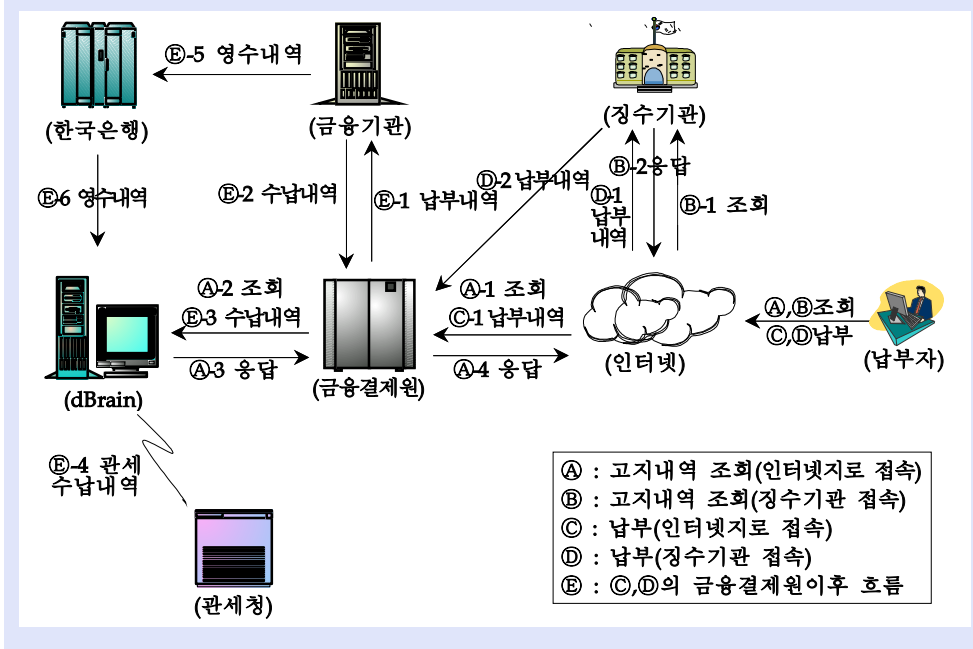
<그림 II-4> 신용카드 카드론방식 수납



4) 인터넷지로서스템을 이용한 수납

- 납부자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⁸⁵⁾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를 조회하거나 납부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 금융결제원은 납부정보 및 출금정보를 출금계좌 개설은행으로 전달하는 역할(고객과의 접점)만 하며 국고금은 출금계좌 개설점의 수납으로 처리(일반적으로 출금계좌 개설점이 수납점)
- 국세청의 홈택스 등 징수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경유하여 납부되며 직접 수납처리되는 경우는 전무

<그림 II-5> 인터넷지로서스템을 이용한 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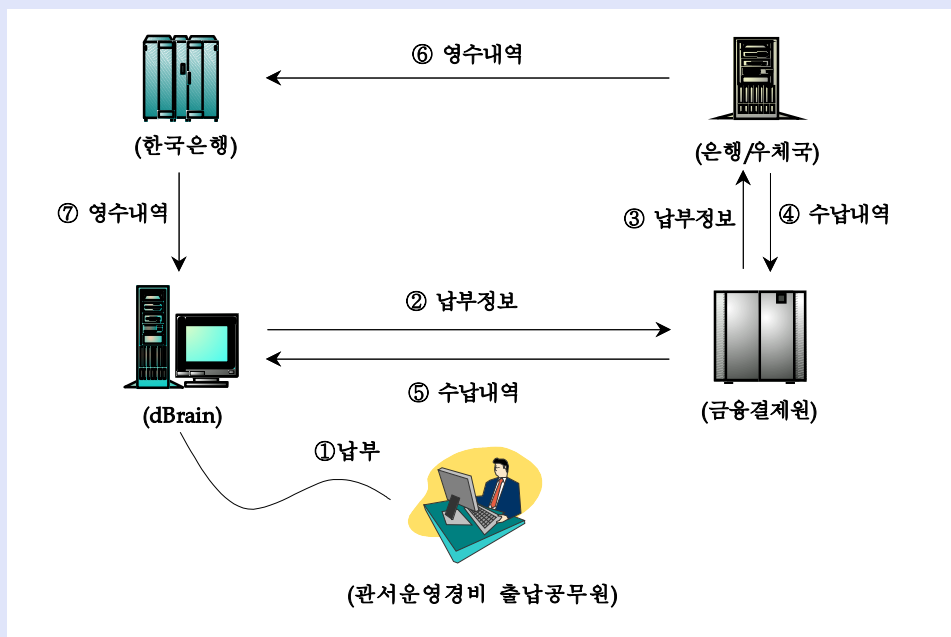
85)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로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세, 공과금, 사인(私人)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의 중계(개별수납, 자동이체 등)업무만 수행하는 일반지로는 달리 국고금 납부자와 금융기관간의 국고금 납부내역도 중계함

5) 재정자금이체망 수납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재정자금이체망⁸⁶⁾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dBrain에 납부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금융결제원은 동 정보를 출금은행(출납공무원 국고예금 계좌 개설은행)으로 전달하고 출금은행은 이를 수납처리(일반적으로 국고예금 계좌 개설점이 수납점)

<그림 II-6> 재정자금이체망 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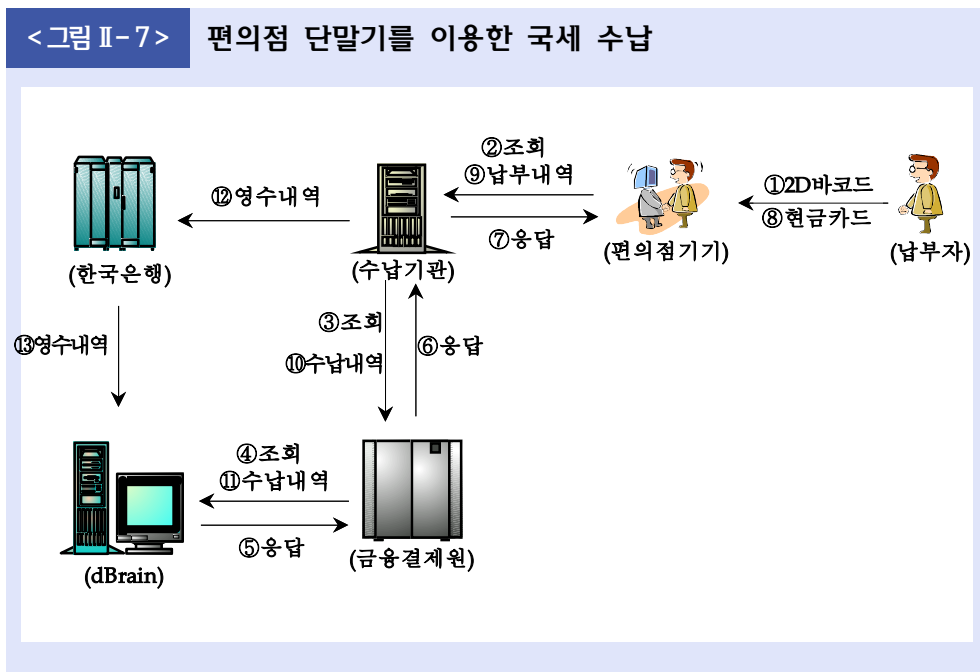


86) dBrain↔금융결제원↔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를 연계한 국고예금 이체망

6) 편의점 단말기를 이용한 국세 수납⁸⁷⁾

— 납부자가 편의점 단말기에 2D바코드를 스캔하여 납부정보를 조회한 다음 은행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 편의점은 기기를 제공하는 것일 뿐 국고금을 수납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카드(신용카드 겸용 포함) 발급 계좌 개설점이 수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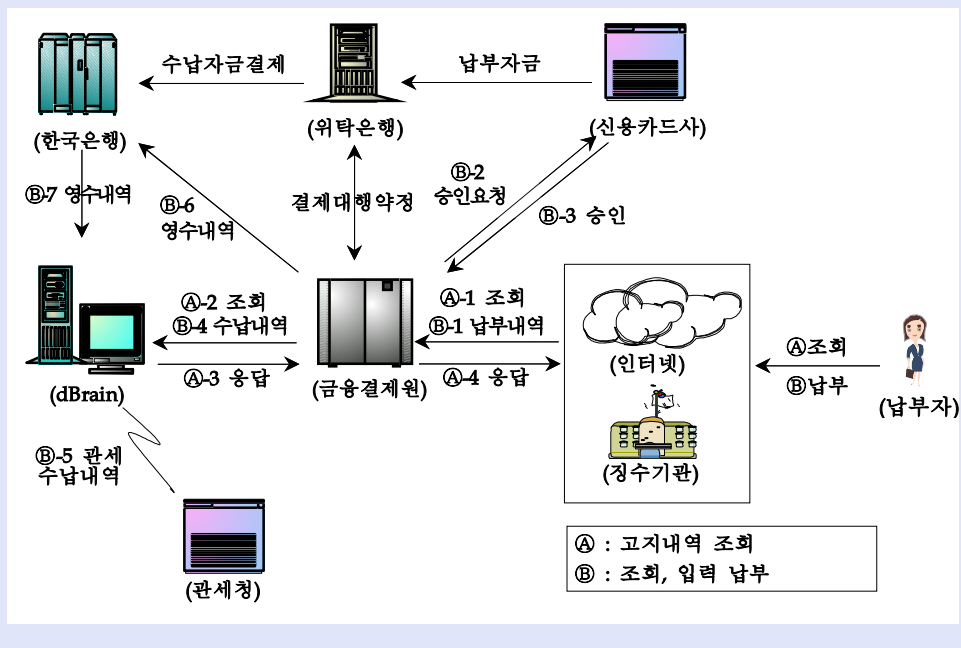


87) 2015.7월 현재 두 개 금융기관이 운영중이며 동 방식의 확대를 위하여는 편의점,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합의 및 전산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다. 국고금납부대행기관

- 납부자가 국고금납부대행기관(현재 금융결제원만 지정)의 신용카드 국고금 납부 사이트(www.cardrotax.or.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세관 등 징수기관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 납부자가 신용카드 납부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고지정보를 조회하거나 납부내역을 입력한 다음 신용카드로 납부신청을 하면 금융결제원은 신용카드 승인절차를 거쳐 수납처리

<그림 II-8> 국고금의 신용카드 수납



라. 수입금출납공무원

1) 현금(수표)에 의한 창구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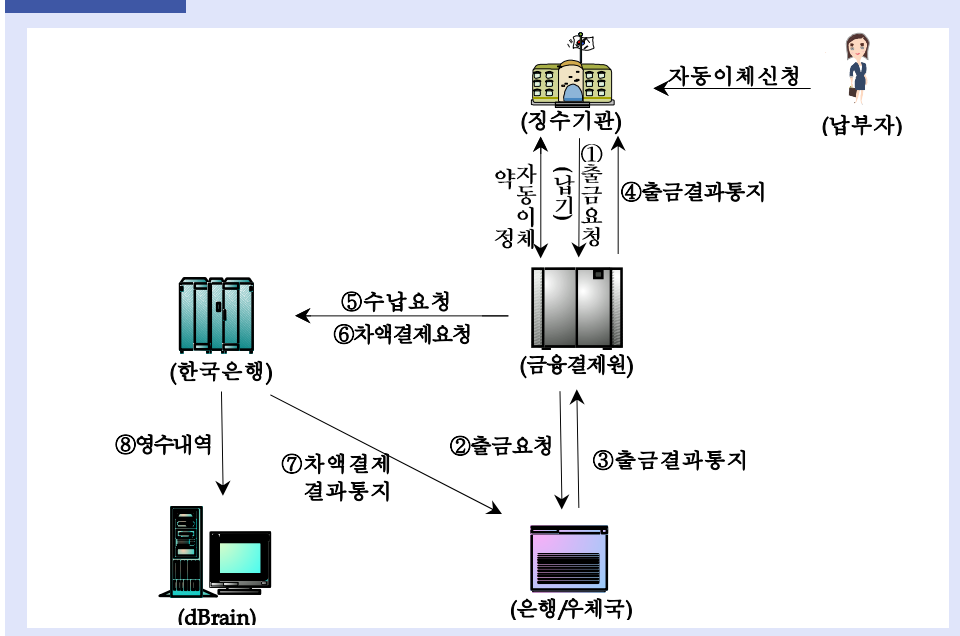
—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납한 국고금을 즉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에 납부

2) 자동이체 수납⁸⁸⁾

—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수납한 국고금은 즉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에 납부

○ 수입징수관서가 금융결제원 또는 금융기관과 자동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국고금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 지정일에 납부자 계좌에서 국고금을 인출하여 수납처리

<그림 II-9>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국세 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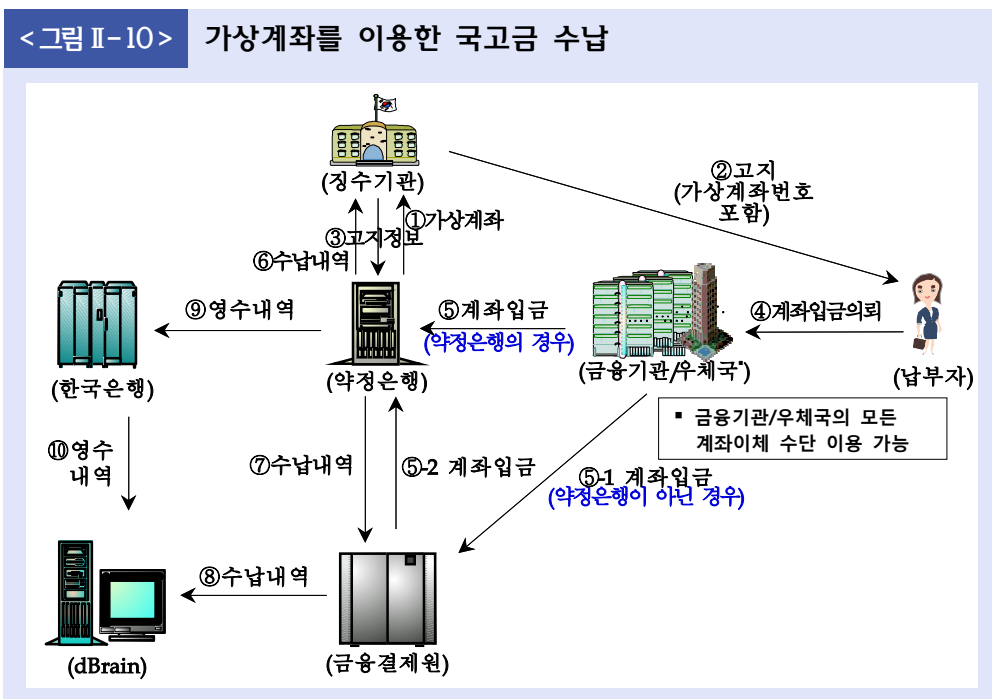
88) 국세의 경우 자동납부 제도 도입을 위해 국세청이 금융결제원과 약정을 맺고 서울지역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이후 확대나 폐지없이 동일 수준을 유지중)

3)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납

— 납부자가 국고금납부고지서에 병기되어 있는 가상계좌⁸⁹⁾에 입금 (거래 금융기관의 창구,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해 계좌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⁹⁰⁾

- ① 가상계좌 부여를 위한 모계좌⁹¹⁾ 개설 신청(징수기관)
- ② 모계좌 개설 및 사용가능 가상계좌번호 제공(은행)
- ③ 납부(고지)서에 가상계좌를 기재하여 발부(징수기관)
- ④ 가상계좌별로 고지내역을 계좌 부여 은행에 제공(징수기관)
- ⑤ 가상계좌 입금⁹²⁾(납부자, 수입금출납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고 수납)
- ⑥ 가상계좌 입금액을 출금하여 국고금으로 수납(국고대리점)

<그림 II-10>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금 수납



89) 가상계좌란 은행의 모(母)계좌 또는 대표계좌(실계좌)에 종속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자(子)계좌들을 말하며 계좌번호를 입출금 고객 개인이 갖는 고유한 인식번호(국고의 경우 전자납부번호 등)와 매칭(matching)시킨 형태임

90) 국세청의 국세, 경찰청의 교통과태료·범칙금 등에 적용되고 있음

91) 예금주는 수입징수관서 명의 또는 위탁은행 명의임

92) 납부자는 입금 대신 국고금 고지정보로 납부를 할 수 있음(이 경우 가상계좌 경유없이 수납처리됨)

4) 가맹점 방식 신용카드 수납⁹³⁾

- 징수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다음 징수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
 - 납부자가 납부내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 계좌(수입징수관서 명의 또는 위탁은행 명의)로 입금하며 수입금출납공무원(또는 업무 수탁은행)은 동일자로 이를 출금하여 국고금으로 납부

93) 가맹점 방식 신용카드 수납은 법적근거가 없고 국고금납부대행기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상 수납기관)을 통한 수납과 상충되는 점이 있으며 현재 특허료 등의 수납시에만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6.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계리

가. 한국은행 수납분

- 한국은행 수납분은 수납후 전산입력 완료 즉시 회계계정별 수입금 또는 지출반납금으로 계리(국고계리)되고 정부당좌예금에 입금(자금계리)
 - 타점권 입금의 경우(교환결제 필요)를 제외하고는 즉시 지출자금으로 활용 가능
- 자금계리를 위한 정부당좌예금 계정은 본부(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만 설치⁹⁴⁾하고 있으며, 국고계리를 위한 수입징수관 계좌는 각 통할점(한국은행 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고 있는 반면 지출관 계좌는 본부에만 설치⁹⁵⁾
 - 수납자금의 본부 집중 및 총계정원장 설치부서간 자금이체(자금계리 부분)를 위하여는 한국은행 총괄계리의 원화본지점 계정을 이용
 -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통할점간 자금이체(국고계리 부분)를 위하여는 국고 특별계정의 국고송금 계정을 이용
- 국고전산망 하위시스템⁹⁶⁾인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의 수입금대체지출, 지출관앞과오납반환 기능을 이용한 수입금 또는 지출반납금 수납은 본부에서 국고내 대체로 계리

94) 수입계좌와 지출계좌를 분리 운영하기 때문에 단일 계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95) 일시적인 전산장애,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종료후 긴급자금 지출 등을 위하여는 서면 처리가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인감조서의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본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지출관 계좌는 본부에만 개설하고 있음

96) 국고전산망은 개별 거래를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과 개별 거래를 파일 단위로 모아 처리하는 파일송수신시스템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1) 창구수납(현금수납)

가) 수입금

(국고증권실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정부당좌예금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정부당좌예금	XXX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지역본부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없	음)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나)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정부당좌예금	XXX

(지역본부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2) 당좌차기 수납(당좌예금 대체수납)

가) 수입금

(국고증권실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금융결제국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타통할점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금융결제국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지역본부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없	음)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타통할점	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나)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금융결제국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지역본부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3) 회계시스템 수납(총계정 대체수납)

— 수납점의 자금계리 부분의 계정과목만 달라질 뿐 당좌차기 수납과 동일⁹⁷⁾(본부, 지역본부 동일)

- 출금 계정과목이 수납점의 총계정 계정과목인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과 정부당좌예금간 직접 대체(원화본지점 계정을 미경유)
- 출금 계정과목이 수납점 이외 부점의 총계정 계정과목인 경우에는 원화본지점 계정을 경유하여 정부당좌예금과 대체

97)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2)당좌차기 수납' 참조

4) 국고전산망 수납(국고내 대체수납)

가) 수입금 대체지출

(국고증권실 수납)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¹⁾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타통할점 ¹⁾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	음)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1. 수입징수관계좌 개설점 기준

나) 과오납반환에 의한 지출반납금 수납

(국고증권실 수납)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¹⁾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타통할점 ¹⁾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	음)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1. 수입징수관계좌 개설점 기준

나. 국고대리점 수납분

- 국고대리점은 수납내역을 전산입력⁹⁸⁾하여 자체 DB에 보관하기는 하나 단순히 수납정보⁹⁹⁾로 보관할 뿐 국고계리는 실시하지 않으며 수납자금은 국고대리점 계정에 입금(D일)

<참고 II-2> 금융기관의 국고대리점계정

- 국고대리점에는 국고대리점 계정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수의 금융기관이 결제모집에만 국고대리점 계정을 설치), 동 계정과목 하위에 국고대리점, 부가국세 두 개의 소계정을 설치(원천과세금, 출납과여금 등 다수의 소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가수금 계정과 동일한 구조)
 - ‘국고대리점-국고대리점’, ‘국고대리점-부가국세’의 구조이므로 국고대리점 계정 잔액 대조·확인 등 한국은행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국고대리점-국고대리점 계정만 대상
- 국고대리점이 입력한 수납내역은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으로 파일(TRR0A1)형태로 전송되어 일괄처리되며 동 시점에 각 회계계정별 계리(국고계리) 및 정부당좌예금 계리를 수행(D+1일)
 - D+1일에는 국고대리점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각 회계계정별 잔액에 포함됨에 따라 당일 일괄처리한 각 회계계정별 합계금액¹⁰⁰⁾을 잔액에서 차감하여 미집중국고금처리 계정에 입금하였다가 D+2일 반대거래로 잔액에 추가

98) 창구수납분에 대한 국고대리점 직원 입력뿐만 아니라 전자납부분에 대하여 납부자 등이 입력하는 것을 포함함

99) 계좌번호, 납부번호, 납부금액, 수납매체, 세목코드, 타점권 종류, 수납자 등 납부내역 확인 및 한국은행 앞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며, 금융기관별 보관항목과 방법은 서로 상이함(그러나 한국은행 앞 수납내역 전송시에는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하여 전송)

100)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의 수납 총액을 말함

-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 집중(결제)은 일괄처리 다음 영업일(정상적인 경우 수납후 2영업일째) 지정 시점(현재 14:00)에 수행(D+2일)

1) 수납 당일(D일)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	—	은행계리			국고대리점- 국고대리점	XXX

2) 수납 다음 영업일(D+1일)

가) 수입금

(국고증권실 관할 국고대리점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타통할점	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계좌개설점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공 통	자	점	자금계리	국고대리점	XXX	정부당좌예금	XXX

(지역본부 관할 국고대리점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계좌개설점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공	자	점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나) 지출반납금¹⁰¹⁾

(국고증권실 관할 국고대리점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국고대리점 XXX	정부당좌예금	XXX

(지역본부 관할 국고대리점 수납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국고대리점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3) 수납후 2영업일째(D+2일)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	국고증권실 ¹⁾	한은계리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국고대리점	XXX
	금융결제국 ¹⁾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지역본부 ²⁾		당좌예금	XXX	국고대리점	XXX
—	—	은행계리	원화본지점	XXX	지준예치금	XXX
			국고대리점- 국고대리점	XXX	원화본지점	XXX

1. 국고증권실 관할 국고대리점 수납분(국고금수납점 수납자금은 결제대행은행 당좌예금에서 출금)

2. 지역본부 관할 국고대리점 수납분

101) 지출반납금 처리시 국고계리(차변 차감)와 자금계리(대변 증액)의 처리방식이 다름에도 수입금의 마이너스(-) 정정과 같이 보정용 경과계정을 두지 않는 것은 국고시스템 전반적으로 지출반납금은 수입으로 인식하도록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

다.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¹⁰²⁾

-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은 수납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¹⁰³⁾(D일)후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으로 파일 형태(TRR0A1)로 전송¹⁰⁴⁾되어 일괄처리되며 동 시점에 각 회계계정별 처리(국고처리)를 수행(D+1일)
 - 한국은행은 본부(국고증권실)에 미집중국고금처리 계정을 설치¹⁰⁵⁾하여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의 수납자금을 처리(국고처리)
 - D+1일 각 회계계정별 처리 금액은 한국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잔액에서 차감하였다가 익일 반대 거래로 잔액에 추가('나.국고대리점 수납분' 참조)
-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 집중(결제)은 국고대리점 수납분과 같이 일괄처리 다음 영업일(정상적인 경우 수납후 2영업일째) 지정 시점(현재 14:00)에 수행¹⁰⁶⁾(D+2일)

102)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의 처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규정 및 절차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술을 생략함

103) 창구수납분에 대한 자체 입력뿐만 아니라 전자납부분에 대한 납부자 등의 입력을 포함함

10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은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의 경우에도 국고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수납한 수납내역을 한국은행에 전송토록 규정하고 있음

105) 한국은행 총괄처리에 국고대리점 계정을 설치하여 국고대리점 수납분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국고처리 내에 미집중국고금처리 계정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은 국고대리점 수납분은 한국은행 채권인데 비하여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은 한국은행 채권이 아니기 때문임(정부의 채권)

106)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은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의 수납자금 결제일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납후 2영업일째에 결제하도록 하고 있음

1) 수납 다음 영업일(D+1일)

가) 수입금

(국고증권실)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미집중국고금처리 ¹⁰⁷⁾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	음)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나)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2) 수납후 2영업일째(D+2일)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우체국예탁금 ¹⁾ XXX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금융결제국 ²⁾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²⁾		원화본지점 -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1. 우체국 수납분 2.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

107) 미집중국고금처리 계정은 하위에 세부계정을 두고 있으며 우체국 수납분의 경우 미집중국고금처리-우체국수납금,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경우 미집중국고금처리-금융결제원수납금 계정으로 처리함

7. 주세, 지방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의 특례

가. 국세로 납부된 주세 등의 처리

1) 국세수납정리계정의 운영

— 국고 수입금은 건별로 고지(납부) 및 수납되어 납부(고지)서 상의 수입징수관 계좌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주세와 지방소비세는 특성상 이와는 달리 처리

o 주세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일반회계(국세청, 관세청 소관)로 고지(납부)

o 지방소비세는 납부된 일반회계인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11%)을 지방소비세로 교부

— 국세로 수납되어 국세청, 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수입금에 포함되어 있는 주세와 지방소비세의 처리를 위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을 설치 운영¹⁰⁸⁾

2) 처리 절차

① 한국은행과 국고대리점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국고금을 수납

② 한국은행 자체 수납분은 수납내역 전산입력시, 한국은행 이외 수납기관(국고대리점 포함) 수납분은 전송받은 수납내역 일괄처리시 자금을 분리하여 계정 처리¹⁰⁹⁾

108) 국세의 대부분이 자진납부(납부자가 납부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인 점을 감안한 것임(납부자가 세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109) 정정 처리시에는 자금을 분리하지 않음

- 국세청소관 일반회계 수입금 : 85%는 일반회계, 15%는 국세수납정리계정의 수입금으로 처리
-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수입금 : 95%는 일반회계, 5%는 국세수납정리계정의 수입금으로 처리

③ 국세청, 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은 국세수납정리계정 전월 수입금액을 매월 15일까지 정당 회계계정(지방소비세계정 등)으로의 이체를 요청

- 수입징수관은 dBrain을 이용¹¹⁰⁾하여 실시간으로¹¹¹⁾ 이체요청을 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이체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체정정을 요청¹¹²⁾

④ 한국은행은 매일 동 이체내역과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수납내역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파일송수신 방식으로 dBrain에 전송

나.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

— 한국은행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부터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가 있는 경우 이를 수납

—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처리과정

① 지방세 수납은행¹¹³⁾ : 취득세 등의 지방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병기된 형태의 고지서로 수납하는 경우,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 이체

110) 관세청은 dBrain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dBrain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국세청은 dBrain을 직접 이용하여 한국은행 전산시스템과 접속함(그러나 국세청의 국세수납내역 확인, 국세환급, 정정 등의 업무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dBrain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점에 유의)

111) 국고전산망의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OLTP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임. 이하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됨

112) 국세수납정리계정에서 이체된 금액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직접 정정시 한국은행의 이체 누계액에는 변화가 없어 수입징수관서와 한국은행간 이체 누계액이 틀리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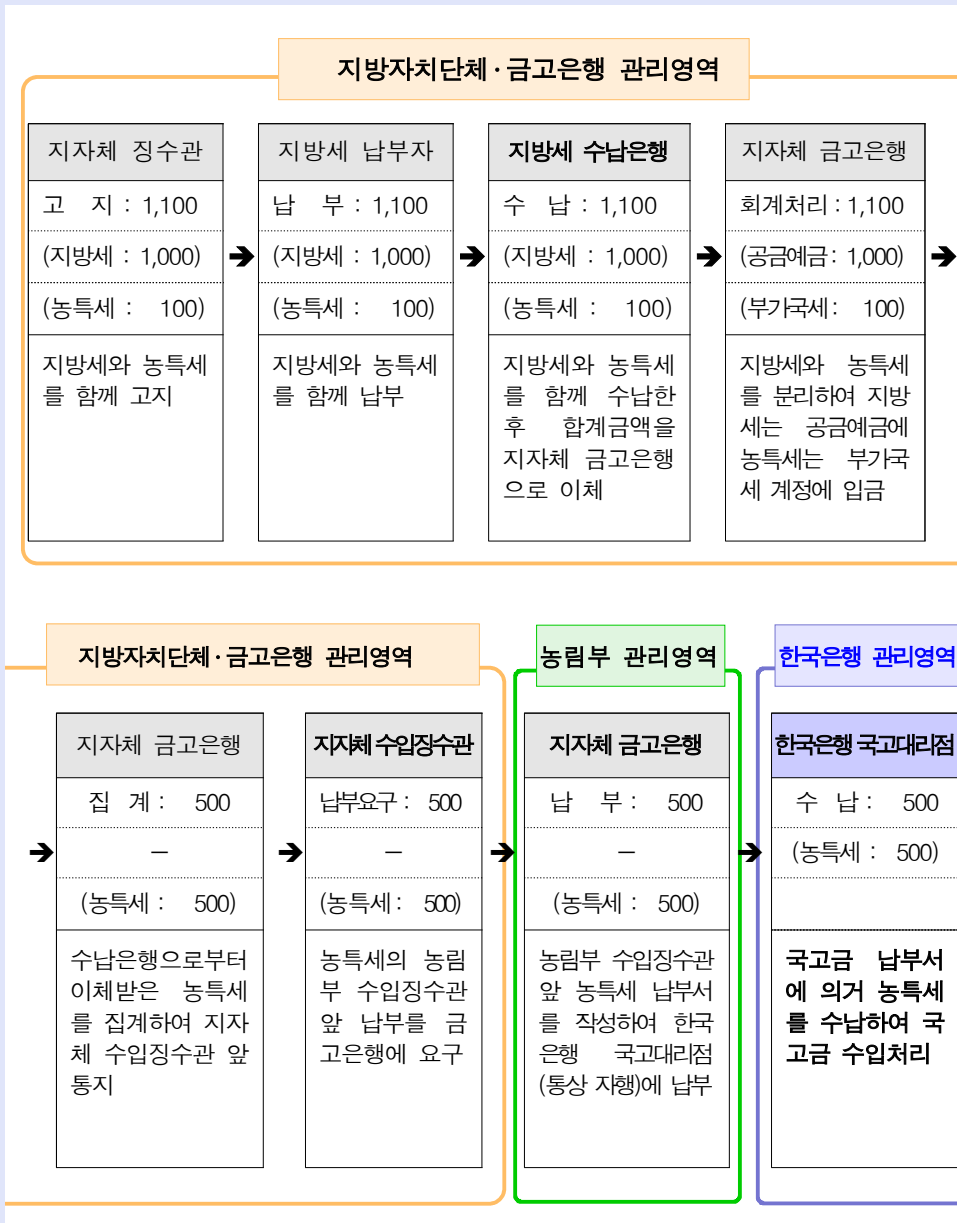
1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이 체결된 금융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 집계하여 각각 공금예금과 부가국세 계정에 입금하고, 이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징수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농림부 소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국고금으로 납부(매월 15일까지)
- ③ **한국은행** :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 계좌번호에 134921-4(농림부 소관), 납부자번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수입징수관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수납
- 매일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수납내역을 국세수납정리계정 이체내역과 함께 파일송수신 방식으로 dBrain에 전송

<보충설명4> 금융기관, 국고대리점 및 금고은행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예탁받아 출납하는 모든 금고은행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기관 영업점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바, 지방세 부가국세 처리업무의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 영업점이 금고은행으로서 국고금 납부자가 되는 한편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으로서 국고금 수납기관이 됨. 즉, 물리적으로는 동일인이 국고금 납부자인 동시에 수납자가 되는 것임(이러한 현상은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납부할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함). 그러나 동일인이 수행한 업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납부금액의 계산, 납부서의 작성, 수납기관 앞 납부(납부서와 금전의 전달)까지의 업무는 납부자(금고은행)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납부자로부터 납부서와 금전을 받아 이를 수납처리(전산입력)하는 것은 국고대리점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구별하여야 함. 따라서 납부 및 수납 행위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히 구분되어 수납 행위에 대해서만 국고수납대리점으로서 책임을 짐

<참고 II-3>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고지 및 수납 예시



8.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정정

가. 정정의 의미와 정정 구분

- 정정이란 사전적 의미인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로써 국고업무의 당사자¹¹⁴⁾ 일방 또는 쌍방의 착오로 발생한 한국은행 기록상 오류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절차를 의미
- 정정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의 요청에 의해 처리하는 청구정정과 한국은행 자체 판단에 의해 처리하는 내부정정으로 구분
 - 국고금 납부자,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의 착오에 의한 오류는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이 한국은행에 정정을 요청(청구정정)
 - 한국은행의 착오에 의한 오류는 자체 정정하고 국고대리점의 오류는 해당 대리점이 담당 통할점에 정정을 요청(내부정정)
- 우체국, 국고금납부대행기관 등의 착오에 의한 오류의 경우도 국고대리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내부정정 처리

<참고 II-4> 내부정정의 의미

- 내부정정이란 납부자에 대한 제재가 수납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납과정의 착오를 정상으로 환원하는 절차
 - 국고금의 납부기한이 경과(미납)되는 경우 납부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면허취소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바, 동 제재가 국고금 납부의무를 해태한 납부자에 대한 제재이지 국고금 수납기관(직원)의 업무수행 착오에 부과하는 제재가 아닌 점을 감안

114) 국고금 납부자·채권자, 수입징수관·지출관·출납공무원,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기타의 수납기관(우체국, 국고금납부대행기관) 등이 있음

- 한편, 청구정정에 의해 처리하는 납부자 착오와는 달리 국고대리점 착오에 대해서 내부정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고대리점이 한국은행의 대리인으로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
 - 대리인(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의 행위를 본인(한국은행)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원칙(「민법」의 대리인제도)에 따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국고대리점이 국고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정과 별개로 해당 국고대리점에 배상책임 부과

나. 청구정정

-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의 요청에 의해 처리하는 정정으로 회계연도, 회계, 소관 등의 정정만 가능¹¹⁵⁾하며 금액의 변경¹¹⁶⁾을 요하는 정정은 불가

1) 정정의 종류

- 회계연도 정정, 계좌번호 정정, 수입금과 지출반납금간 정정

2) 정정의 요청

- 수입징수관 등은 정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¹¹⁷⁾를 제외하고는 dBrain을 이용하여 국고전산망으로 요청
 - 국세청 소관 수입금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국세청간(dBrain 경유) 1일 1회 파일송수신(FTP) 방식으로 처리¹¹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

115)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며 실무적으로는 회계연도 정정 및 계좌번호 정정 두 가지 종류를 취급함으로써 규정내용을 충족함(착오 여부, 오류 원인 등은 파악하지 않음)

116)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고지·환급, 추가지급·반납고지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117) 전산시스템 장애, 전산시스템 미개발 등으로 연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함

118) 국세청에서는 '국세오납정정시스템'이라 부름

- 정정처리시 월계대사용 월분은 정정요청이 한국은행에 접수된 일자가 속하는 월분을 적용
- 수입징수관 등은 전산장애 등에 따라 서면으로 정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요청서를 오계좌 관할 통할점에 송부
- 정정처리시 월계대사용 월분은 국고전산망에 의한 경우와 같이 정정요청서가 한국은행에 접수된 일자가 속하는 월분을 적용

<보충설명5> 수입금과 지출반납금간 착오

수입금과 지출반납금은 국고금의 수납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수입금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또는 부담)인 반면, 지출반납금은 착오의 환원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남. 수입금의 고지는 수입징수관이 수입시스템에서, 지출반납금의 고지는 지출관이 지출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어 양자간 고지서가 잘못 발행될 개연성은 거의 없음

또한 납부자가 납부서류를 직접 작성함에 따른 구조적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입금과 달리 지출반납금은 지출관의 고지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금과 지출반납금간 정정은 발생하지 않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서에서 지출반납금을 고지서없이 반납자에게 납부(납부서를 납부자가 작성)토록 하는 관행이 있어 수입금과 지출반납금간에 잘못 납부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입금 대체지출 또는 지출관 앞 과오납반환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모든 사안에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정정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지되어야 할 업무에 해당함

다. 내부정정

- 한국은행 및 국고대리점의 오류(현재는 전산입력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수납내역 오류 전반에 대해 정정이 가능하며 실제 내부정정은 국고대리점에서 발생¹¹⁹⁾

1) 정정의 종류

- 계좌번호 · 납부자번호 · 금액 · 수납일자 정정, 입력누락, 이중입력, 수입금취소(부도, 기타) 등¹²⁰⁾

2) 정정의 신청

- 국고대리점은 한국은행에 보고한 국고금 수납내역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통할점에 정정을 신청

- ①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
- ② 국고금 수납내역장
- ③ 해당 오류처리 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또는 정당납부서로 볼 수 있는 서류
- ④ 정정신청 사유발생 경위를 기재한 취급점장의 확인서(담당 직원 및 점포장의 직위, 성명, 자필서명 명기)
- ⑤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계정 입금표 사본, 가수금계정 입금표 사본 등 그 밖의 입증자료

※ ④,⑤의 서류는 기 보고금액 또는 누락금액이 실제 수납금액보다 10만원 이상 부족한 경우에만 제출

119) 내부정정은 거의 대부분 국고대리점 오류에 의해 발생하므로 특별히 취급기관을 지칭하지 않는 한 국고대리점 신청에 의한 정정을 대상으로 함(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정정은 별도로 기술)

120) 국고금으로 수납한 증권(수표)의 부도에 따른 수납취소는 정정은 아니나 전산처리상으로는 정정의 일부분으로 취급함

3) 통할점의 정정처리

- 통할점은 정정여부를 심사한 후 수납증빙¹²¹⁾과 전산입력내역을 비교(입력누락 제외)하여 수납증빙 내용대로 정정
 - o 다만, 금액정정 중 과소입력으로 차이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입력누락에 준하여 심사
- 한편, 통할점은 심사후 정정하기로 결정된 건의 전산입력 통할점이 자점이 아닌 경우에는 정정신청서(전결권자 결재후) 사본을 전산입력 통할점에 송부하여 전산입력을 요청

<표 II-2>

정정사유별 전산입력 통할점

정정사유		수입금 정정	지출반납금 정정
이중입력		해당 수입징수관계좌 관할 통할점	국고증권실
금액 입력오류	과다입력	"	"
	과소입력	국고대리점 관할 통할점	국고대리점 관할 통할점
계좌번호 입력오류		오 수입징수관계좌 관할 통할점	국고증권실
입력누락		국고대리점 관할 통할점	국고대리점 관할 통할점
납부자번호 입력오류		해당 수입징수관계좌 관할 통할점	국고증권실
수납일자 입력오류		"	"
세입금 취소		"	"

121) 납부서류는 수납시점에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것만 유효함(수납 이후 교체한 납부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4) 정정처리시 심사기준

가) 공통 확인사항

- 납부자가 정당하게 납부하였는지 여부(정당 납부행위의 완료)를 확인
 -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정당한 납부서류와 함께 국고금을 창구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던 중 납부자의 착오로 두 번 납부하는 등의 실수에 의한 정정요청은 아닌지¹²²⁾ 여부
-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수납행위시 착오에 의한 오류)를 확인
 - 납부자는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국고대리점 담당직원의 착오로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금액, 입력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 전산장애 등에 의해 발생한 오류인지 여부¹²³⁾(전산시스템의 오류)를 확인
 - EBPP시스템과의 송수신 오류, 자체 인터넷뱅킹·ATM·수납 내역 입력 프로그램 오류, 한국은행 보고시스템의 오류 등

122) 납부자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오류는 정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전산시스템 오류에 의해 발생한 오류는 정정 대상임

123) 전산상 오류인 경우 해당 전산부서의 전산 로그파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나) 입력누락에 대한 심사

(1) 입력누락의 의미

- 입력누락이란 납부자가 정당하게 납부한 국고금을 국고대리점의 수납 담당직원이 업무 착오로 수납 당일 전산입력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
- 입력누락에는 수납받은 국고금을 전혀 입력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국고금을 지방세,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를 포함

(2) 입력누락 심사시 중점 심사사항

- 납부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인지(정정대상이 되지 않음) 수납점이 국고금을 정상적으로 수납하고도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정정대상)에 대해 심사
- 국고금 수납은 일반적인 은행거래와 달리 기산일 소급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납자금 입금 증빙 심사시 기산일 거래 여부 심사
 - 가수금계정 원장 사본 등은 기산일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일자과 시간이 인자된 입금전표 원본 등으로 확인
- 입력누락 발생 경위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수납한 국고금의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사

- 거액의 출납과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규명하지 않고 업무를 종료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으므로 거액의 입력누락은 가수금 등에 자금이 정상 입금된 증거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¹²⁴⁾가 있는지 추가 확인

- 수납한 국고금을 일정기간(납부기한까지 등) 동안 별단예금과 같이 금융기관 관리하에 있는 계정에 입금하여 둔 경우에는 수납사실을 인정하여 정정할 수는 있으나 횡령이나 유용 여부에 대해서¹²⁵⁾ 심사

<참고 II-5> 입력누락 정정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

1 수납행위 이전단계(납부대행 행위)에서의 착오

- 국고대리점이 수납자금, 출금서류 및 납부서류를 납부자로부터 건네 받고 납부자와 합의(동의) 하에 납기일에 납부자 명의의 예금(또는 은행명의 통장)에서 해당 예금을 출금하여 납부 및 수납하기로 하였으나 대리점이 납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이는 금융기관과 납부자간에 임의로 체결한 약정에 의한 납부대행¹²⁶⁾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수납행위가 납기일 이내에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정정(입력누락) 대상이 될 수 없음
- 납부자 또는 금융기관이 가상계좌번호를 착오 입력한 경우
 - 가상계좌 입금은 국고금 수납행위가 아닌 일반 금융업무에 해당하므로 가상계좌번호 착오 입력은 정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관서의 청구정정 등에 의해 정정

124) 출납과여금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국고금 입력 종료 시간(24:00 등)이 도래하여 출납과여금을 부득이 가수금에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등이 이에 해당함

125) 수납자금의 유용 또는 횡령에 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사고로 처리해야함

126) 납부대행을 수납행위로 인정할 경우 수입정수기관이 정한 납부기한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며, 현재 국고금 납부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고금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에 의한 국고금 수납기관)이 유일함(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하고 납부대행행위를 수납행위로 인정하나 납부대행의뢰 즉시 수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납부대행과는 차이가 있음)

② 납부행위의 미완성

- 금융기관이 국고금 납부자로서 납부해야 할 국고금(익월 10일 국세로 납부할 이자소득, 근로소득 원천세 등)을 가수금 등에 보유하고 있었으나 납기일에 납부 및 수납처리하지 못한 경우
 - 이는 납부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납부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납행위의 착오로 인정 불가능

5) 국세청소관 수입금 정정시 유의사항

- 각 세무서에서 국세 수납분에 대한 계좌번호 정정, 환급, 추가고지가 신속한 편이므로 정정처리 전에 세무서와 정정주체를 사전 협의 결정한 후 처리하는 것이 필요
-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수납일자 정정처리가 안되므로 수납일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수납취소와 입력누락으로 처리

6) 정정금액의 결제 및 정리

- 수납금액의 정정이 수반되는 경우 정정금액은 통할점의 정정당일에 보고된 해당 국고대리점의 수납금액에 가감되어 다음 영업일에 결제
 - 따라서 수납금액을 감소시키는 정정(과다입력, 이중입력 등)의 경우 정정 당일 현재 한국은행에 보고된 대리점 담당 결제모점 총 수납금액 이내에서만 가능¹²⁷⁾

127) 감액되는 정정자금의 반환은 통할점 정정일에 해당 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정일에 한국은행 앞 보고된 국고금 수납금액을 감소시켜 결제자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임(정정금액이 수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납금액이 정정금액에 달할 때 까지 정정금액을 분할하여 정정)

- 정정 신청 국고대리점은 한국은행의 정정자금 결제일(또는 정정 신청일)에 정정 신청자금을 정당 계정으로 입출금 정리¹²⁸⁾

라.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정정

-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한국은행에 전송한 국고금 수납내역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
 - 우체국의 경우 금융업무를 취급하므로 국고대리점과 같이 수납내역 오류 전반에 대해 정정이 가능하나 신용카드 수납만 담당하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정정만 가능

1) 우체국 수납분의 정정¹²⁹⁾

- 우체국장은 한국은행에 보고한 국고금 수납내역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은행에 정정을 신청
 - ①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
 - ② 국고금 수납내역장
 - ③ 해당 오류처리 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또는 정당납부서로 볼 수 있는 서류
 - ④ 지방세 혼입 등의 경우 혼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¹³⁰⁾
 - ⑤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의 국고금 계정처리 확인서¹³¹⁾

128) 정리방법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한국은행 결제금액 총액을 국고대리점 계정에서 출금하는 경우와 정상 수납금액만을 국고대리점 계정에서 출금하고 정정분은 별도 계정처리토록 하는 등)

129) 우체국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국고금을 수납하므로 금융기관(국고대리점)과 다를바 없어 국고대리점과 동일한 정정이 필요하나 우체국 수납분 정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없음. 이에 따라 2012.3월 한국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수납 국고금 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고금 수납 및 정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30) 지방세·공과금 등을 국고금으로 잘못 입력하였거나 국고금을 지방세·공과금 등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에만 제출함

131) i) 수납한 국고금의 입력을 누락 ii) 수납금액을 정당 납부금액보다 10만원 초과하여 과소입력 iii) 수납일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우체국에서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정여부를 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정정을 신청(서류제출 생략 가능)
- 우체국장(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신청한 내용대로 정정

2)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정정

-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가 인터넷 등 On-line 상¹³²⁾에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납부하는 국고금만을 수납하므로 전산오류에 의한 정정만이 발생
 - o 구체적인 정정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안별로 징수기관, 한국은행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협의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

3) 정정금액의 결제

- 수납금액의 정정이 수반되는 경우 정정금액은 정정 당일 해당 기관이 한국은행에 보고한 수납금액에 가감되어 다음 영업일에 결제
 - o 따라서 수납금액을 감소시키는 정정(과다입력, 이중입력 등)의 경우, 정정 당일 현재 한국은행에 보고된 수납금액 이내에서만 가능

132) 일선 세무서와 세관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 단말기 입력내용이 On-line 으로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전달되므로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직접입력하는 경우는 없음

마. 계 리

1) 청구정정 및 내부정정

가) 금액이 증가하는 정정(입력누락, 과소입력)

(1) 수입금

(국고증권실 정정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계좌개설점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공 통	자 점	자금계리	국고대리점	XXX	정부당좌예금	XXX

(지역본부 정정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계좌개설점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공 통	자 점	자금계리	국고대리점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2)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정정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국고대리점 XXX	정부당좌예금 XXX

(지역본부 정정분)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국고대리점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나) 금액이 감소하는 정정(이중입력, 과다입력, 취소)

(1) 수입금

(국고증권실 정정분)

수납점관할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입액정리 XXX
		자금계리	대리점수입액정리 XXX	정부당좌예금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국고대리점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대리점수입액정리 XXX	대리점수입액정리 XXX
	수납통할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국고송금 XXX
				(없음)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대리점 XXX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지역본부 정정분)

수납점관할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대리점	XXX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음)			
	수납통할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¹⁾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대리점	XXX
			국고증권실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1. 수납통할점이 국고증권실인 경우 원화본지점 경우 없음

(2)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정정)

수납점관할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국고대리점 XXX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대리점수급액정리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음)	
	수납통할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 국고증권실 XXX	국고대리점 XXX
	국고증권실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 지역본부 XXX

다) 금액변동이 없는 정정(계좌번호, 수납일자 등)¹³³⁾¹³⁴⁾

(1) 수입금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	음)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2)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정정)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133) 금액변동이 없는 정정 중 납부자번호 정정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134) 청구정정 중 수입금과 지출반납금간 정정은 계좌번호 정정의 정정납과 정정금을 각각 수행한 것과 회계처리 결과가 동일함

2)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분의 정정

가) 금액이 증가하는 정정(입력누락, 과소입력)

(1) 수입금

(국고증권실)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	음)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2)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자금계리	(없)	음)

나) 금액이 감소하는 정정(이중입력, 과다입력, 취소)

(1) 수입금

(국고증권실 정정분)

수납점관할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 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금액정리 XXX
			대리점수금액정리 XXX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자금계리	(없	음)

(지역본부 정정분)

수납점관할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타통할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금액정리 XXX
			대리점수금액정리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없	음)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자금계리	(없	음)

(2) 지출반납금

(국고증권실)

수납점관할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자 점	자 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대리점수금액정리 XXX
			대리점수금액정리 XXX	미집중국고금처리 XXX
		자금계리	(없	음)

다) 금액변동이 없는 정정(계좌번호, 수납일자 등)

— 청구정정 및 내부정정의 경우와 동일¹³⁵⁾

135)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마.계리 - 1)청구정정 및 내부정정' 참조

<그림 II-11>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¹³⁶⁾(예시⅓)

① (d일) 국고대리점에서 300원의 국고금을 수납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한국은행의 회계처리				
국고대리점계정 <table> <tr> <td></td><td>(d) ① 300</td></tr> </table>		(d) ① 300	국고대리점계정 <table> <tr> <td></td><td></td></tr> </table>		
	(d) ① 300				
지준예치금계정 <table> <tr> <td></td><td></td></tr> </table>			정부당좌예금계정 <table> <tr> <td></td><td></td></tr> </table>		
지준예치금계정 <table> <tr> <td></td><td></td></tr> </table>			당좌예금계정 <table> <tr> <td></td><td></td></tr> </table>		

136) 국고대리점의 통상분 수납자금의 정부당좌예금 집중 및 결제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고대리점의 국고대리점 계정 잔액은 2영업일분 수납액으로 구성되고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 계정 잔액은 1영업일분 수납액으로 구성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II-11>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예시%)

- ② (d+1일) 한국은행에서 d일 국고대리점 수납분(300원)을 일괄처리
 ③ (d+1일) 국고대리점에서 400원의 국고금을 수납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한국은행의 회계처리																
<table> <tr> <td colspan="2">국고대리점계정</td></tr> <tr> <td>(d) ①</td><td>300</td></tr> <tr> <td>(d+1) ③</td><td>400</td></tr> </table>	국고대리점계정		(d) ①	300	(d+1) ③	400	<table> <tr> <td colspan="2">국고대리점계정</td></tr> <tr> <td>(d+1) ②</td><td>300</td></tr> <tr> <td colspan="2">정부당좌예금계정</td></tr> <tr> <td>(d+1) ②</td><td>300</td></tr> <tr> <td colspan="2">당좌예금계정</td></tr> </table>	국고대리점계정		(d+1) ②	300	정부당좌예금계정		(d+1) ②	300	당좌예금계정	
국고대리점계정																	
(d) ①	300																
(d+1) ③	400																
국고대리점계정																	
(d+1) ②	300																
정부당좌예금계정																	
(d+1) ②	300																
당좌예금계정																	
<table> <tr> <td colspan="2">지준예치금계정</td></tr> </table>	지준예치금계정		<table> <tr> <td colspan="2">당좌예금계정</td></tr> </table>	당좌예금계정													
지준예치금계정																	
당좌예금계정																	

<그림 II-11>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예시^{3/3})

- ④ (d+2일) 한국은행에서 d+1일 국고대리점 수납분(400원)을 일괄처리
- ⑤ (d+2일) 자금결제(300원 = ①d일 수납액(300))
- ⑥ (d+2일) 국고대리점에서 100원의 국고금을 수납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한국은행의 회계처리	
국고대리점계정		국고대리점계정	
(d+2) ⑤ 300	(d) ① 300	(d+1) ② 300	(d+2) ⑤ 300
	(d+1) ③ 400	(d+2) ④ 400	
	(d+2) ⑥ 100		
지준에치금계정		정부당좌예금계정	
	(d+2) ⑤ 300		(d+1) ② 300
			(d+2) ④ 400
당좌예금계정		당좌예금계정	
	(d+2) ⑤ 300		(d+2) ⑤ 300

<그림 II-12> 정정처리 수반시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¹³⁷⁾(예시 $\frac{1}{3}$)

① (d일) 국고대리점에서 300원의 국고금을 수납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한국은행의 회계처리	
국고대리점계정		국고대리점계정	
	(d) ① 300		
지준예치금계정		정부당좌예금계정	
		당좌예금계정	

137) 국고대리점에 통상분 수납뿐만 아니라 정정, 조기결제(회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자금흐름을 나타냄

<그림 II-12> 정정처리 수반시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예시Ⅲ)

- ② (d+1일) 한국은행에서 d일 국고대리점 수납분(300원)을 일괄처리
- ③ (d+1일) 100원의 국고금 금액(증가)정정 요청 및 처리
- ④ (d+1일) 200원의 국고금 금액(감소)정정 요청 및 처리
- ⑤ (d+1일) 국고대리점에서 400원의 국고금을 수납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한국은행의 회계처리														
국고대리점계정 <table> <tr> <td>(d+1) ④ 200</td><td>(d) ① 300</td></tr> <tr> <td></td><td>(d+1) ③ 100</td></tr> <tr> <td></td><td>(d+1) ⑤ 400</td></tr> </table>	(d+1) ④ 200	(d) ① 300		(d+1) ③ 100		(d+1) ⑤ 400	국고대리점계정 <table> <tr> <td>(d+1) ② 300</td><td>(d+1) ④ 200</td></tr> <tr> <td>(d+1) ③ 100</td><td></td></tr> </table> 정부당좌예금계정 <table> <tr> <td>(d+1) ④ 200</td><td>(d+1) ② 300</td></tr> <tr> <td></td><td>(d+1) ③ 100</td></tr> </table>	(d+1) ② 300	(d+1) ④ 200	(d+1) ③ 100		(d+1) ④ 200	(d+1) ② 300		(d+1) ③ 100
(d+1) ④ 200	(d) ① 300														
	(d+1) ③ 100														
	(d+1) ⑤ 400														
(d+1) ② 300	(d+1) ④ 200														
(d+1) ③ 100															
(d+1) ④ 200	(d+1) ② 300														
	(d+1) ③ 100														
지준예치금계정 <table> <tr> <td></td><td></td></tr> </table>			당좌예금계정 <table> <tr> <td></td><td></td></tr> </table>												

<그림 II-12> 정정처리 수반시 국고대리점 국고금 수납자금의 흐름(예시^{3/3})

- ⑥ (d+2일) 한국은행에서 d+1일 국고대리점 수납분(400원)을 일괄처리
 ⑦ (d+2일) 자금결제(200원 = ①d일 수납액(300) + ③d+1일 금액추가정정(100)
 - ④d+1일 금액감소정정(Δ 200))
 ⑧ (d+2일) 한국은행에서 300원의 조기결제를 실시
 ⑨ (d+2일) 국고대리점에서 100원의 국고금을 수납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한국은행의 회계처리		
국고대리점계정			국고대리점계정		
(d+1) ④ 200	(d) ① 300		(d+1) ② 300	(d+1) ④ 200	
(d+2) ⑦ 200				(d+2) ⑦ 200	
(d+2) ⑧ 300	(d+1) ③ 100		(d+1) ③ 100	(d+2) ⑧ 300	
	(d+1) ⑤ 400		(d+2) ⑥ 400		
	(d+2) ⑨ 100				
지준예치금계정			정부당좌예금계정		
	(d+2) ⑦ 200		(d+1) ④ 200	(d+1) ② 300	
	(d+2) ⑧ 300			(d+1) ③ 100	
				(d+2) ⑥ 400	
당좌예금계정			당좌예금계정		
	(d+2) ⑦ 200		(d+2) ⑦ 200		
	(d+2) ⑧ 300		(d+2) ⑧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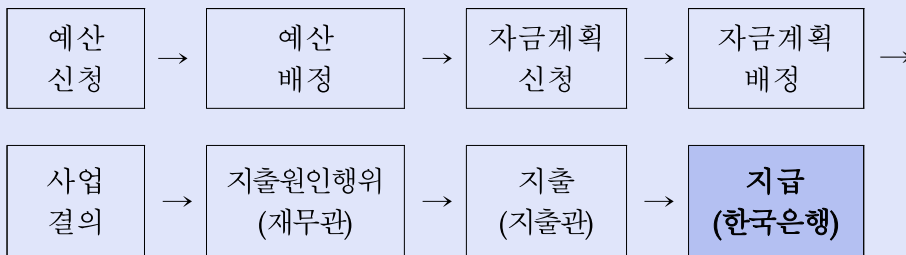
Ⅲ. 국고금의 지급

1. 개 요
2. 지출금의 지급
3.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지급
4. 지출금의 정정

1. 개 요

- 국고금 수납과 마찬가지로 국고금 지급이라 하면 지출금, 환금·반환금 뿐만 아니라 상호예탁, 일시차입 등 자금관리와 우체국자금 같은 기타의 거래로 발생하는 국고금의 지급을 포함
- 자금관리와 기타의 국고금을 제외한 지출금(세출 및 기금지출)과 환금·반환금만을 국고금 지급이라 지칭하는 경향¹³⁸⁾
- ☞ 협의의 국고금 지급에 대해 중점 기술하고 자금관리 등은 별도로 기술¹³⁹⁾

<그림 Ⅲ-1> 지출금의 처리과정



138) 우체국자금(지역본부에서도 지급)과 기금에 준하는 특별계정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서 별도로 취급함에 따른 것임

139) 자금관리 거래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직접 연계(상호예탁,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당해연도 상환 등)되고 경과계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수납(수입) 거래에 지출이 수반하는 등 거래내용이 복잡하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수납과 지급을 동시에 기술함(Ⅳ.자금관리 등 기타의 국고금 수급 참조)

2. 지출금의 지급

- 지출금은 주로 국고대리점(우체국 포함)에서 수납됨으로써 업무가 시작되는 국고금 수납과는 달리 지출관의 지출의뢰에 의해 업무 취급이 시작
- 지출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출을 채권자 또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¹⁴⁰⁾
 - o 지출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하여 지출결의후 지출(자금이체)의뢰를 하면 국고전산망¹⁴¹⁾을 통해 지출의뢰가 실시간으로 한국은행에 도착하고 국고금에서 지급처리되어 계좌입금 등 후속 절차를 수행
-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서 중앙관서 지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지출요청을 받아 처리

<참고 Ⅲ-1> 국고금 지급사무의 위탁

- 국가가 국고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에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무원 급여의 지급, 국채의 상환, 외화 환전 및 송금 등을 위해 주로 위탁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에 정해진 이외의 예금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금융기관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명의(금융기관명의)의 예금계좌는 가지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있어(정부명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함) 양자가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어느 쪽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임

140)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상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에는 국고수표에 의한 지급이 가능한(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

141) 정부 dBrain과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전산망('VI.국고전산망' 참조)

가. 지출 절차

1) 자금계획의 배정

- 기획재정부는 예산, 자금 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별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자금계획)¹⁴²⁾를 배정하고 이를 dBrain을 통해 중앙관서 및 한국은행에 통지
- 기금의 경우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가 자금계획을 설정(배정)하고 dBrain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통지
- 한국은행은 각 중앙관서 계좌의 지출이 동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

<참고 Ⅲ-2> 기금의 자금계획 배정

- 자금계획의 배정은 지출 권한 부여의 의미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실행하나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권한을 기금관리주체 등에게 위탁¹⁴³⁾(「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 동 예규에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수탁기관의 장에게 지출계획 통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불필요한 관리업무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 신청 필요시 반드시 기금관리주체가 한국은행 앞으로 요청

* 한국은행은 국고전산망에 의한 모든 거래를 국가예금 예금주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뢰에 의해 실행하고 있으므로 제반 국고거래 의뢰인의 정당성 확인은 dBrain이 해야 함. 동 내용은 이미 송수신 전문에 반영되어 있으며 dBrain에 공지되었음

142) 중앙관서별로 작성되는 월별세부자금계획을 말함. 중앙관서의 장은 개별 지출관별 한도를 재배정하고 개별 지출관은 동 한도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나 한국은행에 통지되지는 않음

143) '기금의 경우 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장(지출계획의 통지 권한을 수탁 받은 경우)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입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지출계좌로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

2) 지출의뢰 및 지급

- ① 개별 지출관은 채권자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dBrain에 지출결의 및 지급(자금이체) 요청을 입력

— 채권자 통장에 입금자로 인자할 내용(적요)을 입력(미입력시 지출관서 명칭을 앞에서부터 10자 사용)

- ② dBrain은 국고금입금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 요구전문을 생성하여 한국은행으로 전송

— 요구전문은 회계연도, 회계, 지출관 계좌번호, 지급금액, 채권자의 실명번호 및 예금계좌번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등으로 구성

- ③ 한국은행은 지출요구 금액이 해당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의 자금계획배정잔액 및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통합계정 소속회계의 경우 통합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내인지를 확인한 후 출금

— 출금요청은 개별 지출관 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 출금은 지출관 소속 중앙관서의 지출관 계좌 단위로 실행

○ 중앙관서 지출관 : 총 지출누계액(소속 개별 지출관 지출누계액의 합계액)과 자금계획잔액이 존재

○ 개별 지출관 : 당해 고유번호의 지출누계액만 존재

가)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앞 입금

④ 한국은행은 국고금입금 요구전문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입금 요구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¹⁴⁴⁾(우정사업본부 포함. 이하 계좌이체 관련부분에서는 동일)에 송신

⑤ 금융기관은 입금대상 계좌의 실명번호와 수신한 전문상 실명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처리결과 전문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

— 실명번호는 두 개¹⁴⁵⁾까지 전송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 채권자 통장 적요란에는 한국은행이 전송한 입금자(입금의뢰관서) 명칭을 인자

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송된 결과가 입금성공인 경우 입금요구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 당좌예금(우체국은 우체국예탁금)에 입금하고, 입금실패인 경우 지출처리를 취소한 후 그 결과를 국고전산망을 통해 지출관에게 전송

— 다만, 입금금액이 건당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입금하지 않고 당일 지출거래 종료후 일괄 입금¹⁴⁶⁾

⑦ 지출관은 입금처리 결과를 dBrain에서 확인

144) 이체가능 금융기관은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신협, 저축은행은 이체되지 않는 기관도 있음)으로 모든 국고수납 취급 금융기관으로의 이체가 가능함

145)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좌 개설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두 개의 실명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둘 중 하나가 일치하면 정당 채권자 계좌로 인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실명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146) 국고금 지출의 경우 소수의 거액 지급과 다수의 소액 지급이 혼재되어 있어 한국은행 주전산시스템의 처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거래내역 조회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소액은 일괄 입금 방식을 취함

나) 한국은행 앞 입금

④-1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총계정(계좌가 있는 총계정의 경우에는 계좌) 입금 요구인 경우 해당 계정 또는 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국고전산망을 통해 지출관에게 전송

⑤-1 지출관은 입금처리 결과를 dBrain에서 확인

다)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입금

④-2 한국은행은 국고금대체입금 요구인 경우 해당 계정 또는 계좌에 대체입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고전산망을 통해 지출관에게 전송

⑤-2 지출관은 입금처리 결과를 dBrain에서 확인

라) 지로대금 납부

④-3 한국은행은 지로대금입금 요구전문¹⁴⁷⁾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송신

⑤-3 금융결제원은 고지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수납처리¹⁴⁸⁾하고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전송

⑥-3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된 결과가 정상처리인 경우 입금요구 금액을 기타유동부채-지로수납대금 계정에 입금¹⁴⁹⁾하고, 오류인 경우 지출처리를 취소한 후 그 결과를 국고전산망을 통해 지출관에게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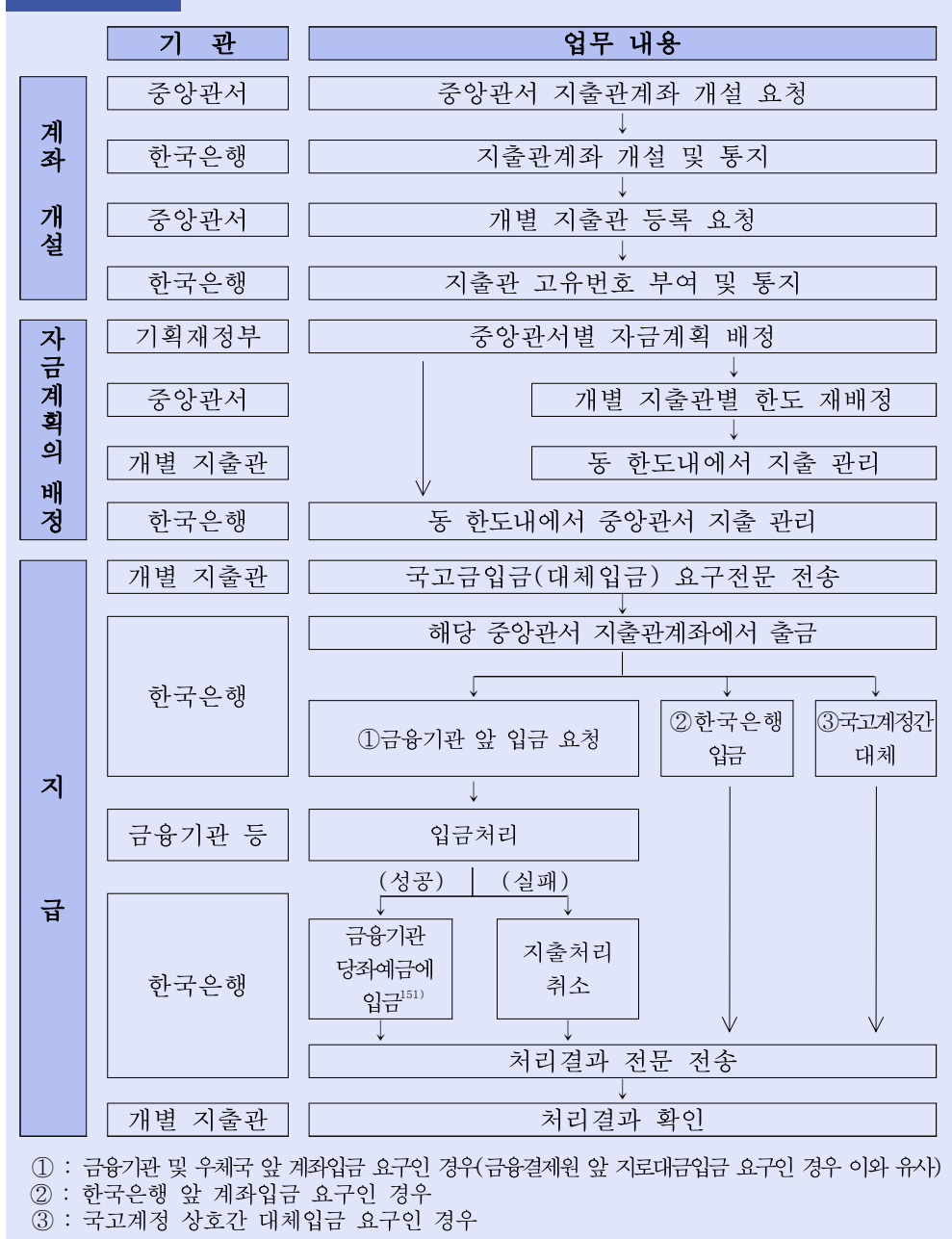
⑦-3 지출관은 입금처리 결과를 dBrain에서 확인

147) 지출관은 지로대금의 납부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dBrain 및 금융결제원과 연결된 재정자금이 계망을 이용하여 조회)한 후 한국은행에 납부요청을 함

148) 해당 지로대금을 한국은행이 수납하였다는 처리를 말하며 수납내역의 징수기관(징수기관 거래 은행 포함) 앞 통지를 포함함

149) 지로대금 종류별로 지정된 기일의 지로차액결제로 결제함(지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여 금융결제국으로 전금하고 수수료는 수입잡수수료-기타 계정으로 처리)

<그림 Ⅲ-2> 세출금¹⁵⁰⁾의 지급과정



150) 기금의 경우 자금계획의 배정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로 변경되는 점 이외에는 동일함

151) 우체국 계좌의 경우에는 우체국예탁금에 입금함

나. 지출금의 처리

1)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계좌입금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우체국예탁금 ²⁾	XXX
	자금계리 ¹⁾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당좌예금	XXX

1. 금융기관 앞 계좌입금인 경우 2. 우체국 앞 계좌입금인 경우

2) 한국은행 입금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국고증권실 계정 ¹⁾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²⁾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²⁾	XXX	당좌예금 ²⁾	XXX

1. 국고증권실에 설치된 계정·계좌로의 입금인 경우
2.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로의 입금¹⁵²⁾인 경우

3)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입금

— 국고내 대체수납의 경우와 동일¹⁵³⁾

152) 외평기금 앞 이체의 경우에는 금융결제국이 국제국으로 변경되며 국제국 회계처리는 국제국에서 별도 처리함

153)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경우 'Ⅱ.국고금의 수납 — 6.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처리', 자금관리 및 기타의 국고금의 경우 'Ⅳ.자금관리 등 기타의 국고금 수급' 참조

4) 지로대금 납부

가) 수납일(= 지출일)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기타유동부채 - 지로수납대금 XXX

나) 지로차액 결제일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없	음)
	자금계리	기타유동부채 - 지로수납대금 ¹⁾³⁾ XXX	원화본지점 - 금융결제국 ¹⁾ XXX
			수입잡수수료 - 기타 ³⁾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 국고증권실 ¹⁾ XXX	당좌예금 ²⁾ XXX

1. 국고증권실에서 지로수납대금에 대한 차액결제 실행시 실행
2. 실제 차변의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시점(11:00) 지로차액 결제시 전금융기관 각각의 차액을 일괄하여 당좌예금계좌에 입출금 함
3. 지로 수수료¹⁵⁴⁾

154) 지로 수납대행에 따른 은행간 수수료로서 징수기관 거래은행이 수납은행에 지급함. 징수기관과 거래은행간 수수료는 개별적 약정에 따르나 4대 징수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한국전력공사, KT)의 경우에는 은행들과 징수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의해 결정된 수수료가 공통적으로 적용됨

<보충설명 6> 국고금 지출가능잔액 관리제도의 변화

국고금의 지급관련 거래(지출, 수입금의 환급·반환, 수입금의 이체, 수입·지출의 정정, 계정 지급 등)시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¹⁵⁵⁾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2003년 10월 9일부터임

이전에는 수입금의 경우 수입정수관계와 잔액, 지출금의 경우 지출관계와 자금계획(2002년까지는 지출한도액) 잔액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계정수급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계정의 가용자금잔액¹⁵⁶⁾ 범위내인지를 확인하였음. 동 제도는 지출관계좌에 자금계획(지출한도액)을 배정할 때 가용자금잔액 범위내에서 배정함으로써 지출금이 국가예금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임. 그러나 수입금의 환급·반환금 총액이 당일 수입금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계계정 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상존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가용자금을 초과한 자금계획의 배정은 불가능한 상황¹⁵⁷⁾이었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고금 지급업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계계정 잔액의 실시간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임(가용자금잔액 범위내에서 배정된 지출한도액은 지출 권한의 위임과 계정잔액 범위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2003년 1월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국고금의 지급을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가용자금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국고금 지급관련 거래시 각 회계계정 잔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자금 관리업무를 폐지하였음(2003.10.9.)

한편, 가용자금 관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으로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을 언제부터 가용자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음

155) 각 회계계정의 잔액에서 타점권 수납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나 한국은행이 타점권을 수납하는 일은 거의 없어 각 회계계정 잔액과 동일시 되기도 함

156) 가용자금이란 각 회계계정의 사용가능한 자금이란 의미임(가용자금과 가용자금잔액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 실무적으로는 총수입(계정수입에 수입금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출을 허가한 금액(지출한도액 및 계정지출)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출을 허가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수 있음

157) 국고금 수입진도에 따라 자금배정을 하여야 하므로 기획재정부 및 중앙관서의 지출한도액 관리업무가 번잡하였음

한국은행 회계시스템상 지출한도액 배정은 '가용자금잔액장(기획재정부의 중앙관서별 배정) → 지출한도액공급장(중앙관서의 장의 재배정) → 지출한도액재배정 통지서 출력'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고, 지출한도액재배정 통지서는 재배정 다음 영업일에 발송되었으므로 업무수행 절차상 금융기관 수납액이 회수되지 않은 채 지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였음

그러나, 당시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을 통상 지출, 통상 수입의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여유자금 회수를 금융기관 수납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금융기관 수납에 따른 자금회수 시차(2영업일)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수납 다음 영업일(D+1영업일)에 지출한도액 재배정을 요청하고 배정 당일 지출을 하고 있었음

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영주체(중앙관서)로부터 금융기관 수납분의 D+1영업일 사용은 한국은행이 관행으로 인정해 온 것이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기금여유자금 회수를 금융기관 납부에서 한국은행 당좌차기 납부로 변경하면 기금 여유자금 운용상 자금혜택이 가능한 점을 내세워 설득하고 가용자금잔액에서 미회수 국고금을 제외하였음

세출의 경우에는 당시 D+1영업일에 지출되는 사례도 거의 없었고, 정부당좌예금 이자부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즉시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 10월 지출한도액 관리방식을 회계계정잔액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미회수 국고금을 지출가능 회계계정잔액에서 차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회수 국고금을 지출하는 사례는 없어지게 되었음

현행과 같은 지출가능잔액 관리방식은 모든 지출을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이 직접 관리할 때에만 가능하고,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라 국고수표 발행에 의한 국고금 지급제도로 전환시에는 가용자금 관리방식에 의한 지출한도액 배정 제도로 환원되어야 하는 바 국고수표에 의한 지급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지급

- 환급금이란 정상적으로 납부된 국고금을 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과오납금반환금이란 징수 또는 납부 착오로 잘못 납부된 국고금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
 - 환급·반환금은 지출이 아니므로 자금계획과는 관계없이 해당 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처리되며, 소속 회계계정의 잔액이 여유가 있더라도 수입징수관계좌 잔액 부족시 취급 불가¹⁵⁸⁾¹⁵⁹⁾
- 환급·반환도 지출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고전산망에 의해 취급되어 한국은행(국고증권실)에서 처리하나 처리방식은 환급·반환의 종류에 따라 상이
 - 국세환급의 경우 매일 1회 국세청으로부터(dBrain 경유) 국세환급 요청 전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처리
 - 기타 환급(관세·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및 반환의 경우 취급관서의 장(환급) 또는 수입징수관(반환)으로부터 국고금입금 요구전문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처리(건별 실시간 처리방식(OLTP))
-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점인 각 통할점에서 환급·반환자로부터 서면으로 요청을 받아 처리

158)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량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국세청, 관세청소관 세입금에 대하여는 관서간 '세입금이체제도'를 두고 있음(각 관서간 세입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한국은행에서는 정정과 동일하게 취급)

159) 환급·반환금은 지출금과 달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돌려주어야 하나, 각 회계계정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은 지출과 같음

<보충설명 7> 국세환급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국세환급금을 국세청과 한국은행간 파일송수신(FTP)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2001년 4월 처음 가동을 시작하였음. 당시에는 국고금 지급업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이 있어 99개 세무서의 국세환급금 지급업무를 국고대리점에서 취급하였음. 각 세무서장이 한국은행(통합점)에 국세환급금 이체요구서를 제출하면 한국은행은 해당 세무서 수입징수관(당시에는 세입징수관) 계좌에서 환급 처리하여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계좌로 국고송금하고,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은 동 자금을 재원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한 다음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국고송금요구서(현금지급분)를 첨부하여 국고대리점에 환급금 지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음

당시 연간 환급건수를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을 합쳐 약 120만건으로 추산¹⁶⁰⁾하였는데, 120만건을 단순 평균하는 경우 세무서당 12,000건으로 일평균 약 40건에 불과하여 업무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국세환급이 부가가치세 납부(연4회)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연1회)후 약 1개월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 세무서 기준 4,000~5,000건의 국세환급(계좌이체 및 국고송금 취결)을 일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로 개별 국고대리점이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¹⁶¹⁾.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 취급 국고대리점들은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한국은행에 국고대리점 지정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음

국세환급시스템의 도입은 2000년 7월 국세청이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부분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기관을 연결한 전산시스템(당시로서는 한은금융망에 국세청을 추가 접속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체하고 현금지급은 환급은행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음

160) 연간 국세환급업무 전체를 취급한 첫 해인 2002년 계좌이체 132만건, 현금지급 60만건으로 거의 200만건에 육박하였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4년 계좌이체 365만건, 현금지급 117만건으로 482만건에 달함

161)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창구 담당 직원의 1일 업무처리량이 200건 내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 집중도를 추측해 볼 수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해당하나 2개 세무서의 국세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도 있었음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이미 환급은행 제도 도입은 국고통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판단¹⁶²⁾이 있었으므로 국세청의 새로운 방안이 비록 계좌이체 처리를 한국은행에서 직접 취급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방안에서 진일보 하였다 하나 여전히 현금지급은 환급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현금지급을 환급은행이 아닌 우체국에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자고 수정 제안하였음

이후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가 현금지급업무를 우체국에서 취급하도록 합의하면서¹⁶³⁾ 국세환급금 지급제도 개편이 빠르게 진전됨.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법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서 제기한 국고통일의 원칙 위배문제는 한국은행이 우체국예금도 한국은행의 우체국예탁금으로 예탁되어 국고금으로 순환된다는 점에서 우체국의 현금지급이 국고통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함으로써 해결됨

한편, 국세환급시스템은 처음부터 파일송수신 방식을 채택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중에 일괄처리¹⁶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급이나 그때나 금융기관이 영업시간 중에 일괄처리(보통 Batch처리라 함)를 하는 사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은행의 국세환급금의 업무시간 중 처리 요구를 금융기관들이 별다른 이견없이 수락하였는 바, 국세환급업무에 대한 국고대리점 직원들의 거부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임

국세환급금 처리와 관련해서 명문화되지 않은 국세청과 한국은행간 신사 협정이 있는 바 1일 국세환급금 취급 건수가 50만건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각 금융기관에 안분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국세

162) 국세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국고대리점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국세환급금을 전담처리하는 환급은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입법(「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국고통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었음

163) 당시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은 지급의뢰시 자금을 우정사업본부에 넘기므로 지급시까지 최장 1년간 자금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징세행정에 있어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설득하였음

164) 국세청은 10:00까지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11:00까지 금융기관에 전송하며, 금융기관은 처리후 결과를 13:00까지 한국은행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1:00~13:00사이에 처리함(2009년 영업시간 30분 조기개시로 시스템 도입 당시보다는 30분이 당겨진 것임)

환급금 일괄처리를 금융기관 영업시간 중에 해야 한다는 제약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전용선 처리 용량에 따른 제한을 감안하여 설정한 안정 처리건수¹⁶⁵⁾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전용선은 금융기관과의 송수신 자료 크기에 따라 은행별로 64~256Kbps내외를 사용하고 있어 송수신 용량에 비해 회선 용량이 적지 않으나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파일송수신 방식의 특수성¹⁶⁶⁾으로 인해 때때로 송수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1일 국세환급 처리량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영업시간 중에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고려한 후, 금융기관과의 전용선 용량을 늘리거나 송수신 방식을 변경하는 등을 통한 송수신 용량 문제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한편 2008년 6월 국세청은 5일간 1,680만건의 국세환급금(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한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국세환급시스템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시스템을 이용하였음. 당시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1일 약 350만건, 은행별 약 100만건 이내에서 처리¹⁶⁷⁾하기로 하고 국세청,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2008년 11월~12월중 9회차에 걸쳐 1,394만건을 처리한 바 있음

따라서 앞으로 대량의 국세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건수를 안분하여 한국은행 국세환급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시에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임

165) dBrain에서도 일정수준(50만건 정도) 이상의 환급자료가 송신되면 메모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나 실제 발생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한국은행 도달 이전 상황이므로 모니터링 되지 않음)

166) 파일을 블록 단위로 잘라서 블록 단위로 송신하며, 각 블록 송신후 결번 여부를 상호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함(금융결제원의 파일송수신 방식과 동일함). 보통 1블록은 4,096byte이내에서 100개의 소블록으로 구성되며, 100개의 소블록에 레코드를 할당하여 송수신함. 소블록당 레코드 수는 각 레코드의 전문길이에 따라 달라짐(전문길이가 짧을수록 블록당 레코드 수가 많아 짐)

167) 금융결제원 대량지급에는 약 3~4일이 소요되며 금융기관이 야간에 처리하므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대량지급에도 일일처리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님

가. 국세환급금의 지급

1) 환 금

- ① 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세환급을 결정
 - 환급금 수령인이 환급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환급
- ②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계좌입금(현금지급) 요구전문을 파일로 생성하여 한국은행으로 전송(dBrain 경유)¹⁶⁸⁾
- ③ 한국은행은 수신한 파일을 일괄처리
 - 환급요구 금액이 각 수입징수관 수입누계액 및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내인지를 확인한 후 환급금 회계처리용 전산파일 및 계좌이체·현금지급의뢰 전문 파일을 생성

2)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앞 입금

- ④ 한국은행은 일괄처리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
 - 해당 계좌에서 환급처리 후 환급금액을 입금의뢰 금융기관 당좌예금 또는 우체국예탁금에 입금
- ⑤ 한국은행은 계좌이체입금 요구전문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이체요구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이하 계좌이체 관련 부분에서는 동일)에 송신

168) 국세청과 한국은행간 모든 파일 송수신은 dBrain을 경유하여 송수신(dBrain은 중계만 할 뿐 자료를 보관하지는 않음)함. 이후 별도 설명이나 주석이 없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송수신 된다는 의미를 내포함

- ⑥ 금융기관은 입금대상 계좌의 실명번호와 수신한 전문상 실명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처리결과 파일을 생성하여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
 - 실명번호는 두 개까지 전송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 채권자 통장 적요란에는 각 세무서의 명칭을 인자(평상시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수입징수관 정보를 활용)
- ⑦ 한국은행은 수신한 파일을 일괄처리
 - 입금실패분에 대한 회계처리용 전산 파일 및 국세청 송신용 국세환급금 이체 처리결과 파일 생성
- ⑧ 한국은행은 일괄처리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
 - 입금실패분에 대하여 금융기관 당좌예금 또는 우체국예탁금에서 차기하여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으로 입금
- ⑨ 한국은행은 이체 처리결과 파일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
- ⑩ 각 세무서는 이체 처리결과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 한국은행 반송 또는 입금실패분에 대하여는 이체정보 검증 후 재이체 의뢰하거나 현금지급으로 변경¹⁶⁹⁾ 요구

169) 국세환급금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좌이체↔현금지급간에 항상 변경될 수 있으며, 재 처리분의 처리과정은 출금계좌가 수입금이 아닌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이라는 점 이외에는 최초 요구분과 동일함

3) 우체국 앞 현금지급 요청

④-1 한국은행은 일괄처리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

— 해당 계좌에서 환급처리 후 환급금액을 우체국예탁금계정에 입금

⑤-1 한국은행은 현금지급 요구전문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에 송신¹⁷⁰⁾

⑥-1 우정사업본부는 수신한 전문을 처리(현금지급 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우체국은 국세환급금 수령인이 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지급(지급결과를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

⑦-1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지급요구 처리결과 및 기 지급요구 중 지급완료 내역 파일을 생성하여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

⑧-1 한국은행은 수신한 파일을 일괄처리

— 현금지급요구 처리결과, 현금지급완료 결과 전산등록 및 국세청 앞 통지 파일 생성

⑨-1 한국은행은 현금지급요구 처리결과 및 현금지급완료 내역 파일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

⑩-1 각 세무서는 현금지급 처리결과 및 현금지급완료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170) 현금지급(취소) 관련 전문은 우체국 앞 계좌이체 전문과 동일한 파일로 생성되어 송수신 됨

4) 현금지급의 취소

- ① 국세청은 국세환급금현금지급취소 요구전문을 파일로 생성하여 한국은행으로 전송
- ② 한국은행은 수신한 파일을 일괄처리(취소요구 사실을 기록)한 후 현금지급취소 요구전문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에 송신
- ③ 우정사업본부는 수신한 전문을 처리¹⁷¹⁾하고 처리결과 파일을 생성하여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
- ④ 한국은행은 수신한 파일을 일괄처리
 - 현금지급취소분에 대한 회계처리용 전산 파일 및 국세청 앞 통지 파일 생성
- ⑤ 한국은행은 일괄처리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
 - 우정사업본부의 지급취소분에 대하여는 우체국예탁금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 입금
- ⑥ 한국은행은 처리결과 파일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
- ⑦ 각 세무서는 현금지급취소 처리결과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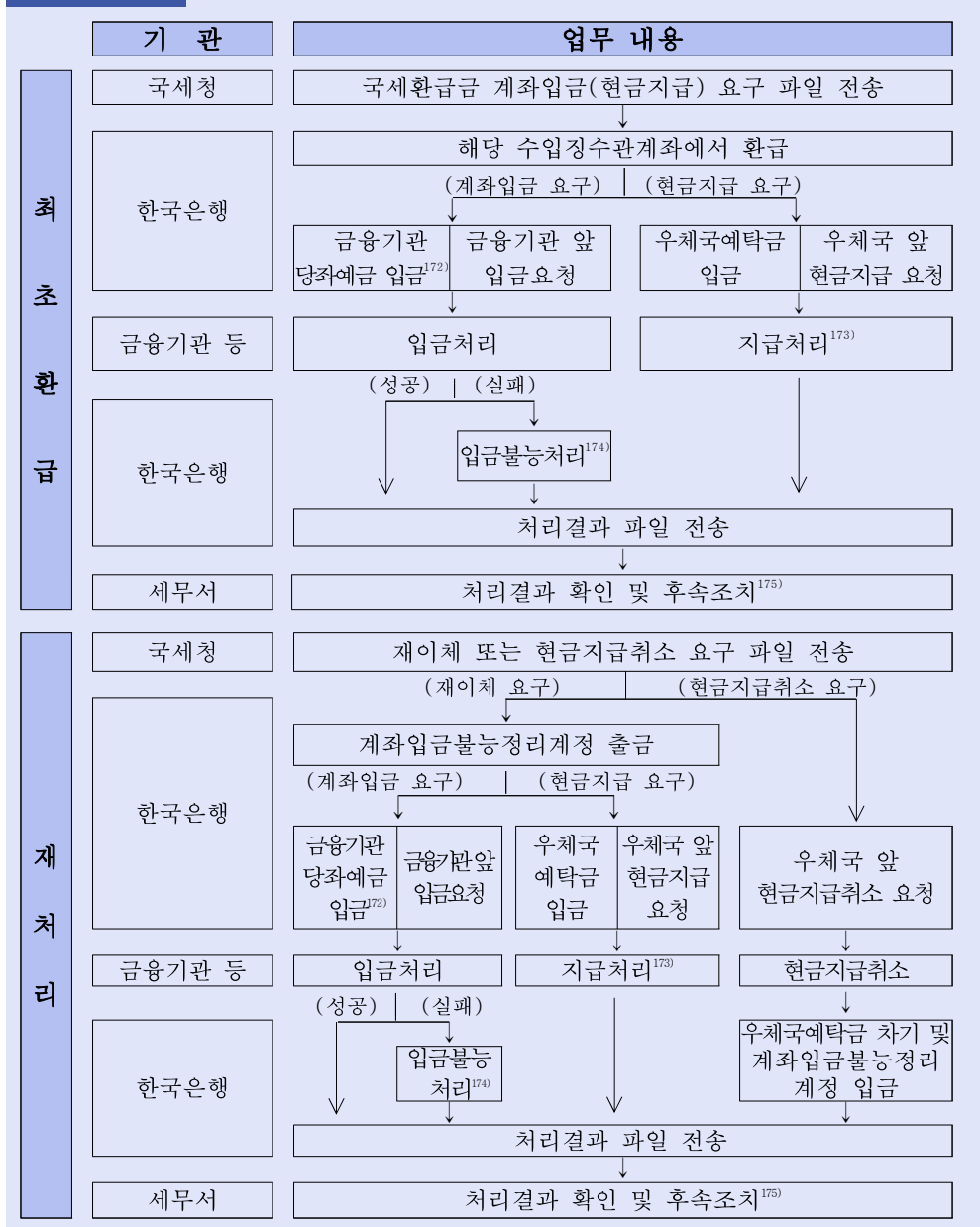
171) 현금지급취소 요구분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취소, 이미 지급되었을 때에는 취소불능으로 처리함

<참고 Ⅲ-3> 국세환급금의 순환

최초 요구	처리 결과	재처리 요구	처리 결과	재처리 요구	처리 결과	재처리 요구	처리 결과	재처리 요구	처리 결과
계좌이체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재이체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재이체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재 처 리)			➔
				현금지급 요구	지급대기	지급완료			
					지급대기	현금지급 취소요구	현금지급 취소	계좌입금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현금지급 요구	지급대기	지급완료					
			지급대기	현금지급 취소요구	현금지급 취소	계좌입금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재이체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현금지급 요구	지급대기
현금지급 요구	지급대기	지급완료							지급대기
	지급대기	현금지급 취소요구	현금지급 취소	계좌입금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재이체 요구	입금완료		
							입금불능	(재 처 리)	➔
						현금지급 요구	지급대기	지급완료	
							지급대기	(재 처 리)	➔

* 입금불능분과 현금지급 대기분은 입금완료 또는 지급완료시까지 재처리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음(최장 13개월 정도). 국세환급금은 최초 환급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하므로 우정사업본부는 최초 환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금지급요구 건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익월 말일까지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또한 각 세무서는 약 10개월 이상 입금불능 상태인 환급 건은 1년 경과시 우정사업본부가 세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요구로 전환하여야 함

<그림 Ⅲ-3> 국세환급금의 처리과정



172) 우체국 계좌의 경우에는 우체국예탁금에 입금함

173) 전일자 지정시점(우체국내부 적의 설정)에서 당일자 지정시점까지의 지급처리 실적을 전송함

174) 금융기관 당좌예금에서 차기하여 계좌입금불능정리계정에 입금함

175) 입금실패분에 대한 재이체 요구(또는 현금지급 요구) 및 현금지급분에 대한 현금지급취소 후 계좌입금 요구 등의 조치를 말함

나. 관세·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 지급

1) 환급 또는 반환

- ① 수입징수관(환급금의 경우 관서의 장)은 dBrain에 환급·반환 결의 및 지급(자금이체) 요청을 입력

— 채권자 통장에 입금자로 인자할 내용(적요)을 입력(미입력시 수입징수관서 명칭을 앞에서부터 10자 사용)

- ② dBrain은 국고금입금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지출관 앞 반납인 경우에 한정) 요구전문을 생성하여 한국은행으로 전송

— 요구전문은 회계연도, 회계,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지급금액, 채권자의 실명번호 및 예금계좌번호(또는 지출관 계좌번호) 등으로 구성

- ③ 한국은행은 환급·반환 금액이 해당 수입징수관계좌의 수입누계액(잔액) 및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내인지를 확인한 후 환급·반환 처리

2)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앞 입금

- ④ 한국은행은 국고금입금 요구전문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입금요구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송신

- ⑤ 금융기관은 입금대상 계좌의 실명번호와 수신한 전문상 실명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처리결과 전문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

— 실명번호는 두 개까지 전송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 채권자 통장 적요란에는 한국은행이 전송한 입금자(입금의뢰관서) 명칭을 인자

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송된 결과가 입금성공인 경우 입금요구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 당좌예금(우체국은 우체국예탁금)에 입금하고, 입금실패인 경우 환급·반환처리를 취소한 후 그 결과를 국고전산망을 통해 수입징수관에게 전송

— 다만, 입금금액이 건당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입금하지 않고 당일 지출거래 종료후 일괄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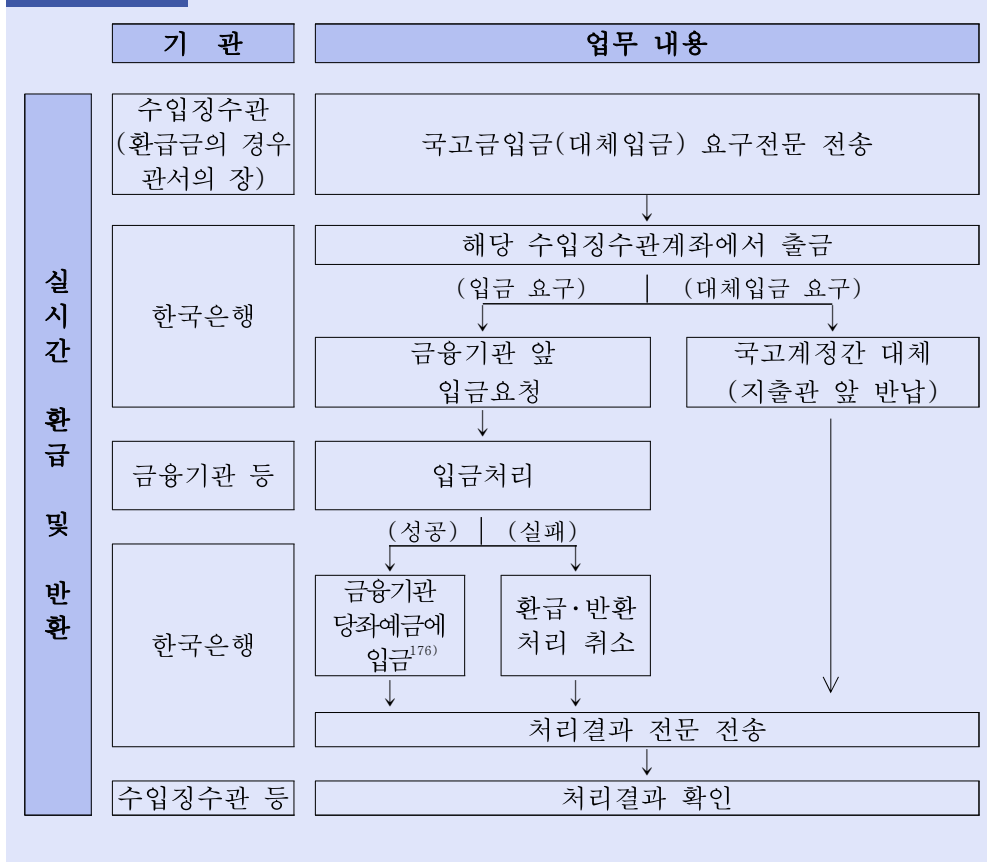
⑦ 수입징수관 등은 입금처리 결과를 dBrain에서 확인

3)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입금(지출관 앞 반납)

④-1 한국은행은 해당 계좌에서 환급·반환처리하여 지정된 지출관계좌에 반납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고전산망을 통해 수입징수관에게 전송

⑤-1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 등은 반환 및 반납처리 결과를 dBrain에서 확인

<그림 Ⅲ- 4> 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처리과정(실시간 이체)



176) 우체국 계좌의 경우에는 우체국예탁금에 입금함

다. 현금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처리

1) 국세환급금

가)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일반회계	-XXX
					계좌입금정리	XXX
			계좌입금정리	XXX	우체국예탁금 ²⁾	XXX
지역본부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일반회계	-XXX
					국고송금	XXX
	국고증권실		국고송금	XXX	계좌입금정리	XXX
			계좌입금정리	XXX	우체국예탁금 ²⁾	XXX
공 통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¹⁾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당좌예금	XXX

1. 금융기관앞 계좌입금인 경우 2. 우체국앞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인 경우

나) 계좌입금실패 및 현금지급취소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공 통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우체국예탁금 ²⁾	XXX	계좌입금불능정리	XXX
	금융결제국	자금계리 ¹⁾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1. 금융기관 계좌입금실패인 경우 2. 우체국 계좌입금실패 및 현금지급취소인 경우

2) 관세·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및 과오납금반환금

가) 납부자 앞 환급·반환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계좌입금정리	XXX
			계좌입금정리	XXX	우체국예탁금 ²⁾	XXX
지역본부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국고증권실				국고송금	XXX
			국고송금	XXX	계좌입금정리	XXX
			계좌입금정리	XXX	우체국예탁금 ²⁾	XXX
공 통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¹⁾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당좌예금	XXX

1. 금융기관앞 계좌입금인 경우 2. 우체국앞 계좌입금인 경우

나) 지출관 앞 반환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¹⁾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지역본부 ¹⁾	계좌개설점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국고송금 XXX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없)	음)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1. 수입징수관계좌 개설점 기준

4. 지출금의 정정¹⁷⁷⁾

가. 청구정정

- 지출관의 요청에 의해 처리하는 정정으로 회계연도, 회계, 소관 등의 정정만 가능¹⁷⁸⁾

1) 정정의 종류

- 회계연도 정정, 계좌번호 정정

2) 정정의 요청

- 지출관은 정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¹⁷⁹⁾를 제외하고는 dBrain을 이용하여 국고전산망으로 요청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정정처리시 월계대 사용 월분은 정정요청이 한국은행에 접수된 일자가 속하는 월분을 적용
- 지출관은 전산장애 등에 따라 서면으로 정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요청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¹⁸⁰⁾에 송부
 - 정정처리시 월계대사용 월분은 국고전산망에 의한 경우와 같이 정정요청서가 한국은행에 접수된 일자가 속하는 월분을 적용

177) 환급금·과오납금반환금에 대한 정정 절차는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추가 환급 또는 채수납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178)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며, 실무적으로는 회계연도 정정 및 계좌번호 정정 두 가지 종류를 취급함으로써 규정내용을 충족함(착오 여부, 오류 원인 등은 파악하지 않음)

179) 전산시스템 장애, 전산시스템 미개발 등으로 연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함

180) 지출관 계좌는 모두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다른 통할점에는 요청할 수 없음

나. 내부정정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이 지출관의 서면 요청에 의해 지출금을 지급¹⁸¹⁾하면서 지출관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1건을 2건 이상으로 중복 취급한 경우¹⁸²⁾에 실시¹⁸³⁾¹⁸⁴⁾

다. 계 리

1) 계좌번호 정정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각회계계정 XXX	

2) 이중입력(과다입력, 지출취소)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우체국예탁금 ³⁾ XXX	
		자금계리	한국은행 계정 ¹⁾ XXX	정부당좌예금 ¹⁾²⁾ XXX
			원화본지점 - 금융결제국 ²⁾ XXX	
	금융결제국		당좌예금 ²⁾ XXX	원화본지점 - 국고증권실 ²⁾ XXX

1. 오류금액이 당좌예금 이외의 한국은행 총계정으로 입금된 경우

2. 오류금액이 금융기관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3. 오류금액이 우체국예탁금으로 입금된 경우

3) 과소입력 — 지출금 지급과 동일¹⁸⁵⁾

181) 기 입력한 지출의 취소를 위한 정정도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입금 금융기관 입력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음(취소후 재입력만 가능)

182)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인 경우에도 적용가능함. 금융기관 고객 계좌 또는 우체국 고객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와 고객 계좌와 연계없이 단순히 금융기관 당좌예금 및 우체국예탁금 계좌로만 입금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음

183) 금액정정을 수반하는 정정으로서 금융기관 계좌입금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정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계좌입금액의 정정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함(금융기관 협의 불능시 정정은 불가능하며 반납, 추가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184) 수입금 대체지출에 대한 정정은 없으므로 수입금 취소 및 지출금 취소의 절차를 취함

185)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2.지출금의 지급 - 나.지출금의 계리' 참조

Ⅳ. 자금관리 등 기타의 국고금 수급

- 1. 자금관리 국고금의 수급**
- 2. 기타의 국고금 수급**
- 3. 법원의 전부·추심명령에 따른 국고금 지급**

1. 자금관리 국고금의 수급

가. 국고금의 상호예탁

- 수입, 지출 일정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자금의 여유가 있는 회계계정(통합계정,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절차¹⁸⁶⁾
- 상호예탁은 여유자금을 가진 회계계정을 관장¹⁸⁷⁾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해 실행¹⁸⁸⁾
 - o 반환은 예탁받은 회계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해 실행

(회계처리)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¹⁸⁹⁾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국고금예탁	XXX
		국고금예탁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음)		음)	

1. 모든 거래는 계정수급으로만 처리됨 2. 반환은 역순으로 회계처리

186) 회계계정간 상호예탁뿐만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상잉여금 중 미처분 금액을 상호예탁(동일 회계계정의 회계연도간 상호예탁)하는 것도 가능함

187) 통합계정, 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고 기금은 기금관리주체가 담당함

188) 국고금 상호예탁 및 반환은 dBrain으로 신청하며 모두 계정수급으로 처리함

189) 전산처리시 계정수급 거래는 각 취급점 및 통할점 거래(수입·지출 거래)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부 거래로 분류하고 있음

나. 일시차입

- 수입, 지출 일정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차입하여 조달하는 절차
- 일시차입(정부대출)은 국회의 기채한도 승인¹⁹⁰⁾, 한국은행 앞 일시차입한도 신청,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부일시대출 한도 및 조건 승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차입 신청¹⁹¹⁾, 실행의 순으로 실행¹⁹²⁾
 - o 일시차입의 상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상환 신청에 의해 실행
- 일시차입 이자는 원금 상환과는 별도로 분기별로 산정하여 매 분기 익월 초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서면 청구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분기 말일까지 dBrain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납부
 - o 이자는 차입 회계계정 소속 지출관이 지급(차입 회계계정에서 부담하는 경우)하거나 국고금운용수익에서 지급(국고금운용수익 계정에서 부담하는 경우)

(회계처리)

1) 일시차입의 실행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분 부	국고계리		일시차입금 XXX
		일시차입금 XXX	각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일시정부대출금 XXX	정부당좌예금 XXX

190) 국회 예산 승인시 예산총칙에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 한도(합산한 한도)가 기재되어 승인됨

191) 기획재정부장관의 차입한도, 차입, 상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교환방식 또는 Fax)으로 송부되고 있음

192)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입한 회계계정의 계정수급으로 처리함

2) 일시차입의 원금 상환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일시차입금 XXX
		일시차입금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일시정부대출금 XXX

3) 일시차입의 이자 지급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¹⁾ XXX	
		국고금운용수익 ²⁾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정부대출금이자 XXX

1. 지출권이 지급하는 경우 2. 국고금운용수익에서 지급하는 경우

<참고Ⅳ-1> 2015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구분	회 계 별	대출금 한도 (억원)	상환기한	기 타
일시 대출 금	통합계정	300,000	2016.1.15일	대출취급기한 : 2015.12.31일 (단, 양곡관리특별 회계의 경우 2014 년 대출금 중 미 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16.9.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15.12.31일	
합 계		400,000		

—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함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재정증권 발행

- 수입, 지출 일정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절차¹⁹³⁾
- 재정증권은 국회가 승인한 기채한도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증권팀)이 발행
 - 재정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dBrain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회계계정(통상 통합계정)에 입금
 - 재정증권의 상환은 만기 1영업일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dBrain을 통하여 교부하는 원리금상환자금을 재원으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증권팀)이 수행

(회계처리)

1) 재정증권 발행 및 발행자금 이체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재정증권 발행자금 ¹⁾	XXX
		재정증권 발행자금 ²⁾	XXX	재정증권 ²⁾	XXX
		재정증권 ²⁾	XXX	통합계정 ²⁾	XXX
	자금계리 ¹⁾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 국고증권실	XXX
		원화본지점 -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1. 재정증권 발행자금 수납 2. 발행자금의 이체

193)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통합계정의 계정수급으로 처리하나,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국고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편입함

2) 재정증권 상환자금 이체(원금)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통합계정	XXX	재정증권	XXX
		재정증권	XXX	재정증권원리금 상환자금	XXX
	자금계리	(없		음)	

3) 재정증권 상환자금 이체(이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본 부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¹⁾	XXX	재정증권원리금 상환자금	XXX
		국고금운용수익 ²⁾	XXX		
	자금계리	(없		음)	

1. 지출권이 지급하는 경우

2. 국고금운용수익에서 지급하는 경우

라. 국고여유자금 운용¹⁹⁴⁾

- 국고금으로 수납된 자금 중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일시 여유 자금은 금융기관 등¹⁹⁵⁾에 운용
-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유자금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dBrain을 이용하여 통합계정의 자금을 국고금세부운용계정출납공무원 계좌로 이체
- 국고금세부운용계정출납공무원은 이체받은 자금을 dBrain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 자금을 운용할 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입금¹⁹⁶⁾하여 운용
 - o 운용자금의 회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수 요청 문서에 의해 금융기관 등이 한은금융망 당좌차기 방식으로 납부¹⁹⁷⁾하며, 이 중 원금은 출납공무원이 dBrain을 이용하여 통합계정에 반환

(회계처리)

1) 출납공무원앞 이체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통합계정	XXX	국고금예탁	XXX
		국고금예탁	XXX	국고금세부운용	XXX
	자금계리	(없		음)	

194) 통합계정의 경우에 한하며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 지출 절차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195)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하여 운용하고 있음

196) 기획재정부장관은 dBrain을 이용하여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외에 동 내역을 문서(전자문서 교환방식 또는 Fax)로 한국은행에 별도 통보하고 있음

197) 원금은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 입금되고 이자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 입금됨.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금운용수익을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여유자금 운용의 절차를 취하고 있는바(반환은 역순으로 처리)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금융기관앞 이체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국고금세부운용	XXX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당좌예금	XXX

3) 운용자금 회수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국고금세부운용 ¹⁾	XXX
				국고금운용수익 ²⁾	XXX
금융결제국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1. 원금의 경우 2. 이자의 경우

4) 통합계정앞 반환¹⁹⁸⁾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국고금세부운용	XXX	국고금예탁	XXX
		국고금예탁	XXX	통합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198) 여유자금운용수익은 통합계정에 반환되지 않으며(결산상잉여금 처분을 제외한 계정수급 거래는 최종적으로 입금액과 출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 국고금 운용 관련 경비의 지급에 사용함(국고금운용수익계정출납공무원이 dBrain을 이용하여 지출금에 준하여 지급요청을 함)

마. 결산상잉여금의 처분

— 결산상잉여금이란 회계연도 종료후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말하며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국가배상금·차입금·부담금 등의 상환,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다음연도 이월 등으로 처분¹⁹⁹⁾

○ 지방재정교부금은 각 회계계정의 자금을 세계잉여금처리계정 출납공무원 앞 이체하여 동 출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²⁰⁰⁾

○ 나머지 결산상잉여금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세입으로 편입)하여 처분²⁰¹⁾

(회계처리)

1) 출납공무원앞 이체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XXX	세계잉여금처리	XXX
	자금계리	(없		음)	

199)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수입금으로 편입)하며 결산상잉여금 처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dBrain을 이용하여 요청함

200) 각 계정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출납공무원을 경유하는 것은 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 지급함으로써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에 감사원 계산증명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 경리내용에 대한 내부통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임

201) 다음 회계연도 이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분(회계계정의 수급으로 직접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 및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2) 금융기관앞 이체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세계잉여금처리	XXX		
국고증권실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당좌예금	XXX

3) 다음연도 이월(세입 편입)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본 부	국고계리	각회계계정 ¹⁾	XXX	각회계계정 ²⁾	XXX
	자금계리	(없		음)	

1. 전년도 회계계정의 계정 지출(기금 포함) 2. 현년도 수입금 계좌 수입(기금 포함)

2. 기타의 국고금 수급

가.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 과거 공공기금으로 한국은행에 예탁되고 있다가 공공기금 지위를 상실하고도 계속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국고금으로 특별계정에 해당하나 기금에 준하여 출납
 - 조달사업회전자금(종전 조달기금), 우체국보험적립금(종전 우체국 보험기금) 두 종류가 있으며 모든 업무는 기금과 동일하게 처리

나. 우체국 관련 국고금

- 금융업을 영위하는 정부관서인 우체국의 대금융기관 거래 및 정부관서로서의 거래를 위해 국고계정(특별계정)에 계좌를 개설²⁰²⁾하여 예탁하는 국고금을 말하며 특별계정 수급방식에 따라 출납
- 우체국은 우체국예탁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거래와 정부관서인 우체국으로서의 거래를 동시에 수행

202) 특별계정에 우체국예탁금 계정을 설치하고 동 계정 하위에 우정사업정보센터 주입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 계좌를 개설하고 있음(동 센터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으로 우체국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과거부터 각 우체국간 내부 환거래를 집중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에 따라 한국은행 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 온 것으로 추정됨)

<보충설명8> 우체국예탁금과 금융기관 당좌예금

금융업을 영위하는 정부기관인 우체국은 금융기관과 다양하고 많은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는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는 것과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의 차이는 전자는 금융기관과 우체국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금융기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는 데 있음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나 2000년대 들어 중형 시중은행 수신규모를 넘어선 우체국의 예수금 규모, 우체국 은행을 표방한 영업정책 등 이미 은행과 경쟁관계에 들어서 있는 우체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은행을 매개로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기는 어려워 보임

우체국이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금융기관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국고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전자는 한은금융망을 사용하고 후자는 국고전산망²⁰³⁾을 사용하게 되어 계좌 개설 방법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됨

2002년말²⁰⁴⁾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에서는 우체국 금융사업의 급성장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증가 등을 이유로 한은금융망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한국은행(금융결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계속 국고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수행중임

203) 금융기관 앞 자금이체시에는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을 이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수납 채널(주로 당좌차기 수납)을 이용함

204) 당시에도 우체국은 국고계정인 우체국예탁금(당시에는 정보통신부예탁금으로 불렸음)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 앞 자금이체를 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창구에 당좌수표(금융기관이 발행한 한국은행 당좌수표)로 납부하도록 하였음

1) 금융기관으로서의 거래

가) 한국은행과의 현금 수수

— 우체국은 우체국과초금 대체불입 청구서에 의해 현금을 입금하고 우체국자금 청구서에 의해 자금을 청구(현금 인출)²⁰⁵⁾

o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전표(당좌예금 입금표)에 의해 현금을 입금하고 한은금융망에 의해 자금을 청구(현금 인출)

나) 국고금의 결제

— 한국은행은 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및 지급자금 결제시 우체국은 우체국예탁금 계좌에 차(대)기하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당좌예금 계좌에 차(대)기

다) 금융기관과의 자금이체 및 차액결제

— 우체국은 dBrain을 경유²⁰⁶⁾하여 국고전산망에 접속하여 금융기관으로 자금이체를 실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수령은 한은금융망 당좌차기 방식을 이용²⁰⁷⁾

o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에 따른 차액결제에도 금융기관은 당좌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반면 우체국은 우체국예탁금 계좌를 사용

205) 우체국과초금과 우체국자금을 합하여 '우체국 수급금'이라 함

206) 우정사업본부는 dBrain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자체전산시스템을 dBrain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국고전산망을 이용함

207) 거래에 필요한 계좌로 우체국예탁금 계정의 우정사업정보센터 계좌를 이용함

2) 정부기관으로서의 거래

가) 선사용자금 교부

- 선사용자금 교부란 우체국에 허용된 선사용자금²⁰⁸⁾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미리 교부하는 것으로 기업특별회계 또는 통합계정의 계정수급으로 우체국예탁금 계좌에 교부 및 반환

나) 선사용자금 보전 불입

- 선사용자금으로 사용한 국고금을 사후적으로 정당 수입금 및 지출금으로 대체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

다) 국고금 예탁

- 다른 회계계정의 여유자금을 예탁받거나 예탁하는 것도 가능

<보충설명9> 우체국예탁금과 자기앞수표

현재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우체국예탁금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는 바, 이는 자체 선사용자금 출납금액과 우체국예탁금 계좌(주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계좌)의 수급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우체국예탁금은 국고계좌로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원래 금융기관 당좌예금 계좌 대신 개설한 것이어서 금융기관 당좌예금 처리 기준에 맞추어 타점권의 입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우체국의 내부관행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국고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한국은행에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여 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자금상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닌가(또는 한국은행이 자금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208) 수납한 국고금을 수입 및 지출로 계리하기 전에 우선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각각 수입 및 지출로 대체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금을 말함('I.국고제도 개관 - 2.국고금 취급기관' 참조)

자기앞수표 발행기관은 수표 발행시 발행금액 상당을 별단예금에 예치하였다가 수표의 지급 청구(교환결제 등)시 동 금액을 출금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에 입금한 자기앞수표의 자금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우체국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동 수표 교환결제전까지는 자금을 완전히 이전받은 상태가 아님(최종적인 자금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이전 예약상태의 성격).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자기앞수표 자금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기앞수표 수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금상 이득도 취하고 있지 않음

한편, 우체국예탁금에 입금된 타점권은 교환결제시 자금화가 되어 인출이 허용되고 우체국의 교환결제자금은 우체국예탁금에서 결제되므로 양자가 서로 상쇄됨(인출이 허용된 자금으로 교환결제를 하게 된다는 의미임)

3) 회계처리²⁰⁹⁾

가) 우체국과초금 수납

(국고증권실 수납분)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우체국수급금	XXX
		우체국수급금	XXX	우체국예탁금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정부당좌예금	XXX

209) 국고금의 결제 및 당좌차기 수납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Ⅱ.국고금의 수납 — 6.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계리', 'Ⅲ.국고금의 지급 — 2.지출금의 지급 및 3.환급금 및 과오납금반환금의 지급' 참조

(지역본부 수납분)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지역본부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현	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우체국수급금	XXX
		우체국수급금	XXX	우체국예탁금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정부당좌예금	XXX

나) 우체국자금 지급

(국고증권실 지급분)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우체국예탁금	XXX	우체국수급금	XXX
		우체국수급금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현	금 XXX

(지역본부 지급분)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지역본부	국고계리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현	금 XXX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우체국예탁금	XXX	우체국수급금	XXX
		우체국수급금	XXX	국고송금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지역본부	XXX

다) 금융기관앞 자금이체 및 차액결제(부)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우체국예탁금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금융결제국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당좌예금 ²¹⁰⁾ XXX

라) 차액결제(승)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금융결제국	자금계리	당좌예금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XXX
국고증권실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XXX	정부당좌예금	XXX
	국고계리			우체국예탁금	XXX

마) 선사용자금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회계계정 XXX	우체국예탁금 XXX
	자금계리	(없)	음)

1. 교부의 경우이며 반환은 회계처리가 반대로 발생
2. 회계계정은 계정수급이며 우체국예탁금은 계좌수급임

바) 선사용자금 보전불입 및 국고금 예탁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우체국예탁금 XXX	회계계정 XXX
	자금계리	(없)	음)

1. 모두 계좌수급이며 우체국이 다른 국고금에서 예탁받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반대로 발생

210) 자금이체의 경우 특정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며 차액결제의 경우 차액결제 실행시 다자간 대체처리됨

3. 법원의 전부·추심명령에 따른 국고금 지급

- 채권자로부터 대한민국을 채무자,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전부명령’이라 함)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추심명령’이라 함) 결정에 따른 전부금 또는 추심금 지급을 요청받는 경우 한국은행은 이를 통합계정의 세출외(계정지출)로 지급
- o 원래 채무를 지급해야 할 관서는 지출금에서 지출하여 통합계정의 세입외(계정수입)로 납부함으로써 정리

가. 지급 절차

- ① 한국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는 경우 원래의 채무를 지급해야 할 관서(이하 ‘채무부담 관서’라 함)로 하여금 임의변제 또는 항고²¹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기획재정부에 사본 송부)
- ② 한국은행은 채권자로부터 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받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통합계정에서 세출외로 지급
 - 채권자가 제시하는 결정문과 한국은행이 송달받은 결정문의 일치 여부(불가피한 경우 생략 가능)
 - 소관부처의 임의변제 여부
 - 청구자가 정당 채권자인지 여부
 - 전부금의 경우 확정 여부²¹²⁾(확정증명원을 제출받음)

21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중 판결을 제외한 결정, 명령 등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있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재심요구는 1심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2심(항소심)판결에 불복한 상고로 나뉨. 항고, 항소, 상고 등 재심요구를 통칭하여 상소라 함

212) 전부명령의 경우 채무자(국가)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확정이 되므로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함. 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한국은행에 추심명령이 송달되는 즉시 확정이 되므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제3채무자에게 제출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지급대상이 됨

③ 한국은행은 전부금 또는 추심금 지급 사실을 채무부담 관서에 통지(기획재정부에 사본 송부)

④ 채무부담 관서 지출관은 전부금 또는 추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여 통합계정에 세입외로 납입

— dBrain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체 납입하거나 국고금납부서에 의해 한국은행 창구 납부(창구 납부는 dBrain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보충설명10>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절차(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위절차의 제한이나 번잡 등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 또는 추심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은 집행법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근거로 결정하므로 국고금에 있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국가(채무자)와 한국은행(제3채무자, 채권자의 채무자인 국가의 채무자)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촉발됨

한국은행은 동 명령이 확정(전부명령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심명령은 결정문이 한국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확정됨)되면 이를 국가예금(국고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한국은행이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국고계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예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국가에 통지함으로써 업무가 종결될 것임. 그러나 한국은행이 국고계리를 하고 있어 동 명령에 의해 지급한 국고금에 대한 국고계리를 하여야 하므로 국고금 총괄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해 통합계정(통합계정 설치전에는 일반회계)의 세출외지급으로 처리한 다음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관서의 지출관으로 하여금 예산에서 지출하여 통합계정의 세입외수입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가 변동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금전채권)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와 제3채무자간에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간 모든 권리관계는 소멸함. 따라서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등)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없음

추심명령 :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을 채권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간 권리관계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함). 따라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간 권리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에 추심을 신고한 이후에 소멸하므로 추심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종결됨. 따라서 집행법원 신고이전에 다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과 경합(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추심금을 배분하여야 함

나. 계 리

1) 전부금(추심금) 지급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통합계정	XXX	국고금예탁	XXX
		국고금예탁	XXX		
	자금계리	정부당좌예금	XXX	현금 ¹⁾	XXX
				원화본지점－ 금융결제국 ²⁾	XXX
원화본지점－ 국고증권실 ²⁾		XXX	당좌예금 ²⁾	XXX	

1. 현금지급인 경우 2. 계좌입금인 경우

2) 소관부처의 정리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국고증권실	국고계리	회계계정 ¹⁾ XXX	국고금예탁 XXX
		국고금예탁 XXX	통합계정 XXX
	자금계리 ²⁾	현 금 XXX	정부당좌예금 XXX

1. 국고금 대체입금인 경우 2. 현금납부인 경우

V . 계산증명 및 대차대조표

- 1. 계산증명**
- 2. 국고금 대차대조표**

1. 계산증명

- 계산증명이란 회계관계공무원, 한국은행 등이 일정기간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계수로 집계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산서의 내용을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등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에 의거 실시²¹³⁾
-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은 각각 계산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으로 제출²¹⁴⁾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월계대사표를 매개로 계산증명의 상호 일치여부를 검증²¹⁵⁾

가.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 한국은행은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국고팀), 유가증권수불에 관한 계산증명(증권팀), 한국은행의 계산증명(예산회계팀) 등 세 종류의 계산증명을 실시
- 국고금출납에 관하여는 매월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증거서류 : 수입, 지출, 국고예금, 예탁금에 대한 월계대사표²¹⁶⁾

213)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계산증명 대상기관은 수입징수관, 세무서장, 환급담당공무원, 지출관, 각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 수없이 많으나 여기서는 수입징수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계산증명에 대해서만 기술함

214) 일반적으로 감사원 홈페이지의 계산증명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일로 제출함

215)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계산서와 한국은행이 발급한 월계대사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나 한국은행의 경우 월계대사표의 합이 출납계산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월계대사 제도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경리결과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임을 유추할 수 있음

216) 「계산증명규칙」은 이외에도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서, 조서, 명령서 등을 증거서류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재 국채 발행 및 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동 기금의 계산증명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계산서의 붙임서류 : 국채발행상환자금수급명세서(한국은행 증권팀 작성),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에 관한 공문서 및 법원의 명령(전부금 및 추심금)에 따른 국고금 지급 관련 공문서²¹⁷⁾
 - 최종월분계산서에는 수입금수납액명세서, 지출금지급액명세서, 기금출납액명세서 추가 첨부
- 한국은행은 매월의 출납계산서를 파일로 작성²¹⁸⁾하여 감사원의 계산증명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전송(익월 10일경)한 후 붙임서류를 포함한 서면 보고서를 전자문서 송달방식에 따라 추가 보고
- 증거서류인 월계대사표는 매 익월 10일, 20일, 말일 및 익월 10일경(확정분) 등 총 4회를 파일로 작성하여 감사원의 계산증명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전송(서면보고는 생략)

<표 V-1>

한국은행 국고금 출납계산서의 작성기준

회계계정	차 변		대 변	
	세 출	세 출 외	세 입	세 입 외
통합계정	지출관 계좌 수급	계정 차변 수급	수입징수관 계좌 수급	계정 대변 수급
특별회계	지출관 계좌 수급	회계 차변 수급	수입징수관 계좌 수급	회계 대변 수급
기 금	계정 차변 수급	지출관 계좌 수급 + 계정 차변 수급	계정 대변 수급	수입징수관 계좌 수급 + 계정 대변 수급
특별계정	연도이월 계산외 급	계정(계좌) 차변 수급	연도이월 계산외 납	계정(계좌) 대변 수급

217) 「계산증명규칙」상 첨부서류는 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로 정하고 있음(재정차관원리금송금의 경우 2003.1월 그동안 명목상 한국은행에 설치된 재정차관원리금계정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에 환전 및 송금의뢰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관서에서 직접 외국환은행에 환전 및 송금을 의뢰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취급내용이 없음)

218) 본부는 전 통할점의 월계대사 마감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감사원 앞 확정분 계산증명 과일을 작성함

나.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 수입징수관은 매 3월마다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계산증명을 실시
 - 증거서류 : 징수결의서, 계약서 등 징수결정에 관련된 서류
 - 계산서의 붙임서류 : 월계대사표 및 각종 명세서
 -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공고안, 입찰서 등

다. 지출관의 계산증명

- 지출관은 매월 지출계산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계산증명을 실시
 - 증거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청구서 등
 - 계산서의 붙임서류 : 월계대사표 및 각종 명세서
 -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공고안, 입찰서, 예정가격기초조서 등

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월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지출관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와 첨부서류를 준용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산증명을 실시

2. 국고금 대차대조표

-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란 특정시점 회계주체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회계를 현금주의 회계제도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두 종류²¹⁹⁾로 운영중임에 따라 재무상태표도 각각 작성
 - 현금주의 회계제도하에서의 재무상태표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고금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각 회계계정의 수급액과 잔액을 표시하며 매일의 수급액을 나타내는 표와 회계연도별 누계액을 나타내는 표로 구성²²⁰⁾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하에서의 재무상태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재정상태표를 의미하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²²¹⁾

가. 국고금 대차대조표의 작성

- 국고금대차대조표는 총괄분, 회계계정명세, 누계분 세 종류로 작성

219) '1.국고제도 개관 - 3.국가 회계제도' 참조

220) 국고금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각 회계계정의 현금흐름만 일별 또는 누계로 표시하고 있음

22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부채, 자본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국고금 대차대조표라 부름이 마땅해 보이나 작성시기가 일천하여 이미 법상 용어로 자리잡은 "국고금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총괄분 : 각 회계계정의 수급액을 항목별(통합계정, 특별회계, 기금, 특별계정)로 구분 집계한 것으로 당일분, 누계분 두 종류가 있으며 정부당좌예금의 수급액과 정부계정 상호간 대체금액을 부기²²²⁾²²³⁾
 - 회계계정명세 : 매일의 각 회계계정 수급액과 잔액을 표시
 - 누계분 : 당일까지의 각 회계계정 수급 누계액과 잔액을 표시
- 회계계정명세 및 누계분 작성시 각 회계계정별 수급액을 계좌 거래와 계정거래²²⁴⁾로 구분함으로써 수입·지출 수급액과 그 밖의 수급액을 분리하여 표시

<표 V-2> 국고금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회계계정	차 변		대 변	
	세 출	세 출 외	세 입	세 입 외
통합계정	지출관 계좌 수급	계정 차변 수급	수입징수관 계좌 수급	계정 대변 수급
특별회계	지출관 계좌 수급	회계 차변 수급	수입징수관 계좌 수급	회계 대변 수급
기 금	계정 차변 수급	지출관 계좌 수급 + 계정 차변 수급	계정 대변 수급	수입징수관 계좌 수급 + 계정 대변 수급
특별계정	연도이월 계산외 금	계정(계좌) 차변 수급	연도이월 계산외 납	계정(계좌) 대변 수급

222) 각 회계계정의 수급액(잔액)의 합과 정부당좌예금·정부계정 상호간 대체금액(잔액)의 합이 같아야 함. 편의상 한국은행의 계정과목인 정부당좌예금이라 표기하고 있으나 정부입장에서 한은예치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23) 1999.4월까지의 모든 국고금 수급거래를 정부당좌예금 수급으로 반영하였으나, 경제규모 증가 등으로 정부당좌예금 거래 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1999.5월 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시부터 국고내대체 거래에 대하여는 정부당좌예금 수급에서 제외하였음

224) 국고금 상호예탁, 국고금 운용, 일시차입, 재정증권 발행, 결산상잉여금 처분 등 자금관리 거래 및 법원의 전부·추심명령에 따른 지급 등을 말함

나. 대차대조표와 출납계산서²²⁵⁾의 차이

- 대차대조표와 출납계산서는 거의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차대조표는 매일 단위로 집계 작성하고 출납계산서는 매일 단위로 집계 작성한다는 점에서 차이
 - 대차대조표는 기획재정부에 송부되어 국고금 관리²²⁶⁾에 사용하는 반면 출납계산서는 감사원에 제출되어 정부의 경리결과와 한국은행 계리결과를 상호대조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용도가 서로 상이
- 대차대조표는 한국은행 계리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 국고금의 수납 및 정정은 각 수납기관의 수납일자가 아닌 한국은행이 수납사실을 인식한 날²²⁷⁾ 또는 정정 취급한 날의 수납으로 작성
 - 국고금의 지급 및 정정은 한국은행이 지급한 날 또는 정정 취급한 날의 지급으로 작성
- 출납계산서는 최초 수납일자 또는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 국고금의 수납 및 내부정정은 각 수납기관의 수납일자가 속하는 월분으로 작성²²⁸⁾
 - 국고금의 지급 및 내부정정은 한국은행 지급일자가 속하는 월분으로 작성
 - 국고금 수납 및 지급에 대한 청구정정은 정정 청구 접수일자가 속하는 월분으로 작성

225) 월계대사표는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이므로 출납계산서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함

226) 회계계정별 국고금 수급액 및 잔액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

227) 수납기관으로부터 수납내역(A1파일)을 보고받는 날을 의미함

228) 자금관리 거래 등 계정수급 거래에 대하여도 한국은행 취급일자가 속하는 월분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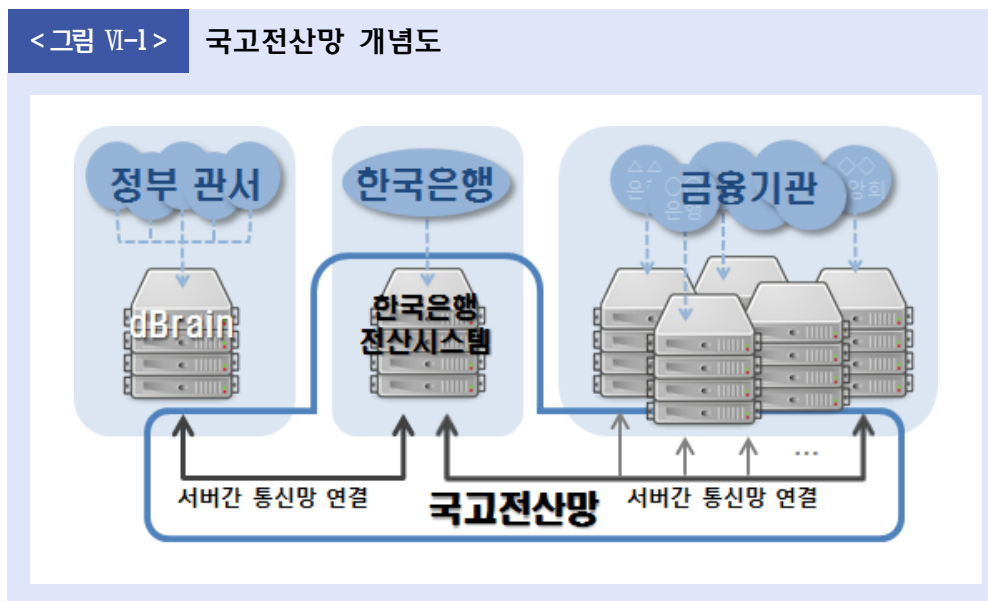
Ⅵ. 국고전산망

1. 개 요
2. 취급업무
3. 국고전산망 참가
4. 국고전산망 운영

1. 개 요

- 국고전산망이란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

<그림 VI-1> 국고전산망 개념도



2. 취급업무

-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는 파일송수신업무로 구분²²⁹⁾

229) 동 내용을 반영한 국고전산망의 하위 시스템을 각각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및 '파일송수신시스템(또는 FTP시스템)'으로 부르기도 함. OLTP 방식의 경우 전문 송수신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FTP 방식은 별도의 처리(이를 보통 '일괄처리'라 함) 과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 지출금, 관세·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파오납금반환금, 월계대사²³⁰⁾, 잔액조회 등을 OLTP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파일송수신시스템** : 국세환급금, 국고수납내역, 월계대사²³¹⁾, 국고금취급점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와 수납자금결제 내역, 회계관계공무원 정보 등 국고금 취급과 관련된 자료를 FTP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
- 한편, 한국은행 각 부서에서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²³²⁾에는 사전에 전산정보국장과의 협의 및 국고증권실장의 동의 필요
- 현재 금융결제국의 여수신·차액결제 파일, 국제국 외화차액 결제 파일, 발권국의 어음교환 파일 등을 FTP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과 송수신

<보충설명II> 국고전산망과 한은금융망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국고업무 취급은 2003년 1월 「국고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국고금 지급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되었음. 당시 정부에서는 재정활동 전반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시스템²³³⁾을 개발하여 운영을 시

230)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회계관계공무원과의 월계대사 업무를 말함

231) 금융기관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한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과의 월계대사 업무를 말함

232) 국고전산망의 물리적 네트워크 및 실시간·파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함.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송수신할 전문의 크기 및 송수신 시간 등이 국고전산망 고유업무를 취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필요시 전산정보국의 자문을 받음)하는데 있으며 다른 부서의 국고전산망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233) 예산·수입·지출·자금·조달·물품·국유재산·채권채무·회계 관리 등 재정관리 업무 전반을 취급하는 중앙관서용 표준 재정정보시스템과 전자자금이체·전자고지전자수납 업무를 취급하는 재정자금출납시스템, 결산·재정정보분석 업무를 취급하는 정부통합결산/통합정보분석시스템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행과 접속되는 시스템은 재정자금출납시스템이었음. 이후 정부는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하여 2007.1월 가동하여 현재에 이름

작하였으며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금융결제원과 연결(x.25 통신규약을 사용) 운영중이던 한은금융망에 정보통신부(현 우정사업본부)를 추가로 연결한 다음 이를 재정정보시스템과 접속(TCP/IP 통신규약을 사용)하여 국고금 지급업무를 건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시작(이를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이라 불렀으며 한은망을 사용함에 따라 한은망의 하위 시스템으로 인식하였음)하였는 바, 이 시스템이 현행 국고전산망의 모태가 되었음. 당시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던 결제시스템은 한은망 하나였고, 한은망은 하나의 중계기기로 단말접속방식과 서버접속방식 두 종류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었음. 당시 한은망의 주업무인 금융기관간 자금이체업무는 전부 단말접속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으며 서버접속방식업무는 파일송수신업무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한국은행이 대외기관과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방식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이 최초였음(서버접속방식에 의한 파일송수신업무도 국고금 수납내역, 국세환급금 지급 등 국고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송수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수신, 차액결제, 어음교환 등 여타업무의 송수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않음)

2005년경 한은망 중계기기를 추가·변경하면서 단말접속방식업무를 처리하는 중계기기와 서버접속방식업무를 처리하는 중계기기로 분리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한은망 본연의 서버접속방식업무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자료 송수신 정도에 불과하여 서버접속방식 중계기기의 대부분을 국고전산망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고전산망용 중계기기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음. 이후 물리적인 전산망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규정상으로는 여전히 국고업무는 한은망을 이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산망 운영주체, 참가기관의 범위와 자격요건, 운영시간 등 모든 운영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 따라 2007년 11월 국고전산망을 한은망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2008년 11월 「국고금취급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고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이 전담하게 되었음

3. 국고전산망 참가

-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dBrain),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²³⁴⁾으로 한정²³⁵⁾
 - 기획재정부²³⁶⁾를 제외한 기관이 신규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국고전산망 이용약정 체결이 필요

가. 국고전산망 이용방법

-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방법(한국은행 직접 접속)
- 기존 한국은행 직접 접속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방법(공동이용)
-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기존 한국은행 직접 접속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방법(추가접속)

234) 체신관서(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국고금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말함

235)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며, 단순 이용기관(예탁결제원과 같이 국고업무는 전혀 취급하지 않으면서 국고전산망을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약정 체결이 필요 없음(이용기관의 국고전산망 이용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국고전산망 사용 부서에서 마련하여야 함)

236)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총괄관리기관으로서 출납기관에 국고업무 취급을 지시하는 기관임에 따라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출납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약정서 및 한국은행 내규를 적용할 수 없어 당연 참가기관으로 지정함

나. 국고전산망 약정 조건

- ①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금융기관)하였거나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국고금수납기관으로 지정(금융기관은 제외)한 기관일 것
- ② 한국은행이 정한 국고전산망 접속장비 규격을 충족할 것

<표 VI-1> 국고전산망 접속장비 규격

구 분		규 격
통신 장비	라우터	— 라우터 2대 o Serial 1개, Ethernet 2개 o OSPF 지원 가능
	보안장비	— 국고전산망과 호환이 가능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한 보안장비 2대
	스위치	— L2 이상 지원 2대(또는 4대) o 참가기관의 통신장비 구성에 따름
접속 기기	서버	— TCP/IP용 소켓통신 가능 서버 2대 o 프로덕션용 1대, 테스트용 1대

다. 국고전산망 이용업무의 승인²³⁷⁾

-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범위는 크게 국고금 수납업무와 국고금 지급업무로 분류하며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한국은행에 신청

237)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은 이용약정 체결이외에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한국은행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함

1) 국고금 수납업무

- 국고금 수납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였다가 한국은행 앞 보고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결제하는데 수반하는 일련의 업무로서 파일송수신 방식으로 처리
- 국고금 수납업무는 국고금수납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²³⁸⁾

2) 국고금 지급업무

- 파일송수신 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 및 국고금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전체를 국고금 지급업무로 분류
- 국고금 지급업무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허용
 - o DR센터²³⁹⁾에서 국고업무 취급이 가능할 것
 - o 특별히 지급업무만을 위한 참가를 제외하고는 국고수납업무가 안정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인정될 것
 - o 재정자금이체망²⁴⁰⁾에 가입하였을 것

238) 국고수납대리점계약체결 조건에 전산시스템 구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 국고전산망 가입자격을 사전 심사하여야 함(금융기관이외 수납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정보시스템 구비여부에 대해 한국은행이 심사할 수 없으므로 전문이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를 검증함)

239)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센터를 말하며 백업전산센터 또는 전산백업센터라고도 함

240) 국고예금 전자이체 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dBrain,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전산망을 말하며 금융결제원이 운영함. 지출관·수입징수관 등은 국고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할 계좌가 입금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자체(dBrain 등) DB에 보관하고 있는데 동 확인업무를 재정자금이체망을 이용하여 수행함(국세환급금 입금계좌 상태 확인은 국세환급금 파일송수신 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라. 비용의 부담

- 참가기관의 국고전산망 접속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 및 유지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
 - 한국은행이 국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참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참가기관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부담²⁴¹⁾
 - 그 밖의 참가기관의 경우에는 참가기관이 부담
 - 참가기관 DR센터와 한국은행 주전산센터간 통신회선에 대하여는 참가기관이 부담

마. 약정 해지 또는 승인 철회

- 참가기관이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전산망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하거나 승인을 철회
 -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국고금취급규정」 및 「동 절차」와 동 규정 등에 의한 한국은행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참가기관이 자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하여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참가기관이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 확보를 소홀히하여 국고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참가기관이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령 등에 정함이 없음에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41) 한국은행 주전산센터 및 DR센터와 참가기관 주전산센터와의 통신회선에 한하여 한국은행이 부담하며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동 취급 부분은 참가기관이 부담함(통신회선 사용료를 통신회선 이용 업무량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방식)

4. 국고전산망 운영

가. 운영시간

- 국고전산망 이용업무 중 파일송수신 업무는 송수신 시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실시간전자이체 업무는 한국은행의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운영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되거나 국고전산망 또는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변경 가능

나. 전문처리의 원칙

1) 전문의 송수신 수단

-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전문의 송수신은 국고전산망을 이용
- 참가기관과 추가연계기관간 전문의 송수신 방법은 양 기관이 결정
- 한국은행과 공동이용기관간 전문의 송수신은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과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참가기관간에 수행

2) 전문의 성립 및 효력

- 한국은행, 참가기관, 추가연계기관간 송신한 전문은 상대방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정당하게 도달한 전문의 취소는 불가

- 다만,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견되어 한국은행이 참가기관 또는 추가연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을 취소²⁴²⁾
-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에 송수신한 전문 및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들은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

3) 전문의 암호화

- 한국은행과 dBrain간 송수신 전문의 암호화는 dBrain이 선정한 보안장비(VPN)²⁴³⁾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금융결제원간 송수신 전문의 암호화는 한국은행이 선정한 보안장비(VPN)를 이용하여 암호화

242) 금융기관 및 우정사업본부는 이체 성공으로 처리된 건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입금을 취소하고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반환받은 자금을 당초 지급을 의뢰한 지출관, 수입징수관, 출납공무원 계좌에 지출반납금, 수입금, 예탁금으로 입금함(금융결제원 지로대금은 이중납의 경우 징수기관에 반환을 요구함). 다만, 필요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취소한 자금을 해당 국고금에 직접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243)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원래 전용선(특정회선을 임차하여 독점사용)이 아닌 공중망(회선을 여러 사람이 공동사용)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동 기술이 암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를 보안장비(암호화장비)로 이용하고 있음

<보충설명12> 송수신 전문의 암호화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구축 초기(2003년 1월, 당시에는 한은금융망을 이용)에는 한은망에 하드웨어 보안장비가 장착되어있지 않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였으며(통신규약은 x.25를 사용) 암호화 방식으로는 당시 급속도로 보급되던 공개키 방식(현행 은행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방식과 유사)을 채택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금융결제원간에는 매일 암호화를 위한 공개키를 사전에 교환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었으며, 2004년말 한은망에 하드웨어 방식 암호화장비(VPN)가 장착됨으로써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 암호화가 필요없어짐에 따라 공개키 교환 및 사용은 폐지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고시스템에 공개키 교환 여부 표시가 남아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 다수의 프로그램이 공개키 교환 완료 여부 검증을 통하여 거래의 실행 여부를 결정(매일의 업무가 공개키 교환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하고 있었는데 공개키 교환 여부 항목을 삭제하면 이들 프로그램을 모두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전부 수정하는 대신 중계기기 가동시 자동으로 공개키 교환 완료로 등록하여 두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함에 따른 것이라 함. 따라서 공개키 교환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환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은 공개키 교환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수정해야 해결됨

다.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의 운영

1) 거래개시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을 포함함. 이하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운영 관련부분에서는 동일)간 거래개시는 08:45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요청²⁴⁴⁾
 - 개시거래 요청 전문에는 현행 한국은행 ID 및 Password와 앞으로 사용할 한국은행 ID 및 Password를 포함
 - 금융기관은 개시거래 응답시 현행 금융기관 ID 및 Password와 앞으로 사용할 금융기관 ID 및 Password를 포함
- 한국은행과 dBrain간 거래개시는 09:00 dBrain이 한국은행에 요청하며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의 ID 및 Password를 교환
 - 한국은행(중계기기)은 dBrain으로부터 거래개시 요청을 받으면 이를 주전산기에 전달하여 거래개시 가능 여부를 검증²⁴⁵⁾한 다음 중계기기를 경유하여 dBrain으로 응답

244) 지정시간에 한국은행 중계기기가 자동으로 전문을 생성하여 송신함

245)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당좌예금계정을 사용하므로 주로 금융결제국 총괄계리 '개시' 거래가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임

2) 거래의 실행

가) 전문의 송수신

- 한국은행은 dBrain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한 경우 직접 처리하여야 할 전문은 처리한 후 바로 그 결과를 dBrain에 전송하고, 참가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전문은 자체 처리할 사항을 처리한 후 참가기관에 송신
-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처리의뢰 전문을 수신한 경우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전송하며 한국은행은 최종 처리결과를 dBrain에 전송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앞 처리의뢰한 전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²⁴⁶⁾ 해당 기관에 매 3분 간격으로 재처리 의뢰 전문을 송신

나) 미확인 거래의 처리

- 한국은행은 미확인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예비종료 시점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²⁴⁷⁾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처리
- 서면처리결과가 dBrain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은 국고금실시간이체거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에 송부

246) 이를 '미확인 거래'라 하며, 참가기관은 최초 요청 또는 재처리 요청 중 하나에만 응답을 하여야 함

247) 입금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로대금의 경우에는 실패로 처리함(지로대금은 국고전산망을 통한 납부외에 여러 가지 경로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이 있어 이중납부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일단 실패로 처리함)

다) 전문 오류시 처리기준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에 송수신한 전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체의뢰 내용의 불일치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전 송한 전문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체처리 결과의 불일 치는 한국은행이 수신한 전문내용을 기준으로 처리
 - 다만, 한국은행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가능
- 한국은행과 dBrain간에 송수신한 전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체의뢰 내용의 불일치는 한국은행이 수신한 전문내 용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체처리 결과의 불일치는 한국은 행이 송신한 전문내용을 기준으로 처리
 - 다만, 한국은행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가능

3) 예비종료

- 당일 국고전산망(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거래의 완전종료에 앞서 일일거래의 정합성 대사, 1억원 미만 자금결제 등 일련의 거 래를 위하여 dBrain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이체거래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더 이상의 이체거래가 없 음을 알리는 단계
 - 예비종료는 최초에 한국은행이 dBrain으로 요청하고 dBrain 이 응답함으로써 시작되며 동 응답을 받은 이후 각 금융기관 에 예비종료를 발신²⁴⁸⁾

248) 한국은행은 보통 국고전산망 가동시간(16:00) 경과후 dBrain에 유선으로 미수행 거래 유무(보통 전문을 한국은행에 송신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곳인 큐에 전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나, 지 출기관의 통지에 의해 미수행 거래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음)를 확인한 후 예비종료 전문을 송신 하고 있으나 국고전산망 종료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일방적으로 송신하여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음. 응답이 불가능한 기관이 있는 경우 동 기관을 제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음

4) 거래집계

- 당일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총 거래 건수·금액 및 성공, 실패 건수·금액을 집계²⁴⁹⁾하여 상호대조함으로써 오류발생 여부를 총액 단위로 검증하는 단계
- 거래집계는 한국은행이 각 참가기관에 요청하고 각 참가기관이 응답함으로써 종료되며 거래집계 요청에 응답할 수 없는 기관은 집계결과를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서에 의거 서면으로 통지

5) 일일대사

- 당일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송수신한 거래내역의 성공, 실패를 건별로 상호대조함으로써 오류발생 여부를 최종 검증하는 단계²⁵⁰⁾
- 일일대사는 각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거래집계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응답함과 동시에 거래내역²⁵¹⁾을 파일로 작성하여 송신

249) 한국은행과 dBrain간 거래의 집계시에는 기관별로 집계하고 한국은행이 반송한 거래는 실패에 포함함.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금융결제원간 거래의 집계시에는 이체거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거래집계에 포함함. 다만, 한국은행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요청받아 처리한 거래(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입금 요청을 받게 됨)는 포함하지 않음

250) 일일대사 이후 결제를 유보한 1억원 미만 계좌입금분을 일괄하여 입금함(입금 이후부터 지역본부의 국고마감 가능). 일일대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계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생략할 수도 있음

251) 거래일자, 거래시각, 전문관리번호, 처리기관, 처리결과 등이 포함됨

6) 거래종료

- 당일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 거래가 전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단계
 - 한국은행이 각 참가기관 앞 거래종료를 통지하고 각 참가기관이 이에 응답함으로써 종료²⁵²⁾

라. 파일송수신시스템의 운영

1) 파일의 생성

- 파일은 참가기관이 생성하되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공동 이용하는 기관의 파일은 전산시스템 제공기관이 생성²⁵³⁾

2) 파일의 처리

- 파일이 지정된 송수신 시각까지 송신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최종 송수신 시각(또는 송신대상에서 제외)을 결정
 - 계좌이체의뢰 처리결과 파일을 지정된 송수신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송신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이체의뢰건을 실패로 처리

252) 거래종료 수신결과를 응답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응답없이 종료할 수 있음

253) 추가연계기관은 참가기관이 아니므로 동 기관의 파일은 상위의 참가기관이 생성함

마. 추가연계

- 추가연계기관은 모든 전문 및 파일을 참가기관을 통하여 송수신하며 참가기관 전산시스템에 추가연계되는 점만 다를 뿐 전문 송수신 및 처리 전반에 대해 참가기관에 준하여 처리
 -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실시간 전문²⁵⁴⁾을 수신하는 경우 자체 처리대상 거래를 제외하고는 추가연계기관에 송신한 다음 처리결과를 수신하여 한국은행에 응답
 -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송신할 파일은 추가연계기관 파일을 포함하여 송신하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신한 파일은 자체 처리대상 거래를 제외하고는 추가연계기관에 송신²⁵⁵⁾

254)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 운영거래를 포함함

255) 응답이 필요한 파일은 추가연계기관의 응답을 받아 자체 처리결과에 포함한 다음 한국은행에 응답함

<표 VI-2> 국고전산망 실시간 송수신 전문 현황

전문 번호	요청 구분	업 무 내 용	업무 유형	관련기관 ^{주)}
X0100	최초	거래 개시 요청 및 응답		1,2,3
X0102	최초	예비종료 지시 및 응답		1,2,3
X0103	최초	집계요구 및 응답		1,2,3
X0104	최초	거래종료 지시 및 응답		1,2,3
X0201	최초	지출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1	1,2
X0205	재처리	관세환급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2	
		과오납반환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3	
		석유부과금환급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4	
		예탁금을 계좌입금 대상기관 계좌에 입금	0205	
X0501	최초	지출금의 수입금 대체 지출	0501	1
X0505	재처리	지출금의 예탁금 대체 지출	0502	
		국고금 운용자금의 출납공무원계좌 이체	0503	
		세계잉여금 처분(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 계좌)	0504	
X0601	최초	중앙관서지출관계좌에 자금계획 통보	0601	1
X0605	재처리			
X0701	최초	지출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이체	0701	1
X0705	재처리	지출금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자 지급	0702	
		예탁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이체	0704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자 지급	0705	
		금년도 회계계정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상환	0707	
		지출금을 외국환평형기금에 이체	0708	
		지출금으로 한국은행 국채수수료 지급	0709	
		지출금을 한국은행에 교부	0710	
		예탁금을 한국은행에 교부	0711	
		전년도 회계계정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상환	0712	
X0801	최초	수입금 청구정정	0801	1
X0805	재처리	국세수납정리계정 이체	0802	
		국세수납정리계정 이체 정정	0803	
		국세수납정리계정에서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	0804	
		지방소비세계정으로의 이체분 정정	0805	

주) 1 : 기획재정부(dBrain), 2 : 계좌입금 대상기관, 3 : 금융결제원

전문 번호	요청 구분	업 무 내 용	업무 유형	관련기관 ^{주)}
X0901	최초	지출금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금 정리	0901	1
X0905	재처리	지출금으로 국고채권 상환자금 교부	0902	
		지출금으로 외평채 상환자금 교부	0903	
		지출금으로 재정증권 상환자금 교부	0904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국고채권 상환자금 교부	0908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외평채권 상환자금 교부	0909	
		국고자금 운용수익으로 재정증권이자 지급자금 교부	0910	
		우체국예탁금으로 선사용자금 반환	0911	
		국고금 운용자금 반환 및 운용수익 상호예탁	0912	
		국고자금 상호예탁	0913	
		상호예탁 국고자금 반환	0914	
		재정증권 발행자금 이체	0915	
		금년도 회계계정에서 재정증권 상환자금 교부	0916	
		전년도 회계계정에서 재정증권 상환자금 교부	0917	
X1001	최초	지출금을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이체	1001	1
X1005	재처리	국고금 운용자금을 우체국예탁금계좌에 이체	1002	
		우체국예탁금계좌로 선사용자금 교부	1003	
X1101	최초	지출금 청구정정	1101	1
X1105	재처리	지출반납금 청구정정	1102	
X1201	최초	지출금의 지로대금 이체(지출관의 지로대금 납부)	1201	1,3
X1205	재처리			
X1301	최초	수입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1301	1
X1305	재처리	수입금 월계대사(확인)	1302	
		지출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1303	
		지출금 월계대사(확인)	1304	
		예탁금 월계대사(대사금액 단순 조회)	1305	
		예탁금 월계대사(확인)	1306	
X1401	최초	각 회계계정의 잔액 조회	1401	1
X1405	재처리	각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조회	1402	
		수입징수관 계좌잔액 조회	1403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잔액 조회	1404	
		지출관의 지출누계액 조회	1405	
		전체 계정잔액 파일(CC전문) 송신	1499	
X1501	최초	수입징수관계좌에서 과오납반환처리하여	1501	1
X1505	재처리	지출관 앞 반납		

주) 1 : 기획재정부(dBrain), 2 : 계좌입금 대상기관, 3 : 금융결제원

<표 VI-3> 국고전산망 파일 송수신 전문 현황

1. 한국은행이 송신하는 파일

전문 번호	수신기관	업 무 내 용	송수신 시 간	비 고
TQ00F1	기획재정부	금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17:00	
		금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액 보고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금 지급액 보고표		
		당일 수입금 계좌 잔액 및 누계		
		당일 수입금 정정내역		
		당일 지출금 및 특별계정 계좌 잔액 및 누계		
		금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금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비소속 계정)		
		금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계정)		
		금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비소속 계정)		
		금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금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비소속 계정)		
TQ00F2	기획재정부	전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17:00	
		전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과 비소속 계정)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액 보고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금 지급액 보고표		
		전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전년도 B/S 총괄분(통합계정 소속, 비소속 계정)		
		전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계정)		
		전년도 B/S 회계계정명세(통합계정 소속, 비소속 계정)		
		전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계정)		
		전년도 B/S 누계분(통합계정 소속, 비소속 계정)		
TQ00F3	기획재정부	회계직공무원 계좌정보 변동내역	09:00	
		국고금취급점 변동내역		
		한국은행 당좌예금 기관코드		
TQ00F4	금융기관 ¹⁾	계좌정보 신설, 폐지 내역	09:00	
TQ00F5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과초금 및 우체국자금 거래내역	09:00	

주) 1. 우정사업본부 포함

전문 번호	수신기관	업 무 내 용	송수신 시 간	비 고
TQQ0F6	금융기관 ²⁾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수납내역 중 오류내역 취급점별 자금결제내역	09:00	
TQQ0F8	기획재정부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영수내역	09:00	
TQQ0F9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계좌 현황(신설, 폐지, 현재 계좌수) 국고예금 거래 내역	09:00	
TQQ0FA	금융기관 ²⁾	국고금 정정분 자금결제 내역 조기결제 및 조기회수 내역	16:00	
TQQ0FB	금융기관 ¹⁾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처리결과	09:00	
TQQ0G1	기획재정부	월계대사표(확인내역 포함)	09:00	
TQQ0G2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월계대사 의뢰	09:00	
TQQ0G3	국세청	국세환급금(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포함)) 심사결과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뢰 심사결과	11:00	dBrain경유
TQQ0G4	우정사업본부	국세환급금 지급의뢰(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포함))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뢰	11:00	
TQQ0G5	금융기관	국세환급금 지급의뢰(계좌이체) 국세환급금 계좌확인의뢰	11:00	
TQQ0G6	국세청	국세환급금 지급 결과(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 국세환급금 계좌확인 결과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및 세입편입 결과	14:00	dBrain경유
TQQ0G7	기획재정부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30	
TQQ0G8	국세청	국세청 소관 수입금 청구정정 처리 결과	11:00	dBrain경유
TQQ0G9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이자 수입 내역	09:00	
TQQ0GA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계좌정보	09:00	
TQQ0GB	기획재정부	주세, 농특세의 특별회계 이체내역	09:00	
TQQ0GC	기획재정부	송신시점의 각 회계계정 잔액	요청시	
TQQ0GD	기획재정부	국세환급금 최초 환급의뢰 건수·금액 합계	11:00	
TQQ0GE	국세청	국세수납정리계정과 지방소비세계정간 이체내역	09:00	dBrain경유

주) 1. 우정사업본부 포함

2. 우정사업본부, 국고금납부대행기관 포함

2. 한국은행이 수신하는 파일

전문 번호	송신기관	업 무 내 용	송수신 시각	비 고
TRR0A1	금융기관 ¹⁾	수입금 및 지출반납금 수납내역	08:30	
TRR0A3	금융기관 ²⁾	국고예금 계좌 신설/폐지 내역	08:30	
		국고예금 거래 내역(입출금액, 잔액, 적수/이자 등)		
TR00A4	국세청	국세환급 의뢰(계좌이체, 현금지급(취소 포함))	10:00	dBrain경유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입금가능여부)확인 의뢰		
TRR0A5	우정사업본부	국세환급금 처리 결과(계좌입금, 현금지급취소)	13:00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확인 결과		
		전영업일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및 세입편입 결과		
TRR0A6	금융기관	국세환급금 처리 결과(계좌입금)	13:00	
		국세환급금 채권자계좌 확인 결과		
TR00A7	기획재정부	국고예금 월계대사 확인 결과	16:00	
TRR0A8	금융기관 ³⁾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30	
TR00A9	국세청	국세청 소관 수입금 청구정정 의뢰	10:00	dBrain경유
TR00B1	기획재정부	당일 실시간 거래내용 대사 자료	16:00	
TRR0B2	금융기관 ²⁾	국고취급점 신설/변경/폐지 신고	08:30	

주) 1. 우정사업본부, 국고금납부대행기관 포함

2. 우정사업본부 포함

3.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포함

VII. 국고대리점 관리

- 1. 국고대리점 계약의 체결**
- 2. 국고대리점의 설치(지정)**
- 3. 국고대리점 수납자금의 결제**
- 4.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 5. 국고사고의 처리**
- 6. 국고대리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 7. 국고대리점 업무지도**
- 8. 국고대리점 평가**

1. 국고대리점 계약의 체결

-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이하 '계약기관'이라 함)하거나 계약기관과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하여야 국고수납업무 취급이 가능
- 계약기관이 소속 영업점이외의 금융기관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이하 '추가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해당 금융기관과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하여야 가능
 - o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할 기관이 동일 법률에 의한 중앙회, 회원조합(회원은행, 회원금고 등을 포함하며 이하 '회원조합 등'이라 함)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별도로 국고금수납점계약 체결 승인²⁵⁶⁾을 받아야 가능

가. 국고수납대리점계약

1) 계약체결 대상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2) 계약체결 조건

- ① 국고 사무를 취급하기에 충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보유하고 취득한 정보를 대내외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 ② 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것

256)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가 농협회원조합이 아닌 ○○신협, □□은행과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협, □□은행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③ 은행의 경우 본점이 「은행업감독규정」의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것
- ④ 은행이외 금융기관의 경우 위 ③의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를 대행할 것
- ⑤ 은행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고금 수납자금(회원조합 등의 수납자금을 포함한다)의 한국은행 지급을 위 ③의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회원조합 등이 연대하여 보증할 것
- 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 본점이 국고금 수납자금의 한국은행 지급을 보증할 것
- ⑦ 예상 국고업무 취급량이 한국은행의 국고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나.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

1) 계약체결 대상

—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2) 계약체결 조건

- ① 회원조합 등이 국고 사무를 취급하기에 충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보유하고 취득한 정보를 대내외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 ② 회원조합 등이 수납한 국고금을 계약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에 포함하여 결제할 것
- ③ 회원조합 등이 수납한 국고금의 한국은행 지급을 계약기관이 보증할 것

다. 계약의 해지

- ① 금융기관이 「국고금취급규정」 및 동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영업양도, 합병, 해산, 파산, 폐업 등으로 국고금 수납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 전체의 국고대리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국고대리점의 설치(지정)

가. 지정 절차

- 계약기관이 소속 영업점을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설치·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²⁵⁷⁾
- 추가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회원조합 등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변경·지정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²⁵⁸⁾
- 다만,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전산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신고 가능

257) 실무적으로는 국고수납대리점계약시 국고수납대리점 명단을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토록 한 다음 설치·변경·폐지 신고수리시 별지 명단이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처리함

258) 실무적으로는 추가계약시 국고금수납점 명단을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토록 한 다음 지정·변경·취소 신고수리시 별지 명단이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처리함

나. 지정의 제한

-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수납대리점 폐지 또는 국고금수납점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등에 대하여 폐지일부터 1년간 국고대리점 재설치를 제한
 -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 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해당 국고대리점의 사고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국고대리점 재설치 허용 가능
-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의 제재조치 중인 경우에는 국고대리점 신설 자체를 제한

다. 폐지 또는 지정의 직권취소

- ①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고금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고대리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국고대리점 수납자금의 결제

- 국고금 수납자금의 결제란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담당 통할점이 각 통할점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기관 당좌예금에서 출금(차기)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결제, 조기결제, 조기회수로 구분
 - **정상결제** :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수납후 2영업일째에 정상적으로 결제²⁵⁹⁾하는 것을 의미
 - **조기결제** : 제재이외의 사유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정상결제일보다 1영업일 앞당겨 결제하는 것을 의미
 - **조기회수** : 국고금 사고 등에 따른 국고대리점 제재의 일환으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을 정상결제일보다 1영업일 앞당겨 결제하는 것을 의미

<참고Ⅷ-1> 조기결제와 조기회수

- 조기결제와 조기회수는 모두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 통할점이 정상 결제기일(수납후 2영업일) 보다 1영업일 먼저(수납후 1영업일) 결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 조기결제는 결제지연적수 만큼의 과다 자금수혜 부분을 상쇄하는 조치로서 국고대리점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제재에 미해당
 - 조기회수는 과다 자금수혜 부분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매일의 수납 자금(지출반납금 포함) 전액을 1영업일 먼저 결제하는 조치로서 국고대리점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제재의 일종

259) 금융기관은 매일의 국고금 수납내역을 다음 영업일 08:30까지 한국은행으로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국고금 수납내역상 수납금액에 당일 중 국고대리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한 정정금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음 영업일 금융기관 당좌예금에서 차기하여 결제함('II.국고금의 수납 - 6.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처리 및 8.수입금 및 지출반납금의 정정' 참조)

가. 조기결제

1) 조기결제 대상

- 국고금 수납액이 정해진 결제기일을 경과하여 결제²⁶⁰⁾된 때(다만, 건당 결제지연된 국고금의 적수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이 조기결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거액 또는 여러 건의 국고금 수납내역이 정상 보고일보다 지연 전송되어 익월 조기결제 실시시 번잡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로 실시²⁶¹⁾

2) 실시방법

- 지연적수가 2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는 매월 초순 통할점이 조기결제 대상금액²⁶²⁾과 조기결제 실시일을 해당 국고대리점과 결제모점에 통보한 후 지정된 일자에 조기결제를 실시²⁶³⁾
- 국고증권실의 결정에 의한 경우²⁶⁴⁾에는 사유 발생시마다 국고증권실에서 통할점 및 국고업무 주관부서 앞으로 조기결제 일자, 금액 및 사유를 통보한 후 조기결제 실시일자의 수납내역 보고분을 당일 결제

260)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한 국고금 수납내역에 오류가 있어 반송되거나 입력누락, 과소입력 등에 따른 정정으로 발생함

261) 거액의 지연금액을 익월에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수납금액 부족 발생으로 조기결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건 지연의 경우 지연내역 과다 등으로 행정처리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음

262) 조기결제 대상금액 = 결제지연적수 = 결제지연금액 × 지연일수

263) 지정일자의 해당 국고대리점 수납내역 보고금액이 조기결제 대상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국고대리점이 소속된 결제모점 관할 국고대리점 전체 수납내역 보고금액에서 결제하고, 동 금액도 조기결제 대상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이월하여 조기결제함(대상금액 도달시까지 반복)

264) 매월 실시하는 조기결제와 다른 점은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수납내역에 포함된 건 등에 대해 당일 결제를 한다는 점임

- 국고증권실로부터 조기결제 통보를 받은 통할점은 관내 결제모점에 조기결제 실시내용을 통보(특정 대리점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에도 통보하여야 함)

나. 조기회수

1) 조기회수 대상

— 국고금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서 해당 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6개월 범위내에서 조기회수하는 제재를 부과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데 따른 제재

- 통할점이 해당 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1개월간 조기회수하는 제재를 부과한 경우

2) 실시방법

— 매일 금융기관이 전송(보고)한 국고금 수납내역 중 조기회수 대상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하여 전송 당일 결제

- 제재대상 대리점이 국고금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정정금액을 조기회수 대상금액에 가감

4.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 통할점 및 국고대리점의 B/S상 국고대리점계정 잔액과 미결제 국고금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수납한 국고금이 정상적으로 한국은행에 보고되고 결제되고 있는지, 국고대리점계정을 이용한 횡령·유용 등의 사고는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각 국고대리점은 매일 당해 점포의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를 실시²⁶⁵⁾
 - 통할점은 매분기 1회 임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을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한편, 통할점의 금융기관별 국고대리점계정 잔액²⁶⁶⁾의 일치여부도 확인

265) 국고대리점의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 전일 수납액 + 당일 수납액 - 당일 조기결제(회수)액 ± 당일 정정신청액

266) 통할점의 금융기관별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 당일 국고금 수납내역(A1과일) 수납액 - 당일 조기결제(회수)액 ± 당일 정정신청액

5. 국고사고의 처리

- 국고대리점 직원 등이 수납한 국고금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횡령, 유용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해당 금융기관 및 국고대리점에 대한 제재로 구성

가. 사고보고

- 국고대리점은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발생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통할점 및 소속 금융기관 국고업무 주관부서에 국고금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할점은 이를 접수하는 즉시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앞 보고

나. 사고의 처리

1) 사고 수납내역의 처리

- 횡령, 유용 국고금 중 발견시점까지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입력누락으로 정정입력하고 수납내역이 지연입력된 건에 대하여는 수납일자 정정으로 입력²⁶⁷⁾

2) 집중지연이자 부과

- 금융기관은 횡령, 유용에 따라 집중이 지연된 국고금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연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정부에 배상

267) 관할 통할점에서 사고 보고서에 의거 정정입력함(필요시 입증자료를 국고대리점에 추가 요구)

- 집중지연이자는 통할점이 계산하여 해당 국고대리점의 확인 (이의 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하며, 확정금액을 국고증권실에 보고
- 국고증권실은 기획재정부에 집중지연이자 부과사실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은 집중지연이자를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납부

3) 추가제재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은 금융기관 앞 주의환기,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6개월 범위내), 국고대리점 폐지²⁶⁸⁾, 1년 범위내에서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 및 금융기관장·감사 앞 제재사실 직접 통보 등의 추가제재를 실시²⁶⁹⁾
-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와 국고대리점 폐지 중 하나와 금융기관 앞 주의환기는 국고 사고시 기본적으로 실행
- 1년 범위내에서의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 및 금융기관장·감사 앞 제재사실 직접 통보는 금융기관(국고대리점이 포함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실행

268) 1차사고 발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폐지함. 다만, 사고가 1회 발견된 경우라도 계속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지 조치를 할 수 있음

269) 국고대리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의 '국고대리점 제재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

6. 국고대리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 또는 금융기관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환기, 국고금 수납액의 조기회수, 집중지연이자 부과, 국고대리점 폐지(지정취소) 또는 설치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
 - ①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국고금 수납자금의 결제를 지연한 경우
 - ④ 국고금 수납을 거절하거나 기피하여 납세자 등의 민원을 초래한 경우
- 한국은행은 제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고대리점 등에 사전 통지(유선통지 가능)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

<표Ⅶ-1>

국고대리점 및 금융기관 제재기준

제재 사유		제재대상	제재조치 내용	담 당
1. 국고금의 횡령·유용 등 사고 발생		국고대리점	- 집중지연이자 부과 -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주)} (사고금액, 유형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 - 국고대리점 폐지^{주)} (1차사고 발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사고가 1회 발견된 경우라도 계속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지)	통할점 본 부 (통할점) 본 부
		금융기관	- 금융기관장(국고업무 주관부서장 및 검사담당 부서장) 앞 서면 주의환기 -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 및 금융기관장·감사 앞 제재 사실 직접 통보	본 부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 초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국고대리점	- 국고대리점장 앞 서면 주의환기 (필요시 해당 금융기관의 검사담당부서장 및 국고업무주관부서장 앞 사본 통보)	통할점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고대리점	-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 (통할점의 제재결정에 따라 1개월간 실시)	통할점
		금융기관	- 금융기관장(국고업무주관부서장, 검사 담당 부서장) 앞 서면 주의환기 - 필요시 6개월 이상 1년 범위 이내에 서 국고대리점 신설 제한	본 부
3. 국고금 수납 자금 결제 지연	연간 1~3회	금융기관	- 금융기관장(국고업무주관부서장, 검사 담당부서장 및 결제모점장 등) 앞 서면 주의환기 또는 시정확인서 제출 요구	본 부
	연간 4회 이상		- 금융기관장 및 감사 앞 직접 서면 주의 촉구	
4. 국고금 수납을 거절하거나 기피하여 납부자 등의 민원 초래		국고대리점 금융기관	- 국고대리점장 앞 서면 주의환기 (계속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고대리점 폐지)	통할점 (본 부)

주: 본부에서 사고내용에 따라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 또는 국고대리점 폐지를 결정하며 국고금 수납액 조기회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할점에서 조기회수 실시

7. 국고대리점 업무지도

가. 한국은행의 업무지도

-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는 업무수행내용의 점검을 통한 업무지도와 업무수행내용의 연수를 통한 업무지도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통할점에서 수행

1) 업무수행내용 점검을 통한 업무지도 대상

- 통할점은 국고대리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행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의 업무지도 실시 가능
 - ①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잘못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 ③ 기타 통할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업무지도 방법

- 통할점은 국고업무지도 실시서 및 업무지도자료 요청서에 의해 방문 또는 서면자료 제출 등의 방법에 따라 업무지도를 실시
 - o 업무지도중 국고금의 사고나 중대한 잘못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통할점장에게 보고하고 통할점장은 국고증권실에 보고하며, 기타 위규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고대리점장의 확인서를 징구²⁷⁰⁾
 - o 업무지도 실시후에는 국고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고업무지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대리점 등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

270)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참고Ⅶ-2> 국고업무지도 대상(예시)

- 현재 국고대리점은 단순히 국고금 수납업무만을 취급(수납내역의 전산 입력)하므로 한국은행이 업무수행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의 업무지도는 지양(특히 서면제출 방식의 업무지도는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지도 실시 가능
 - ①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기관 자체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 미실시 등으로 사고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 ②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잘못이 자주 발생하여 시정 및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²⁷¹⁾
 - ③ 한국은행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²⁷²⁾

나. 금융기관의 업무지도

-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계획에 따라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보고
- 이와는 별도로 소속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 보고

271) 업무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원인이 잦은 업무 오류에 기인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 항목에 따라 업무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반복적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동 조치로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국고대리점의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음

272)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업무지도를 실시함

8. 국고대리점 평가

— 통할점은 국고대리점이 국고금 수납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취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국고대리점별로 업무수행 상황 및 한국은행의 각종 조치상황을 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국고대리점을 종합 평가²⁷³⁾

○ 동 평가는 매년 9월말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업무수행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국고대리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또는 업무지도를 실시

— 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 기록²⁷⁴⁾ 내용

- ① 일상적인 업무오류 및 조치(한국은행 정정내용을 반영)
- ② 국고금 집중지연(전산시스템 오류에 의한 지연은 제외)
- ③ 업무지도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평가항목에는 제외)
- ④ 국고금 사고 및 제재조치
- ⑤ 기타 업무지도사항

273) 한국은행 국고증권실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체 업무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통할점의 평가결과를 금융기관별로 종합하여 해당 금융기관 국고업무 주관부서에 제공하고 있음

274) 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는 국고시스템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①의 경우 국고금 정정처리시, ②의 경우 국고금 집중지연 처리시 자동으로 등록되나 ③,④,⑤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시 별도로 입력함

<참고Ⅶ-3>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1. 평가대상 대리점 : 평가기준일 현재 영업 중인 국고대리점
2. 평가대상 기간 : 전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통합점 정리일자 기준)
3. 평가대상 대리점의 구분 : 국고수납대리점,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종합평점 = 업무량 평가점수 + (60점 - 업무실적 평가점수) ± 특별가감점

5.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구분	세 부 평 가 항 목		점수
업무량 평가 (40점)	- 업무량 상위 30% 1등급		40
	- 업무량 차상위 40% 2등급		35
	- 업무량 하위 30% 3등급		30
	*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은 각각 별도 산정		
업무실적 평가 (60점)	국고 사고	- 횡령·유용 적수 1억원 이상	20
		- 횡령·유용 적수 1억원 미만	15
	업무오류 (통합점 정정)	- 입력누락(수납일자 정정, 합산입력 포함)	5
		- 금액정정(과소입력)	4
		- 금액정정(과다입력), 이중입력, 세입금취소	3
		- 전송지연(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지연은 제외)	2
	- 그 밖의 정정 및 오류		2
특별가점	통합점장이 가점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해당 대리점이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특별감점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통합점장이 추가 감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6. 평가 유의사항

- 평가대상 기간 중 신설 대리점에 대한 업무량 평가에서 산정된 등급이 2등급 이하인 경우 2등급으로 적용
- 업무실적평가는 감점 항목으로서 감점합계가 60점을 넘는 경우 60점으로 함
- 업무오류는 건별로 해당 점수를 감점하되, 하나의 업무처리 건이 둘 이상의 감점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점 항목만 적용
- 같은 날짜(대리점 취급일자 기준)에 오류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건의 오류로 계산(제일 높은 점수만 적용)
- 특별가점을 하였을 경우에도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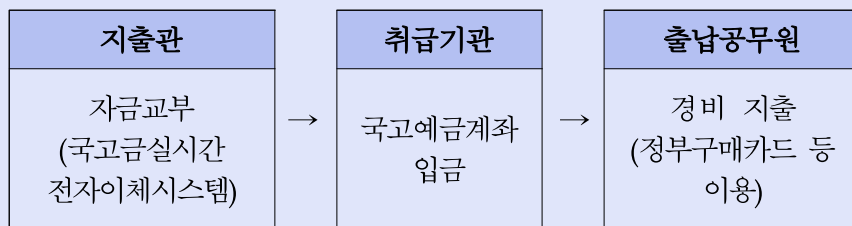
[부록1] 국고예금제도

1. 개 요
2. 취급기관
3. 금융기관의 국고예금 취급
4. 한국은행의 국고예금 관리

1. 개 요

- 국고예금이란 금융기관 및 우체국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탁받은 예금을 의미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²⁷⁵⁾를 교부 받아 지출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국고예금 계좌를 개설
 -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수납한 선사용자금²⁷⁶⁾의 출납을 위하여 우체국에 국고예금 계좌를 개설
- 국고예금의 계좌 개설 및 입출금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따르되²⁷⁷⁾ 국고금 계리의 엄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출납공무원간 거래에 대해 한국은행이 계산증명을 대행

<그림[부록]-1> 국고예금 입·출금 과정(관서운영경비)



275) 관서운영경비란 소액(500만원 이하)의 관서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비정규직보수 등을 말하며 지출관의 지출이 완료된 국고금임

276) 선사용자금이란 수입금을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출하여 국고에 대체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금을 말함(현재 우체국에만 허용)

277) 국고예금은 수입·지급 계좌가 분리된 한국은행 국고금출납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예금거래 방식(계좌수입 범위내에서 지급)을 따름. 국고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보유의무가 부과되거나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금보험 후보대상에서는 제외됨(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

2. 취급기관

— 「은행법」상 은행²⁷⁸⁾ 및 체신관서(우체국)

3. 금융기관의 국고예금 취급

가. 계좌의 개설, 변경 및 폐지

1) 계좌의 개설

—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함)으로부터 국고예금 계좌(통장)의 개설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이하 동일)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일반적인 예금거래 절차를 준용하여 개설

- 국고예금 계좌개설 신청서(각 금융기관 서식)
- 예금주 : 관서명(출납공무원의 성명등록 불필요)
- 실명번호 : 고유번호(「부가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실명번호 확인 : 고유번호증 사본
- 인감 : 출납공무원 직인(필요한 경우 사인 추가 날인)
- 비밀번호 : 출납공무원 등이 임의로 부여
- 계좌번호 : 16자리 이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278) 산업은행은 포함되나 수출입은행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제외됨

- 통장 필수 기록사항 : 성명(관서명), 계좌번호, 계좌관리점포(점포명, 지로코드, 전화번호), 신규개설일, 통장발행일
- 통장 전면 또는 인자란 등 적절한 위치에 '국고예금' 통장임과 한국은행 앞 계좌신설 통보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문구²⁷⁹⁾ 인쇄

<참고[부록]-1> 국고예금 계좌 개설관련 출납공무원 유의사항

- 국고예금 계좌는 원칙적으로 출납공무원별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회계·계정 및 분야(기능)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계좌 개설 가능(별개의 출납공무원인 것으로 봄)
 - 거래점 변경·계좌번호 변경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수계좌 개설 가능
 - 회계·계정·분야가 같더라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 특정 자금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리 개설이 가능²⁸⁰⁾
- 출납공무원은 계좌개설 사실을 국고예금계좌 신설 통보서에 의해 담당 한국은행 통할점에 통보
- 국고예금 계좌개설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국고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즉시 국고예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후 계좌를 해지하고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를 담당 한국은행 통할점에 송부

279) 예시: "이 통장은 국고예금계좌이며, 각 관서는 통장개설내용(신규, 변경, 폐지)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80)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계좌의 정보 변경

-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 계좌정보의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취급기관의 일반적인 예금거래절차에 따라 처리
 - 거래인감의 변경은 출납공무원 등 교체 또는 인장 마모의 경우에만 변경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관서의 공문(신·구 직인 또는 사인(私印), 신·구 비밀번호 변경임을 명시) 수령 후 처리
 - 출납공무원 등 교체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 또는 비밀번호 망실의 경우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의거 비밀번호 교체
 - 관서명, 주소 등의 변경시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이 담당 통할점에도 통보하도록 안내
- 다만, 국고예금 계좌의 계좌번호 변경 및 점포간 이관은 불가
 - 계좌번호 변경 사유 또는 점포간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지 후 신설

3) 계좌의 폐지 등

-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계좌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계좌 잔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처리하되 전산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부리적수가 있는 경우 : 이자 계산 기일까지 적수 및 이자를 한국은행에 보고
 - 부리적수가 없는 경우 : 한국은행에 이후 보고 생략
- 국고예금 계좌는 거래가 장기간 발생하지 않더라도 휴면계좌로 미분류²⁸¹⁾

281) 해당 관서로 하여금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토록 요청하여야 함

나. 계좌의 입·출금

1) 입 금

- 국고예금 계좌에 대한 입금은 통장에 의한 창구입금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한 계좌입금,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타행환입금,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을 통한 입금 등으로 가능
 - 지출관이 수행하는 출납공무원 국고예금 계좌로의 이체(자금교부)는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을 이용
- 입금 가능시간은 원칙적으로 각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내
 - 한국은행 앞 입출금 거래내역 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 선택 가능
- 입금전표 사용여부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금융기관 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타점권(당좌수표, 어음 등)에 의한 입금은 제한

2) 출 금(계좌이체 포함)

- 국고예금 중 관서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²⁸²⁾를 사용하여 지출하며 불가피한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출납공무원(국고예금) 계좌에서 자동 결제

28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카드사와 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한 후 카드사 앞으로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동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함. 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dBrain을 이용하여 카드사에 통지하고 동 한도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CD/ATM 등 자동화기기나 개별적인 전자금융(PC,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출금은 관서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금지²⁸³⁾
 - 전자금융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재정자금이체망) 및 부처단위(국방부, 육군 등)로 접속하는 펌뱅킹 등에 대해 허용
- 기타 출금은 각 금융기관의 출금표와 통장을 사용하는 창구 거래 등 금융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
- 출금가능 시간은 원칙적으로 각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내
 - 한국은행 앞 입출금 거래내역 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 선택 가능

3) 수수료²⁸⁴⁾

- 국고예금 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 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등 출납공무원의 예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 국고예금 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따라 부과
 - 다만, 출납공무원이 거래점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283) 자동화기기 사용금지에 대한 특별한 법령은 없으며 국고예금제도 도입당시 한국은행이 정부의 내부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금지토록 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 요청시 변경될 수 있음

284) 수수료 부과 및 면제에 대하여는 국고예금제도 도입당시 각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의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결정된 것임. 따라서 각 영업점에서는 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은행 단위(또는 우정사업본부)로 수수료 변경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수 있음

다. 이자 지급

1) 이자율

- 금융기관은 국고예금에 대하여 보통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이자율 변경시 사전에 한국은행 앞 통지 필요)

2) 이자의 계산기간

- 국고예금에 대한 이자 계산기간은 11.1. ~ 4.30. 및 5.1. ~ 10.31.(연 2회)
 - o 이자 계산기간의 초일 또는 말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에 해당하더라도 이자 계산기간은 불변

3) 이자의 지급시기

- 국고예금의 이자는 매년 5.15. 및 11.15.(해당 일이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 o 이자 계산기간 말일 이전에 해지된 계좌도 이자는 동일하게 지급

4) 이자의 지급방법

- 국고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가(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 또는 계정의 중앙관서 수입징수관 계좌²⁸⁵⁾의 수입금으로 납부

285) 회계 또는 계정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기획재정부(국고과)에서 납부할 수입징수관 계좌를 지정함

- 실무적으로는 한국은행(국고증권실)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이자지급일에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 또는 우체국예탁금계좌에서 이자금액을 인출(차기)한 다음 이를 수입금으로 납부(수납)
- 이자 지급후 이자계산에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입금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요청

라. 계좌정보(신설·폐지 등) 및 거래내역의 한국은행 앞 전송

- 국고예금 취급기관은 매일의 국고예금 계좌 신설, 폐지 및 입출금 거래내역²⁸⁶⁾을 익영업일 08:30까지 한국은행에 전송

마. 정 정

- 출납공무원 등의 착오에 의한 정정 요청은 정당 계좌와 착오 계좌간 입출금 처리(통상 입출금 거래 절차를 취함)
- 금융기관의 착오에 의한 정정은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착오 정정 방법에 따라 처리(취소후 재입력하며 필요시 기산일 거래 등의 조치를 취함)

바. 반 납

- 국고예금 계좌번호가 기재된 국고금반납고지서²⁸⁷⁾와 함께 수납한 국고예금 지출반납금은 국고예금에 입금 처리
- 무통장 입금, 타행환 입금 등 일반예금 처리절차에 따라 입금

286) 당일 신설·폐지가 없더라도 계좌현황정보는 매일 전송하며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계좌별 부리 적수, 이자율 및 이자금액을 포함함

287) 지출금반납고지서와 동일한 양식이므로 주의를 요함(지출관 계좌번호가 기재된 경우 지출반납금이므로 국고로 수납하고, 출납공무원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국고예금계좌에 입금)

4. 한국은행의 국고예금 관리

가. 국고예금 계좌정보 등록 및 변경

- 한국은행은 매일 출납공무원 계좌정보 미등록 계좌를 조회하여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신설 통보서를 송부받아 동 계좌정보를 추가 등록
 - 소속 회계·계정, 주소, 출납공무원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등을 수록
-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변경 통보서를 송부받는 경우에는 관서명, 주소 등 등록된 계좌정보를 수정
 - 다만, 계좌번호 및 계좌개설점 변경은 불가(필요시 계좌 폐지 및 신설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안내)

나. 국고예금계좌 폐지

1) 정상 개설된 국고예금계좌의 폐지

- 출납공무원이 금융기관에 국고예금계좌의 폐지를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폐지후 동 내역을 한국은행에 전송해오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폐지

2) 착오 개설된 국고예금계좌의 폐지

- 국고예금계좌 개설대상이 아닌 회계관계공무원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좌정보를 등록²⁸⁸⁾
 - 금융기관이 해당 국고예금계좌 폐지후 동 내역을 한국은행에 전송해오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폐지
- 착오 개설된 계좌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예탁금 계정²⁸⁹⁾내 동 계좌의 수급내역을 비예탁국고예금정리 계정의 수급내역으로 이관²⁹⁰⁾
 - 전전월분 이전 월분의 월계대사는 마감되고 전월분·금월분 월계대사가 미마감된 경우에만 이관 가능
 - 전년도분 국고예금 이수관은 1월에만 가능²⁹¹⁾

다. 이자지급의 대행

- '3.금융기관의 국고예금 취급 - 다.이자 지급' 참조

288) 국고예금 계좌정보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하되 소속 회계·계정은 일반회계(110), 소속 소관은 기획재정부로 처리함

289) 한국은행은 국고예금 입출금 거래를 한국은행 수급분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예탁금 계정 수급금으로 정리함(국고예금분으로 표시)

290) 착오 개설된 국고예금계좌 수급내역의 이관은 실제 자금의 이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수급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의 이관을 의미함. 따라서 해당 국고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은 거래 금융기관에서 정당 계좌(보통예금계좌 등)로 이체한 후(잔액이 '0') 처리하여야 함

291) 전전월분 월계대사 마감후 이관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는 감사원 앞 계산증명이 완료되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음(수정시 감사원 앞 계산증명을 정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착오 개설한 계좌이므로 한국은행이 계산증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2월 이후에는 전년도 거래가 모두 전전월분 이전에 해당하여 이관이 불가능함

라. 계산증명의 대행

- 국고예금 계좌에 대한 월계대사는 국고금 계리의 엄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대신한 한국은행 통할점과 출납공무원간 실시
 - 한국은행이 매일 전월분 월계대사 자료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파일송수신 방식(FTP)으로 전송하면 출납공무원은 dBrain에 접속하여 월계대사표 확인²⁹²⁾
 - dBrain은 매일 월계대사표 확인 결과를 한국은행으로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동 결과를 DB에 반영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출납내역에 대한 회계처리²⁹³⁾를 수행하고 동 회계처리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감사원 앞 계산증명(국고예금계좌의 잔액증명은 금융기관이 담당)
 - 한국은행은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납내역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

(회계처리)

계좌개설점	계리귀속	계리구분	차 변	대 변
—	국고증권실	한은계리		금융기관예탁금 XXX
				비예탁국고예금정리 XXX
	—	은행계리		국고예금 XXX

292) 국고예금 계좌에는 회계연도, 출납정리기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거래(출납공무원 등은 매 회계연도 말일 잔액을 지출관 앞 반납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하므로 1~12월분 월중 수입액 및 지급액을 대사(최종월분 누계액 대사는 없음)함. 월중 거래가 없는 계좌(수입액이 없는 계좌가 아니므로 정정 등으로 수입액을 가감하여 '0'이 된 계좌는 대사 대상) 및 착오 개설된 계좌는 대사를 생략함

293) 국고예금 대상여부(월계대사 여부) 및 월분을 구분하는 회계처리를 함. 금융기관의 기산일 거래에 대하여는 전월분 거래까지 당초 일자의 월분(전월분)의 거래로 처리하며 기산일이 전전 월분 이전 및 현월인 경우에는 당월분으로 처리함

[부록2] 국고업무 전산화 연혁

1970년대 (전산화의 태동)	
시 기	주 요 내 용
1983이전	수작업 시대 국고(수납)대리점에서 보고받은 국고금 취급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각 통할점에서 수작업에 의해 국고계리 및 자금계리 업무를 수행(세입증빙은 세입징수관계좌 개설 통할점에 집중보관, 세출증빙은 대리점 자체 보관)
1975.6.1	국고송금환 대사업무의 전산화 국고송금환 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고업무 최초로 전산화를 실시한 것으로 국고금 취급점에서 작성한 전산용 국고금 송금 취결통지서와 국고금 송금안내서를 본점에 집중한 다음 이를 당시 사무개선부에 송부하여 전산처리함으로써 국고송금 취결 및 지급업무의 정당성 여부 확인을 위한 대사 자료를 생성 ■ 금융업무의 온라인 취급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 국고금의 격지간 지급을 위해 유용한 제도인 국고송금은 금액단위 관리가 아닌 건별 관리가 필요하고 취결점과 지급점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등 업무의 특성상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고송금 취결 및 지급업무의 정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대사 확인(취결건의 미지급 여부, 미취결건의 지급 여부 등)
1978.3.15	채권자 계좌입금 제도의 도입 국고금 지급시 채권자에게 국고수표를 교부하거나 국고수표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동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10만원이상 국고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은 채권자 계좌 개설 은행별로 작성된 입금의뢰서와 국고수표를 제출받아 자행분은 전산입력하고 타행분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입금의뢰서와 함께 해당 은행에 송부(타행의 협조도가 낮아 금융공동망 타행환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타행분에 대해서도 국고대리점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음)

시 기	주 요 내 용
1979.4.1	<u>은행지로를 통한 채권자 계좌입금 제도의 도입(서울지역)</u> 타행분 계좌입금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의 은행지로제도를 이용한 계좌입금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지출관 등으로부터 은행지로입금명세를 제출받아 금융결제원에 지로입금 의뢰후 입금자금은 지로차액결제로 보전하는 방식)

1980년대 (전산화시대의 개막)

시 기	주 요 내 용
1983.4.27	<u>국고 온-라인 시스템 가동(국고부)</u> 국고(수납)대리점에서 국고금 취급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아 각 통할점에서 동 보고서를 전산입력(증빙 보관방식은 기존 제도 유지) ■ 국고금수급집계표¹⁾, 국고금수납매일보고표²⁾(이상 공통), 계정수급일보³⁾, 국고금송금취결통지서, 국고금송금안내서(이상 국고대리점) 1) 국고금 수급금액을 현금 수입/지급액, 대체 수입/지급액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보고서 2) 세입금 수납액을 세입징수관서별로 구분하여 수납 건수, 금액을 집계한 보고서 3) 세출/특별계정의 회계/계정별 수급금액을 거래구분별(통상수급, 정정, 반납, 반납정정 등)로 분류 집계한 보고서
1984.9.15 ~ 86.5.24	<u>전 지점 국고 온-라인 시스템 가동</u> 본점에서만 시행하던 국고 온-라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84.9.15 수원지점을 시작으로 86.5.24 전주지점을 15번째로 완료). 이에 따라 본점에 집중하여 입력하던 국고금 송금 취결통지서와 국고금 송금안내서는 각 통할점에서 입력하도록 순차적으로 변경

시 기	주 요 내 용
1985.5	세입증빙 OCR처리제도 도입(본점관내) 각 세입징수관은 납부(고지)서를 OCR 인자후 발부하고 한국은행 본점(국고부)에 OCR실을 두어 납부(고지)서의 OCR 정보를 스캔하여 수납정보를 생성하고 세입금영수내역을 출력하여 세입징수관 앞 송부(서울지역에 우선 실시한 후 확대 예정) 본점 관내 취급점은 OCR 인자가 되어 있지 않은 납부(고지)서에 대한 OCR 인자 및 세입금일계표 인자, 국고금집계표를 작성 첨부하여 통할점 앞 납부(고지)서를 제출 OCR처리 증빙은 국고부에 일괄 보관 지방 통할점 계좌에 대하여는 국고부에서 OCR처리후 자금이체 송금 취결(증빙은 명세서 출력) 지방 통할점 관내에서 수납된 본점 소속 세입징수관 세입금은 납부서를 국고부에 송부(자금이체송금)한 후 국고부에서 OCR처리 * 우체국은 원래 국고금 납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에서 우체국에서 수납한 세입금 수납내역을 계좌별로 집계하여 작성한 세입금 대체불입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있었는 바, 금융기관 관련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업무처리 절차는 변화가 없었음(이는 당시 「예산회계법」에서 우체국이 수납한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재납부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1990년대 (연계처리의 서막)	
시 기	주 요 내 용
1989.12.5	<u>세입증빙 OCR처리제도 폐지 및 세입증빙분산처리제도의 도입(본점관내 금융기관)</u> 본점 관내에서 실시하던 OCR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 국고(수납)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하여 제출(통상 '세입금 영수내역'이라 함)하도록 하고 세입증빙은 자체 보관하는 세입증빙분산처리제도를 도입 - 수납내역 제출자 : 금융기관 - 수납내역 제출방법 : 보조기억장치(M/T 또는 디스켓) - 이와는 별도로 기존에 제출하던 국고금 수납매일보고표 등은 계속 서면으로 제출 ▪ 수납한 세입금의 세입징수관서가 지방 통할점 소속인 경우에는 납부서 및 보고서를 본점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 필요 - 1989.12.5 산업은행등 25개은행 실시 - 1990.1.3.~31중 신탁은행등 4개은행 추가 실시
1992.2.17	<u>세입증빙분산처리제도의 전국 확대</u> 본점 관내에서 실시하던 세입증빙분산처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우체국 제외)
1993.1	<u>세입금 수납보고서 제출 폐지</u> 세입금 영수내역을 보조기억장치(M/T 또는 디스켓)로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각 통할점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국고금 수납매일보고표 등의 보고서 폐지(세입금 영수내역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자체 출력) * 세출금 지급관련 업무는 통할점에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전산입력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

시 기	주 요 내 용
1993.1	<u>세입징수관서앞 세입금영수내역서 M/T 송부 시작</u> 세입금영수내역서를 출력하여 세입징수관별로 송부하던 방식에서 세입금영수내역을 M/T로 작성하여 중앙관서로 송부(국세청, 경찰청 등 4대 기관부터 시작)
1994.6.20	<u>금융기관 국고금 취급 보고서의 한은금융망 전송</u> 보조기억장치(M/T 또는 디스켓)로 제출하던 세입금 영수내역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하던 세출금 지급관련 보고서도 한은금융망으로 전송 - 1994.6.20 산업, 조흥, 동화, 보람 4개은행 실시 - 1994.7.18 14개은행으로 확대 - 1994.8.17 광주은행을 제외한 전은행으로 확대 - 1994.9.13 전은행으로 확대 실시
1994.10.1	<u>우체국 수납 세입금 영수내역의 M/T 접수 시작</u> 채신부환금관리사무소에서 세입금 대체불입서(우체국에서 수납한 세입금 수납내역을 계좌별로 집계하여 작성한 납부서)를 작성 제출하던 우체국 수납 세입금 수납내역을 M/T로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1996.4.1	<u>무역EDI망을 통한 관세수납내역 실시간 전송</u> 국고(수납)대리점에서 수납한 관세는 무역EDI망에 입력함으로써 수납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한국은행은 EDI에 입력하는 대신 영수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세관에 Fax로 송부)
1997.7.1	<u>국고관련 보고서 전송망 가동</u> 한국은행(PC)과 재정경제부를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M/T, 서면으로 보고하던 국고금 B/S 등 총 15종의 국고업무 보고서를 전산망으로 전송 시작 * 각 관서 앞 송부하던 세입금영수내역서도 동 전송망으로 전송하기 시작

시 기	주 요 내 용
1997.10.1	관세환급금(수출용원자재환급) 전자이체제도 도입 세관별 환급액 및 은행별 입금액은 한국은행으로 전송(재정경제부와 연결된 보고서 전송망 이용)하고 입금계좌정보는 금융기관으로 전송(EDI 이용)하는 방법으로 환급(1일 1회 일괄처리 방식) - 2000.9.1. 1일 2회 이체로 변경
1998.8.18	우체국 세입금 수납액 보고 시스템 가동 국고관련 보고서 전송망의 재정경제부 쪽에 정보통신부를 전용선으로 추가 연결하여 M/T로 전달받던 우체국 세입금 수납내역을 동 전산망으로 수신 * 수납후 2영업일째 송신, 정정분 포함 등으로 금융기관 취급분과는 별도로 처리
1999.7.1	통합지출관제도 시범 시행 중앙관서별로 통합지출관을 임명하고 통합지출관이 한국은행 앞 계좌입금정보를 전송(보고서 전송망 이용)하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계좌입금내역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출(1일 1회 파일송수신 방식 전자이체)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시범 시행(3개부처 사업비) - 2000.9.1. 1일 2회 이체로 변경

2000년대 (전자이체시대의 도래)	
시 기	주 요 내 용
2000.7.3	국제 신용카드(카드론, 할부) 납부 및 전자납부제도 도입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론,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ATM, ARS를 이용하여 국세를 전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2000.8.2	BOK-Wire를 통한 국고금 납부제도 도입 납부자(금융기관)가 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인편에 의해 창구납부하던 것을 납부자금은 한은금융망으로 당좌차기 신청을 하고 납부서는 Fax로 한국은행 국고팀에 송부하는 제도를 도입 * 우체국예탁금, 우체국보험·산재보험 적립금 등 국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였다가 회수하는 경우 국고대리점에 납부시 발생하는 집중시차(2영업일)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직접 납부를 요구
2000.9.1	경찰청 범칙금 및 과태료 전자납부제도 도입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전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실제 수납은 납부자의 출금은행점포(국고대리점)에서 수납한 것으로 처리됨)
2000.11.1	특허청 특허수수료 전자납부제도 도입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특허수수료를 전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2000.12.1	노동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전자납부제도 도입 고용보험료(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료(산재보험기금)를 인터넷뱅킹, ATM, ARS를 이용하여 전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시 기	주 요 내 용
2001.4.2	국세환급금 전자이체제도 도입 각 세무서장의 서면 요청에 의해 세입금을 국고대리점의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계좌에 이체하고, 지급명령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서면으로 국고대리점에 채권자 계좌입금 또는 국고송금(현금지급) 취결*을 요구하던 국세환급금을 한국은행을 통한 전자이체 방식으로 개선(1일 1회 FTP방식) ▪ 현금지급분은 우체국에 환급정보를 전송하여 현금으로 지급 ⇒ 국고대리점의 국세환급업무 종료
2001.6.18	조달회전자금 전자이체제도 도입 조달청 본·지청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서면으로 국고대리점에 채권자 계좌입금을 요구하던 조달물자대금 지급방식을 한국은행을 통한 전자이체 방식으로 개선(1일 2회 FTP방식)
2001.7.9	국세청 세입금정정 업무의 전자화 각 세무서에서 통할점으로 서면 신청하던 세입금 오납 정정(연간 140,000건)을 전자의뢰에 의한 일괄 정정 방식으로 개선(1일 1회 FTP방식)
2003.1.2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 가동 한국은행, 금융기관,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연결하여 국고금의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방식으로 처리(조달회전자금 전자이체 흡수) * 2003.2.28. 「국고금관리법」 부칙에 따라 종전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존치하였던 일부 국고대리점을 추가 폐지(거래중이던 일부 계좌는 한국은행으로 이관)함으로써 국고금 지급업무를 하는 국고대리점제도를 완전 폐지

시 기	주 요 내 용
2003.1.2	EBPP시스템 가동 재정경제부에서 NAFIS를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센터로 하는 전자고지·전자수납 제도를 도입 - 원칙적으로 모든 국고금에 대한 전자수납(인터넷뱅킹, ATM, ARS, 인터넷지로, 공과금수납기 등) 가능 -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수납(전자수납 포함)시 EBPP센터에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입력(조회수납)하거나 납부내역 전부를 입력(입력수납)하여 EBPP센터로 전송 * 기존 입력시스템(EBPP에 수납내역 미송신)도 백업차원에서 존치 - 국고금 고지서에 2D 바코드 삽입
2003.6.2	국고예금시스템 가동 정부관서가 관서운영경비 집행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한 국고예금 취급분의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국고예금이자의 수취, 월계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국고예금시스템을 가동
2004.4.12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 개발 완료 총 21개 국고 단위업무에 대한 전산 추가개발을 완료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고업무가 연계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을 완결 - 2003.10.31 국고내 대체(세출지급-세입수납)시스템 - 2003.12.1 환급금·과오납금의 실시간이체시스템 (관세환급금 흡수) - 2003.12.30 월계대사시스템 - 2004.2.16 지로납부시스템 - 2004.3.15 국고내 대체시스템(자금계획통보, 수입금 청구정정, 계정수입거래 등) - 2004.4.1 국고수납자료 등 파일전송시스템 개선

시 기	주 요 내 용
2007.11	국고전산망 독자 운영 시작 “국고시스템 운영체계 정비방안 검토(총재 결재)”에 의거 국고전산망을 한은금융망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을 시작
2008.10.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수납제도 도입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세를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할 수 있게 되고 동 방법 취급기관인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국세 수납기관으로 지정 기존의 카드론 방식과 다른 점은 카드론 방식이 카드사에서 대출금을 공여하는 방식인데 비해 납부자의 물품 및 용역 구입대금과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점임. 따라서 국고금은 카드승인후 2영업일째에 회수되고 납부자는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결제를 함(이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2008.11 ~12	금융결제원 대량지급 기능을 이용한 국세환급 실시 정부에서 고유가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5일간 1,680만건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 기능을 연계하여 이를 처리
2012.4.3	우체국수납 국고금 별도처리 폐지 금융기관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과는 달리 국고금 수납내역을 수납후 2영업일째에 전송하고 수납내역 정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우체국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수납내역을 수납 다음 영업일에 전송하고 수납내역 정정은 한국은행을 통해 수행토록 일원화

[부록3] 기타 참고자료

1. 서식 목록
2. 회계계정 및 소관 일람표
3. 한국은행 본부 및 통할점 소재지

1. 서식 목록

	서 식 명	수록규정 ^{주)}
I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폐지) 의뢰서	「절차」 <별지 제20호 서식>
	수입징수관계좌 정보변경 의뢰서	「절차」 <별지 제21호 서식>
	중앙관서 지출관계좌 (신설,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	「절차」 <별지 제22호 서식>
	지출관 고유번호 (부여,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	「절차」 <별지 제23호 서식>
	지출관계좌 및 지출관 고유번호 정보변경 의뢰서	「절차」 <별지 제24호 서식>
	인감신고서	「절차」 <별지 제25호 서식>
II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	「절차」 <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 오납정정 청구서	「절차」 <별지 제39호 서식>
	지출반납금 오납정정 청구서	「절차」 <별지 제41호 서식>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	「절차」 <별지 제42호 서식>
III	자금계획 배정 통지서	「절차」 <별지 제8호 서식>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 지급내역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지출금사항 오류정정 청구서	「절차」 <별지 제40호 서식>
IV	일시차입금 상환 의뢰서	「절차」 <별지 제31호 서식>
	결산상 잉여금 처리 의뢰서	「절차」 <별지 제32호 서식>
	예탁금 예탁서	「절차」 <별지 제33호 서식>
	우체국과초금 대체불입 청구서	「절차」 <별지 제34호 서식>
	우체국자금 청구서	「절차」 <별지 제35호 서식>
	국고금 납부서	「절차」 <별지 제38호 서식>
V	수입금 월계대사표	「절차」 <별지 제43호 서식>
	지출금 월계대사표	「절차」 <별지 제44호 서식>
	() 월계대사표	「절차」 <별지 제45호 서식>
	국고금 총괄대차대조표	「절차」 <별지 제47호 서식>
	국고금 대차대조표	「절차」 <별지 제48호 서식>

VI	국고전산망 이용(이용종료) 신청서	「절차」 <별지 제56호 서식>
	국고전산망 이용 약정서	「절차」 <별지 제57호 서식>
	국고전산망 업무취급(변경, 종료) 신청서	「절차」 <별지 제58호 서식>
	국고전산망 공동이용 신청서	「절차」 <별지 제59호 서식>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이용종료) 신청서	「절차」 <별지 제60호 서식>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 약정서	「절차」 <별지 제61호 서식>
	확약서	「절차」 <별지 제62호 서식>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	「절차」 <별지 제63호 서식>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	「절차」 <별지 제64호 서식>
	국고전산망 장애 발생(복구) 통보	「절차」 <별지 제65호 서식>
VII	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절차」 <별지 제2호 서식>
	국고금수납점계약서	「절차」 <별지 제4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	「절차」 <별지 제7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서	「절차」 <별지 제3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서	「절차」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서	「절차」 <별지 제6호 서식>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	「절차」 <별지 제28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 확인 결과 보고서(결제모점용)	「절차」 <별지 제18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 확인 결과 보고서(통합점용)	「절차」 <별지 제19호 서식>
	국고금 사고 보고서	「절차」 <별지 제15호 서식>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내역 통보	「절차」 <별지 제16호 서식>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확정 통보	「절차」 <별지 제17호 서식>
	국고업무지도 실시서	「절차」 <별지 제9호 서식>
	업무지도자료 요청서	「절차」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서	「절차」 <별지 제11호 서식>
	국고업무지도 결과 보고서	「절차」 <별지 제12호 서식>
	국고업무지도 결과 종합보고서	「절차」 <별지 제14호 서식>
부 록 I	국고예금계좌 (신설, 변경, 폐지) 통보서	「절차」 <별지 제54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	「절차」 <별지 제55호 서식>

주) 「절차」란 한국은행의 「국고금취급절차」를 말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금융시스템-국고·증권제도-국고업무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2. 회계계정 및 소관 일람표

(2015.3.10.현재)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 통합계정 (31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6개)		
■ 일반회계 (1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 본)	005	5
일반회계	110	0	" (손 익)	006	6
국세수납정리계정	111	1	특허청 (자 본)	015	5
■ 특별회계 (12개)			" (손 익)	016	6
지역발전 (생활기반)	151	1	국립의료원 (자 본)	025	5
" (경제발전)	152	2	" (손 익)	026	6
" (제주특별자치도)	153	3	국립재활원 (자 본)	057	7
" (세종특별자치시)	154	4	" (손 익)	058	8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183	3	국립목포병원 (자 본)	067	7
" (농특세사업)	184	4	" (손 익)	068	8
" (임업진흥)	185	5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자 본)	097	7
교통시설 (도로)	191	1	" (손 익)	098	8
" (철도)	192	2	경찰병원 (자 본)	107	7
" (공항)	193	3	" (손 익)	108	8
" (항만)	194	4	국립부곡병원 (자 본)	117	7
" (광역교통시설)	195	5	" (손 익)	118	8
" (교통체계관리)	196	6	국립마산병원 (자 본)	127	7
등기	210	0	" (손 익)	128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투자)	221	1	국립서울병원 (자 본)	137	7
" (융자)	222	2	" (손 익)	138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30	0	국립춘천병원 (자 본)	147	7
혁신도시건설	231	1	" (손 익)	14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32	2	국립나주병원 (자 본)	157	7
주한미군기지이전	250	0	" (손 익)	158	8
국방·군사시설이전	251	1	국립공주병원 (자 본)	167	7
교도작업	290	0	" (손 익)	168	8
환경개선	310	0	국립과천과학관 (자 본)	177	7
■ 기업특별회계 (2개)			" (손 익)	178	8
우편사업 (자 본)	507	7	국립중앙과학관 (자 본)	927	7
" (손 익)	508	8	" (손 익)	928	8
조달 (자 본)	567	7	자동차운전면허 (자 본)	977	7
" (손 익)	568	8	" (손 익)	978	8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 비 통 합 계 정 (3개)		
우 체 국 보 험 특 별 회 계	380	8
■ 기업특별회계 (2개)		
양 곡 관 리 (자 본)	517	7
" (손 익)	518	8
우 체 국 예 금 (자 본)	527	7
" (손 익)	528	8
■ 기 금 (45개) 50계정		
■ 예탁중인 기금 (42개) 47계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00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금장려기금	603	0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605	0
남 북 협 력 기 금	606	0
방 송 통 신 발 전 기 금	607	0
응 급 의 료 기 금	608	0
전 력 산 업 기 반 기 금	609	0
양 곡 증 권 정 리 기 금	610	0
농 산 물 가 격 안 정 기 금	611	0
공 적 자 금 상 환 기 금	614	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616	0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622	0
군 인 연 금 기 금	625	0
복 권 기 금	627	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28	0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629	0
농 어 업 재 해 재 보 험 기 금	630	0
보 훈 기 금	632	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36	0
국 민 연 금 기 금	647	0
청 소 년 육 성 기 금	648	0
농 지 관 리 기 금	651	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652	0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657	0
고 용 보 험 기 금	662	0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663	0
정 보 통 신 진 흥 기 금	664	0
여 성 발 전 기 금	666	0
원 자 력 연 구 개 발 기 금	667	0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668	0
수 산 발 전 기 금	671	0
축 산 발 전 기 금	673	0
언 론 진 흥 기 금	675	0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총괄)	676	0
" (용자)	677	0
" (차관)	678	0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기 금	680	0
문 화 재 보 호 기 금	682	0
석 면 피 해 구 제 기 금	683	0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684	0
군 인 복 지 기 금 (복지)	685	0
" (전세대부)	686	0
" (학자금대부)	687	0
국 유 재 산 관 리 기 금	688	0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기 금	689	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 업 기 술 혁 신)	690	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특 정 물 질 사 용 합 리 화)	691	0
■ 계정만 개설한 기금 (3개)		
국 민 주 택 기 금	602	0
외 국 환 평 형 기 금	613	0
영 화 발 전 기 금	679	0

회계 및 계정명	코드	소계정
■ 기금성 특별계정 (2개)		
우 체 국 보 험 적 립 금	617	0
조 달 사 업 회 전 자 금	618	0
■ 특별계정 (30개)		
■ 한국은행 처리용 계정 (28개)		계좌
국 고 금 예 탁 계 정	711	X
국 고 금 세 부 운 용 계 정	713	○
국 고 금 운 용 수 익 계 정	714	○
세 계 잉 여 금 처 리 계 정	715	○
국 고 가 수 금	722	X
국 고 송 금 자 금 (전년도)	732	X
국 고 송 금 자 금 (금년도)	733	X
재 정 증 권	756	X
재 정 증 권 발 행 자 금	757	X
재 정 증 권 원 리 금 상 환 자 금	758	X
징 발 보 상 교 부 금	763	X
수 입 인 지 판 매	769	X
우 체 국 수 급 금	770	X
우 체 국 예 탁 금	771	○
차 입 금	773	X
일 시 차 입 금	774	X
외 평 기 금 채 권 발 행 자 금	775	X
외 평 기 금 채 권 원 리 금 상 환 자 금	776	X
국 고 채 권 발 행 자 금	777	X
국 고 채 권 상 환 자 금	778	X
공공용지보상채권원리금상환(건교부)	779	X
공공용지보상원리금(건교부)	780	X
공공용지보상채권원리금상환(철도청)	781	X
대 리 점 수 금 액 정 리	790	X
계 좌 입 금 정 리	791	X
계 좌 입 금 불 능 정 리	792	X
미 집 중 국 고 금 처 리 계 정	795	X
지 방 소 비 세 계 정	796	○
음영 부분은 휴면계정임		
■ 국고예금 처리용 계정 (2개)		
금 융 기 관 예 탁 금	793	○
비 예 탁 국 고 예 금 정 리	794	X
계좌구분이 '○'인 계정에는 출납공무원 계좌(월계대사 대상)가 설치되어 있음		

일반회계 세출 분야	코드
일 반 공 공 행 정	010
공 공 질 서 및 안 전	020
통 일 · 외 교	030
국 방	040
교 육	050
문 화 · 체 육 · 관 광	060
환 경 보 호	070
사 회 복 지	080
보 건	090
농 립 · 해 양 수 산	100
산 업 · 중 소 기 업	110
수 송 및 교 통	120
통 신	130
지 역 개 발	140
과 학 기 술	150
예 비 비	160

소관명(53개)	코드	소관명	코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01	기 상 청	51
대 통 령 경 호 실	02	경 찰 청	52
국 가 정 보 원	0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54
감 사 원	06	공 정 거래 위원회	57
국 회	07	해 양 수 산 부	58
대 법 원	08	행 정 자 치 부	62
헌 법 재 판 소	09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64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10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6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2	문 화 재 청	69
외 교 부	1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71
기 획 재 정 부	16	여 성 가 족 부	72
법 무 부	1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73
국 방 부	18	국 민 안 전 처	77
교 육 부	19	국 민 권 익 위 원 회	80
농 립 축 산 식 품 부	21	행 정 도 시 건 설 청	82
국 토 교 통 부	24	방 위 사 업 청	83
보 건 복 지 부	25	금 융 위 원 회	84
고 용 노 동 부	26	미 래 창 조 과 학 부	8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29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87
통 일 부	32	새 만 금 개 발 청	88
법 제 처	33	인 사 혁 신 처	89
국 가 보 훈 처	34		
산 립 청	35		
국 세 청	36		
관 세 청	37		
병 무 청	38		
농 촌 진 흥 청	39		
중 소 기 업 청	41		
특 허 청	42		
조 달 청	46		
환 경 부	47		
통 계 청	50		

3. 한국은행 본부 및 통할점 소재지

통할점명	주소	전화번호 및 FAX 번호
국고증권실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전상망 운영 : 02-759-4680 대리점 관리 : 02-759-4695 계좌 관리 : 02-759-4681 기타 문의 : 02-759-4716 FAX : 02-759-4711
부산본부	(우)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 (문현동)	담당자 : 051-240-3914 FAX : 051-240-3917
대구경북 본부	(우)41939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 (동인동2가)	담당자 : 053-429-0339 FAX : 053-429-0360
목포본부	(우)5872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9 (명륜동)	담당자 : 061-241-1125 FAX : 061-242-1189
광주전남 본부	(우)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 (치평동)	담당자 : 062-601-1128 FAX : 062-601-1130
전북본부	(우)549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 (진북동)	담당자 : 063-250-4107 FAX : 063-251-9032
대전충남 본부	(우)352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 (둔산동)	담당자 : 042-601-1121 FAX : 042-601-1200
충북본부	(우)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 (수동)	담당자 : 043-220-0576 FAX : 043-220-0645
강원본부	(우)2434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 (중앙로1가)	담당자 : 033-258-3230 FAX : 033-258-3350

통할점명	주소	전화번호 및 FAX 번호
인천본부	(우)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 (신흥동3가)	담당자 : 032-880-0022 FAX : 032-880-0119
제주본부	(우)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지로1길 20 (도남동)	담당자 : 064-720-2533 FAX : 064-720-2550
경기본부	(우)1627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 (영화동)	담당자 : 031-250-0105 FAX : 031-250-0115
경남본부	(우)514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 (신월동)	담당자 : 055-260-5131 FAX : 055-260-5133
강릉본부	(우)25533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 (성내동)	담당자 : 033-640-0163 FAX : 033-640-0164
울산본부	(우)44676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52 (신정동)	담당자 : 052-259-7436 FAX : 052-259-7490
포항본부	(우)377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 (죽도동)	담당자 : 054-289-2833 FAX : 054-289-2929
강남본부	(우)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역삼동)	담당자 : 02-560-1178 FAX : 02-560-1181